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4.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원)

구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점	619,000	634,000	650,000
	T / S	1점	1,116,000	1,146,000	1,181,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점	106,000	109,000	134,000
	T / S	배각법	1점	115,000	118,000
		방위각법	1점	104,000	106,000
					133,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원)

구분 종목별	기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m ²)	9,000원 이하	9,001원 26,000원	26,001원 51,000원	51,001원 170,000원	170,001원 1,710,000원	1,700,001원 8,530,000원	8,530,001원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200,000	243,000	286,000	372,000	429,000	458,000	48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51,000	304,000	358,000	465,000	537,000	573,000	609,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93,000	235,000	276,000	359,000	414,000	442,000	469,000
경계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305,000	371,000	436,000	567,000	654,000	698,000	74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79,000	461,000	542,000	705,000	813,000	867,000	921,000
	수치	1필지	300	262,000	318,000	374,000	486,000	561,000	598,000	636,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5,000	274,000	322,000	419,000	483,000	515,000	54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74,000	211,000	248,000	322,000	372,000	397,000	422,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306,000	371,000	437,000	568,000	655,000	699,000	7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80,000	462,000	543,000	706,000	814,000	869,000	923,000
	수치	1필지	300	262,000	319,000	375,000	487,000	562,000	600,000	637,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m ²)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36,000	614,000	688,000
		임야	1필지	5,000	546,000	727,000	815,000
	수치	1필지	1,500	416,000	587,000	664,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521,000	735,000	831,000
	수치	1필지	1,500	540,000	761,000	856,000	

종목별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m ²)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축적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흘지	1,500	375,000	530,000	597,000
		임야	1 흘지	5,000	471,000	625,000	699,000
	수 치	1 흘지	1,500	399,000	568,000	637,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흘지 (분할후)	1,500	263,000	350,000	394,000
		임야	1 흘지 (분할후)	5,000	334,000	413,000	461,000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지구계·지구내		1점		76,000	97,000	1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는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8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6,000	80,000	87,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3,000	84,000	90,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7,000	74,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5,000	77,000	87,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7,000	75,000	83,000	

3) 지적획정측량

(금액단위: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획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획정측량	1m ²	919.1	940.6	1,017.8
	경지구획정리 획정측량		75.6	77.5	79.7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84.9	394.1	406.3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5.6	77.3	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획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획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획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에 따른 지적획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획정측량수수료 단가의 85%를 적용한다. 지적획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m²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m²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m²와 30,000m²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는 측량지구 면적이 5,000m²이하인 경우 5,000m²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지적획정측량수수료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56,000	407,000	460,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7,000	110,000	114,000
		임야		107,000	110,000	114,000
	수 치			76,000	79,000	80,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m ²	519.8	532.8	547.7
	–	1m ²	74.4	76.1	78.6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m ² 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m ² 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m ²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 ² 이하인 경우에는 30,000m ² 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 적 삼 각 점	1점	344,000	353,000	363,000
	지 적 도 근 점	1점	16,000	16,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 지 · 수 치	1필지	31,000	46,000	51,000
	임 야		43,000	55,000	59,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원)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 산 화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221,000	227,000	234,000
		임 야			243,000	249,000	256,000
측량결과도 전 산 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7,000	48,000	4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지적전산 자료정비	토 지 · 수 치		1필지	필지	27,000	28,000	29,000
	임 야				36,000	36,000	38,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0,000	10,000	10,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7,000	17,000	18,000
		임 야			18,000	18,000	19,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38,000	141,000	144,000
		임 야			174,000	176,000	182,000
		수 치			95,000	97,000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 · 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 · 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3,000	14,000	1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 필 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끝.

2026년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

목 차

I.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15
1.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17
2. 지적측량수수료 산출 기준액표	18
2. 1. 인건비 기준액표	18
2. 2. 직접경비	19
2.2.1. 현장여비	19
2.2.2. 기계경비	20
2.2.3. 재료소모품비	37
2. 3. 간접측량비	55
2.3.1. 제경비	55
2.3.2. 기술료	55
II. 단가산출표	57
1. 지적기준점측량	59
1-1. 지적삼각(보조)점측량	61
1-2. 지적도근점측량	69
2. 지적세부측량	77
2-1. 신규등록측량	79
2-2. 등록전환측량	89
2-3. 분할측량	99
2-4. 축척변경측량	111
2-5.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123
2-6. 경계복원측량	131
2-7. 지적현황측량	143
2-8. 도시계획선명시측량	155
2-9.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167

2-10. 분할측량 내업품	173
2-1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	181
3. 지적확정측량	189
3-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91
3-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99
3-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207
3-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215
4. 지적재조사	223
4-1. 지적재조사측량	225
4-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233
5. 국토정보조사측량	241
5-1. 다목적지적측량	243
5-2.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247
5-3. 침수흔적지조사측량	253
6. 국토정보 조사관리	257
6-1.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259
6-2. 지적이용 현황조사	267
7. 국토정보 품질관리	273
7-1. 지적(임야)도 전산화	275
7-2. 측량결과도 전산화	281
7-3. 연속지적도 작성	287
7-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293
7-5.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301
7-6.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309
7-7. 지적전산 자료정비	321
7-8. 도면작성	329
7-9. 지적도작성 및 재작성	335
7-10. 조서작성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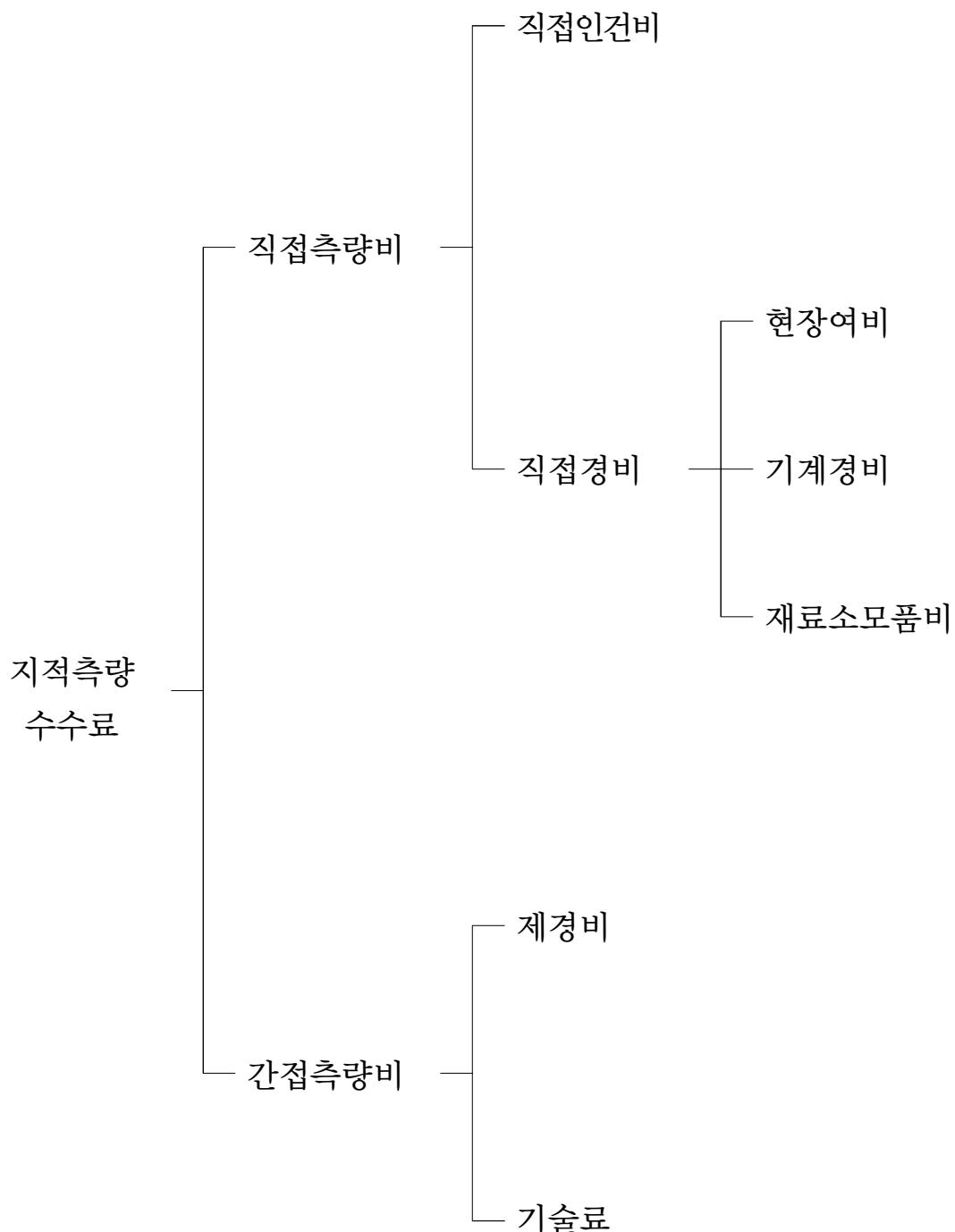
8. 국토정보 자료구축	345
8-1. 지적정보 D/B구축	347
8-2. 지적원도 D/B구축	353
9. 드론지적측량	357
9-1. 드론지적측량	359
III.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5
[별표1]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386
[별표2]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예시	392
[별표3]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393
[별표4]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395



I .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1.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2. 측량비의 산출 기준액표

2.1 인건비 기준액표

(금액단위: 원)

구 분	인건비(1일 기준)	비 고
지 적 기 사	274,286	
지 적 산 업 기 사	242,724	
지 적 기 능 사	180,875	
인 부	171,037	

※ 대한건설협회 2025. 9. 1.자 공표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통계청 승인번호 365004]

2.2 직접경비

2.2.1 현장여비

(금액단위: 원)

구 분	여 비	비 고
지 적 기 사	25,000	
지 적 산업기사	25,000	
지 적 기 능 사	25,000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국내여행자의 일비 적용

2.2.2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2025년 9월 15일 현재 물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수입품은 C.I.F가격)에 내용연수 및 연간 가동일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비 및 정비비를 산출함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지 적 삼 각 (삼 각 보 조)	G N S S	394,032
	T / S	256,662
지 적 도 근	G N S S	173,105
	T / S	188,154
신 규 등 록	도 해	13,560
	수 치	12,688
등 록 전 환	도 해	18,305
	수 치	18,027
분 할 측 량	도 해	17,963
	수 치	15,962
축 척 변 경	도 해	16,487
	수 치	17,732
지 적 불 부 합 지 조 사 측 량	도 해	18,445
경 계 복 원	도 해	17,916
	수 치	13,655
지 적 현 황	도 해	16,441
	수 치	16,001
도 시 계 획 선 명 시 측 량	도 해	17,916
	수 치	13,655
예 정 지 적 좌 표 도 작 성 업 무	지 구 계 점	4,699
분 할 내 업 품	도 해	4,093
	수 치	4,158
현 황 내 업 품	도 해	3,751
	수 치	3,326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지 적 확 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1,415,165
	경지구획정리	1,205,396
	신규토지구획	958,259
	신규경지구획	906,703
지 적 재 조 사 측 량	30,089	
세 계 측 지 계 좌 표 변 환	도 해	3,982
	수 치	2,773
다 목 적 지 적 측 량	2,320,012	
3 차 원 지 적 구 측 량	329,370	
침 수 흔 적 지 조 사 측 량	33,040	
지 적 기준점 현황조사	지 적 삼 각 점	1,190
	지 적 도 근 점	86
지 적 이 용 현 황 조 사	697	
지 적 (임 야) 도 전 산 화	18,988	
측 량 결 과 도 전 산 화	564	
연 속 지 적 도 작 성	도 해 · 수 치	590
		590
연 속 지 적 도 품 질 개 선	토 지	1,148
	임 야	1,200
	수 치	670
용도지역지구도면작성	도 해	6,907
	수 치	6,828
지 적 공간정보도면작성	도 해	7,210
	수 치	7,177
지 적 전 산 자료 정 비 (개별 지 적 자료 정 비)	188	
도 면 작 성	3,389	
지 적 (임 야) 도 작 성 · 재 작 성	8,126	
조 서 작 성	77	
지 적 정 보 D B 구 축	415,450	
지 적 원 도 D B 구 축	3,686	
드 론 지 적 측 량	74,721	

2.2.2.1 측량종목별 기계경비 일람표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계·기구명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탈 스 테 이 션	15,217.7	32,892.9	10,586.2	29,112.1	1,465.0	1,323.2	2,221.2	2,221.2
펜 캐 퓨 터	16,975.8	36,693.1	11,809.2	32,475.5	1,634.3	1,476.1	2,477.8	2,477.8
소 자 세 트	7,451.0	16,105.4	5,183.3	14,254.2	717.3	647.9	1,087.5	1,087.5
카 메 라	743.8	1,607.7	517.4	1,422.9	71.6	64.6	108.5	108.5
무 전 기	2,902.3	2,902.3	2,568.7	2,568.7	129.2	116.7	195.9	195.9
핸 머 드 릴					434.9	392.8	659.4	659.4
롤 프 린 터	13,877.3	13,877.3	8,932.5	8,932.5	797.5	797.5	850.7	797.5
컴 퓨 터	13,031.3	13,031.3	9,065.2	9,065.2	391.2	404.7	431.6	404.7
프 린 터	32,811.8	32,811.8	22,825.6	22,825.6	1,324.7	1,324.7	815.2	764.2
운 영 용 S / W	104,322.5	104,322.5	65,457.2	65,457.2	6,428.8	5,990.5	9,204.9	9,058.8
GPS 수신기세트	185,298.3							
G P S 수 신 기			35,185.9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875.8	1,893.1	609.2	1,675.5	84.3	76.1	127.8	127.8
펜컴퓨터삼각대	524.8	524.8	365.1	365.1	50.5	45.6	76.6	76.6
유 리 섬 유 줄 자					31.6	28.5	47.9	47.9
자 동 제 도 기								
도면편집 S / W								
정 밀 스 캐 너								
워크스테이션								
구조화 S / W								
태 블 럿 P C								
드 른 론								
드론영상후처리S/W								
합 계	394,032.4	256,662.2	173,105.5	188,154.5	13,560.9	12,688.9	18,305.0	18,027.8

[계산예] 측량종목별 기계사용일수 및 1일 기계경비일람표에의함.

“신규등록측량(도해)” 토털스테이션의 경우 1일 기계경비: 4,726원, 사용일수: 0.31일,

$$4,726\text{원} \times 0.31\text{일} = 1,465\text{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계·기구명	지적세부측량								
	분합측량		축척변경측량		불부합지 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도해	도해	수치	도해	수치
토 탈 스 테 이 션	2,221.2	1,890.4	1,984.9	2,173.9	1,654.1	2,268.4	1,654.1	2,032.1	1,795.8
펜 캠 퓨 터	2,477.8	2,108.8	2,214.2	2,425.1	1,845.2	2,530.5	1,845.2	2,266.9	2,003.3
소 자 세 트	1,087.5	925.6	971.8	1,064.4	809.9	1,110.7	809.9	995.0	879.3
카 메 라	108.5	92.4	97.0	106.2	80.8	110.8	80.8	99.3	87.7
무 전 기	195.9	166.8	175.1	191.8	145.9	200.1	145.9	179.3	158.4
햄 머 드 릴	659.4	561.2	589.2	645.3	491.0	673.4	491.0	603.2	533.1
롤 프 린 터	797.5	797.5	797.5	797.5	1,754.6	744.3	638.0	744.3	638.0
컴 퓨 터	391.2	404.7	391.2	404.7	674.5	350.7	323.7	350.7	323.7
프 린 터	713.3	764.2	713.3	764.2	866.1	611.4	611.4	611.4	611.4
운 영 용 S / W	9,058.8	8,036.0	8,328.2	8,912.7	9,935.4	9,058.8	6,867.1	8,328.2	8,766.6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127.8	108.8	114.2	125.1	95.2	130.5	95.2	116.9	103.3
펜컴퓨터삼각대	76.6	65.2	68.4	74.9	57.0	78.2	57.0	70.0	61.9
유 리 섬 유 줄 자	47.9	40.8	42.8	46.9	35.7	48.9	35.7	43.8	38.7
자 동 제 도 기	-	-	-	-	-	-	-	-	-
도 면 편 집 S / W	-	-	-	-	-	-	-	-	-
정 밀 스 캐 너	-	-	-	-	-	-	-	-	-
워크스 테 이 션	-	-	-	-	-	-	-	-	-
구 조 화 S / W	-	-	-	-	-	-	-	-	-
태 블 릿 P C	-	-	-	-	-	-	-	-	-
드 롤 론									
드론영상후처리S/W									
합 계	17,963.4	15,962.4	16,487.8	17,732.7	18,445.4	17,916.7	13,655.0	16,441.1	16,001.2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계·기구명	지적세부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분할 내업품		지적현황 내업품	
	도해	수치	지구계점	도해	수치	도해	수치
토 탈스 테 이 션	2,268.4	1,654.1					
펜 콤 퓨 터	2,530.5	1,845.2					
소 자 세 트	1,110.7	809.9					
카 메 라	110.8	80.8					
무 전 기	200.1	145.9					
햄 머 드 릴	673.4	491.0					
롤 프 린 터	744.3	638.0	691.2	797.5	797.5	744.3	638.0
컴 퓨 터	350.7	323.7	580.0	391.2	404.7	350.7	323.7
프 린 터	611.4	611.4	1,528.5	713.3	764.2	611.4	611.4
운 영 용 S / W	9,058.8	6,867.1	1,899.4	2,191.6	2,191.6	2,045.5	1,753.3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사장비							
토 탈 삼 각 대	130.5	95.2					
펜컴퓨터삼각대	78.2	57.0					
유 리 섬 유 출 자	48.9	35.7	-	-	-	-	-
자 동 제 도 기	-	-	-	-	-	-	-
도면편집S/W	-	-	-	-	-	-	-
정 밀 스 캐 너	-	-	-	-	-	-	-
워크스테이션	-	-	-	-	-	-	-
구 조 화 S / W	-	-	-	-	-	-	-
태 블 럿 P C	-	-	-	-	-	-	-
드 롤 론							
드론영상후처리S/W							
합 계	17,916.7	13,655.0	4,699.1	4,093.6	4,158.0	3,751.9	3,326.4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계·기구명	지적측정측량				지적재조사		
	토지구획	경지구획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도해	수치
토 탈 스 테 이 션	149,058.0	121,316.4	74,954.3	72,685.8	2,788.3	141.7	94.5
펜 캐 퓨 터	166,278.8	135,332.2	83,613.9	81,083.3	3,110.4	158.1	105.4
소 자 세 트	72,983.5	59,400.3	36,700.0	35,589.3	1,365.2	69.4	46.2
카 메 라	7,285.7	5,929.7	3,663.6	3,552.7	34.6	6.9	4.6
무 전 기	13,152.1	10,704.3	6,613.6	6,413.4	308.5	12.5	8.3
햄 머 드 릴					266.5		
롤 프 린 터	16,482.7	16,110.5	16,482.7	16,110.5	1,063.4	212.6	159.5
컴 퓨 터	112,155.8	107,205.0	101,822.5	96,642.3	634.0	296.7	215.8
프 린 터	357,923.7	318,896.0	350,485.0	318,947.0	2,088.9	1,171.8	815.2
운 영 용 S / W	506,125.0	419,335.7	277,024.5	268,988.5	12,857.6	1,899.4	1,314.9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5,295.8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8,578.8	6,982.2	4,313.9	4,183.3	160.4	8.1	5.4
펜컴퓨터삼각대	5,141.0	4,184.2	2,585.1	2,506.9	96.1	4.8	3.2
유 리 섬 유 줄 자	-	-	-	-	19.3	-	-
자 동 제 도 기	-	-	-	-	-	-	-
도 면 편 집 S / W	-	-	-	-	-	-	-
정 밀 스 캐 너	-	-	-	-	-	-	-
워 크 스 테 이 션	-	-	-	-	-	-	-
구 조 화 S / W	-	-	-	-	-	-	-
태 블 립 P C	-	-	-	-	-	-	-
드 롤 론							
드론영상후처리S/W							
합 계	1,415,165.1	1,205,396.5	958,259.1	906,703.0	30,089.0	3,982.0	2,773.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조사관리		국토정보품질관리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기준점현황조사		지적이용 현황조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치	3차원	수치	지적삼각	지적도근	조사	좌표독취
토 탈 스 테 이 션	519,860.0		5,576.6				
펜 캠 퓨 터	579,920.0	16,395.9	6,220.9				
소 자 세 트	254,540.0		2,730.5				
카 메 라	25,410.0	718.4	272.5	99.3	4.6	23.1	
무 전 기	45,870.0	1,296.8	492.0				
햄 머 드 릴			1,655.5				
롤 프 린 터	31,902.0	7,975.5	2,179.9				
컴 퓨 터	8,094.0	7,095.7	6,947.3	148.3	13.4	229.3	998.2
프 린 터		11,616.6	4,432.6	560.4	50.9	152.8	
운 영 용 S / W	653,111.7		1,899.4			292.2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254,450.8					
지 하 탐 사 장 비	153,455.1						
토 탈 삼 각 대	29,920.0		320.9				
펜컴퓨터삼각대	17,930.0	506.9	192.3				
유 리 섬 유 줄 자			120.3				
자 동 제 도 기						830.8	55.3
도 면 편 집 S / W		29,313.9				6,297.0	
정 밀 스 캐 너						10,862.8	293.5
워크스 테 이 션							
구 조 화 S / W							
태 블 럿 P C				382.7	17.8		
드 롤 론							
드론영상후처리S/W							
합 계	2,320,012.8	329,370.5	33,040.7	1,190.7	86.7	697.4	18,988.8
							564.6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품질관리							
	연속지적도 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도해 수치	토지	임야	수치	도해	수치	도해	수치	
토탈스 테이션								
펜 콤 퓨 터								
소 자 세 트								
카 메 라					4.6	2.3	4.6	2.3
무 전 기								
햄 머 드 릴								
롤 프 린 터					372.1	212.6	372.1	212.6
컴 퓨 터	35.0	60.7	63.4	35.0	364.2	161.8	377.7	188.8
프 린 터	10.1	20.3	20.3	15.2	611.4	254.7	611.4	254.7
운 영 용 S / W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펜컴퓨터삼각대								
유 리 섬 유 줄 자								
자 동 제 도 기								
도면편집S/W	238.8	466.8	488.5	271.4	1,519.9	1,737.1	1,737.1	1,845.6
정 밀 스 캐 너								
워크스 테이션					3,616.2	4,041.6	3,828.9	4,254.4
구 조 화 S / W	307.0	600.2	628.1	348.9	418.7	418.7	279.1	418.7
태 블 럿 P C								
드 룬 론								
드론영상후처리S/W								
합 계	590.9	1,148.0	1,200.3	670.5	6,907.1	6,828.8	7,210.9	7,177.1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품질관리				국토정보 DB구축		드론지적측량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작성	지적(임야도) 작성·재작성	조사작성	지적정보 DB구축	지적원도 DB구축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토탈스테이션							4,726.0
펜컴퓨터							5,272.0
소자세트							2,314.0
카메라							231.0
무전기							417.0
햄머드릴							1,403.0
롤프린터							
컴퓨터	96.4	674.5	998.2	26.9	48,280.7	323.7	3,871.6
프린터	91.7	815.2		50.9	12,533.7	50.9	2,547.5
운영용 S/W		1,899.4					14,611.0
GPS수신기세트							
GPS수신기							
지상라이다							
지하탐사장비							
토탈삼각대							272.0
펜컴퓨터삼각대							163.0
유리섬유줄자							102.0
자동제도기			830.8			110.7	
도면편집S/W			6,297.0		66,661.9	2,497.1	
정밀스캐너							
워크스테이션						425.4	23,824.6
구조화 S/W					287,974.1	279.1	
태블릿PC							
드론							5,635.8
드론영상후처리S/W							9,330.7
합계	188.1	3,389.1	8,126.0	77.8	415,450.4	3,686.9	74,721.2

2.2.2.2 측량종목별 기계사용일수 및 1일 기계경비 일람표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해	수치	도해	수치
토탈스테이션	4,726 3.22	4,726 6.96	4,726 2.24	4,726 6.16	4,726 0.31	4,726 0.28	4,726 0.47	4,726 0.47
펜컴퓨터	5,272 3.22	5,272 6.96	5,272 2.24	5,272 6.16	5,272 0.31	5,272 0.28	5,272 0.47	5,272 0.47
소자세트	2,314 3.22	2,314 6.96	2,314 2.24	2,314 6.16	2,314 0.31	2,314 0.28	2,314 0.47	2,314 0.47
카메라	231 3.22	231 6.96	231 2.24	231 6.16	231 0.31	231 0.28	231 0.47	231 0.47
무전기	417 6.96	417 6.96	417 6.16	417 6.16	417 0.31	417 0.28	417 0.47	417 0.47
핸드릴					1,403 0.31	1,403 0.28	1,403 0.47	1,403 0.47
롤프린터	5,317 2.61	5,317 2.61	5,317 1.68	5,317 1.68	5,317 0.15	5,317 0.15	5,317 0.16	5,317 0.15
컴퓨터	1,349 9.66	1,349 9.66	1,349 6.72	1,349 6.72	1,349 0.29	1,349 0.30	1,349 0.32	1,349 0.30
프린터	5,095 6.44	5,095 6.44	5,095 4.48	5,095 4.48	5,095 0.26	5,095 0.26	5,095 0.16	5,095 0.15
운영용 S/W	14,611 7.14	14,611 7.14	14,611 4.48	14,611 4.48	14,611 0.44	14,611 0.41	14,611 0.63	14,611 0.62
GPS수신기세트	49,545 3.74							
GPS수신기			8,976 3.92					
지상라이다								
지하탐사장비								
토탈삼각대	272 3.22	272 6.96	272 2.24	272 6.16	272 0.31	272 0.28	272 0.47	272 0.47
펜컴퓨터삼각대	163 3.22	163 3.22	163 2.24	163 2.24	163 0.31	163 0.28	163 0.47	163 0.47
유리섬유줄자					102 0.31	102 0.28	102 0.47	102 0.47
자동제도기								
도면편집S/W								
정밀스캐너								
워크스테이션								
구조화S/W								
태블릿PC								
드론								
드론영상후처리S/W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지적세부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불부합지 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도해	도해	수치	도해	수치	
토 탈 스테 이션	4,726 0.47	4,726 0.40	4,726 0.42	4,726 0.46	4,726 0.35	4,726 0.48	4,726 0.35	4,726 0.43	4,726 0.38	
펜 콤 퓨 터	5,272 0.47	5,272 0.40	5,272 0.42	5,272 0.46	5,272 0.35	5,272 0.48	5,272 0.35	5,272 0.43	5,272 0.38	
소 자 세 트	2,314 0.47	2,314 0.40	2,314 0.42	2,314 0.46	2,314 0.35	2,314 0.48	2,314 0.35	2,314 0.43	2,314 0.38	
카 메 라	231 0.47	231 0.40	231 0.42	231 0.46	231 0.35	231 0.48	231 0.35	231 0.43	231 0.38	
무 전 기	417 0.47	417 0.40	417 0.42	417 0.46	417 0.35	417 0.48	417 0.35	417 0.43	417 0.38	
햄 머 드 릴	1,403 0.47	1,403 0.40	1,403 0.42	1,403 0.46	1,403 0.35	1,403 0.48	1,403 0.35	1,403 0.43	1,403 0.38	
롤 프 린 터	5,317 0.15	5,317 0.15	5,317 0.15	5,317 0.15	5,317 0.33	5,317 0.14	5,317 0.12	5,317 0.14	5,317 0.12	
컴 퓨 터	1,349 0.29	1,349 0.30	1,349 0.29	1,349 0.30	1,349 0.50	1,349 0.26	1,349 0.24	1,349 0.26	1,349 0.24	
프 린 터	5,095 0.14	5,095 0.15	5,095 0.14	5,095 0.15	5,095 0.17	5,095 0.12	5,095 0.12	5,095 0.12	5,095 0.12	
운 영 용 S / W	14,611 0.62	14,611 0.55	14,611 0.57	14,611 0.61	14,611 0.68	14,611 0.62	14,611 0.47	14,611 0.57	14,611 0.60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272 0.47	272 0.40	272 0.42	272 0.46	272 0.35	272 0.48	272 0.35	272 0.43	272 0.38	
펜컴퓨터삼각대	163 0.47	163 0.40	163 0.42	163 0.46	163 0.35	163 0.48	163 0.35	163 0.43	163 0.38	
유 리 섬 유 줄 자	102 0.47	102 0.40	102 0.42	102 0.46	102 0.35	102 0.48	102 0.35	102 0.43	102 0.38	
자 동 제 도 기										
도 면 편 집 S / W										
정 밀 스 캐 너										
워크스테이션										
구 조 화 S / W										
태 블 릿 P C										
드 른 론										
드론영상후처리S/W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지적세부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업무	분할 내업품		지적현황 내업품	
	도해	수치	지구계점	도해	수치	도해	수치
토 탈 스테이션	4,726 0.48	4,726 0.35					
펜 콤 퓨 터	5,272 0.48	5,272 0.35					
소 자 세 트	2,314 0.48	2,314 0.35					
카 메 라	231 0.48	231 0.35					
무 전 기	417 0.48	417 0.35					
햄 머 드 릴	1,403 0.48	1,403 0.35					
롤 프 린 터	5,317 0.14	5,317 0.12	5,317 0.13	5,317 0.15	5,317 0.15	5,317 0.14	5,317 0.12
컴 퓨 터	1,349 0.26	1,349 0.24	1,349 0.43	1,349 0.29	1,349 0.30	1,349 0.26	1,349 0.24
프 린 터	5,095 0.12	5,095 0.12	5,095 0.30	5,095 0.14	5,095 0.15	5,095 0.12	5,095 0.12
운 영 용 S / W	14,611 0.62	14,611 0.47	14,611 0.13	14,611 0.15	14,611 0.15	14,611 0.14	14,611 0.12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272 0.48	272 0.35					
펜컴퓨터삼각대	163 0.48	163 0.35					
유 리 섬 유 줄 자	102 0.48	102 0.35					
자 동 제 도 기							
도 면 편 집 S / W							
정 밀 스 캐 너							
워크스테이션							
구 조 화 S / W							
태 블 럿 P C							
드 롤 론							
드론영상후처리S/W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지적환경측량				지적재조사		
	토지구획	경지구획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도해	수치
토 탈 스 테 이 션	4,726 31.54	4,726 25.67	4,726 15.86	4,726 15.38	4,726 0.59	4,726 0.03	4,726 0.02
펜 콤 퓨 터	5,272 31.54	5,272 25.67	5,272 15.86	5,272 15.38	5,272 0.59	5,272 0.03	5,272 0.02
소 자 세 트	2,314 31.54	2,314 25.67	2,314 15.86	2,314 15.38	2,314 0.59	2,314 0.03	2,314 0.02
카 메 라	231 31.54	231 25.67	231 15.86	231 15.38	231 0.15	231 0.03	231 0.02
무 전 기	417 31.54	417 25.67	417 15.86	417 15.38	417 0.74	417 0.03	417 0.02
햄 머 드 릴					1,403 0.19		
롤 프 린 터	5,317 3.10	5,317 3.03	5,317 3.10	5,317 3.03	5,317 0.20	5,317 0.04	5,317 0.03
컴 퓨 터	1,349 83.14	1,349 79.47	1,349 75.48	1,349 71.64	1,349 0.47	1,349 0.22	1,349 0.16
프 린 터	5,095 70.25	5,095 62.59	5,095 68.79	5,095 62.60	5,095 0.41	5,095 0.23	5,095 0.16
운 영 용 S / W	14,611 34.64	14,611 28.70	14,611 18.96	14,611 18.41	14,611 0.88	14,611 0.13	14,611 0.09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8,976 0.59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272 31.54	272 25.67	272 15.86	272 15.38	272 0.59	272 0.03	272 0.02
펜컴퓨터삼각대	163 31.54	163 25.67	163 15.86	163 15.38	163 0.59	163 0.03	163 0.02
유 리 섬 유 줄 자					102 0.19		
자 동 제 도 기							
도 면 편 집 S / W							
정 밀 스 캐 너							
워 크 스 테 이 션							
구 조 화 S / W							
태 블 립 P C							
드 롤 론							
드론영상상후처리S/W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조사관리		국토정보품질관리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이용 현황조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치	3차원	수치	지적삼각	지적도근	조사	수치
토탈스테이션	4,726 110.0		4,726 1.18				
펜컴퓨터	5,272 110.0	5,272 3.11	5,272 1.18				
소자세트	2,314 110.0		2,314 1.18				
카메라	231 110.0	231 3.11	231 1.18	231 0.43	231 0.02	231 0.10	
무전기	417 110.0	417 3.11	417 1.18				
햄미드릴			1,403 1.18				
플프린터	5,317 6.00	5,317 1.50	5,317 0.41				
컴퓨터	1,349 6.00	1,349 5.26	1,349 5.15	1,349 0.11	1,349 0.01	1,349 0.17	1,349 0.74
프린터		5,095 2.28	5,095 0.87	5,095 0.11	5,095 0.01	5,095 0.03	
운영용S/W	14,611 44.70		14,611 0.13			14,611 0.02	
GPS수신기세트							
GPS수신기							
지상라이다		81,817 3.11					
지하탐사장비	3,433 44.70						
토탈삼각대	272 110.0		272 1.18				
펜컴퓨터삼각대	163 110.0	163 3.11	163 1.18				
유리섬유줄자			102 1.18				
자동제도기						5,539 0.15	5,539 0.01
도면편집S/W		10,857 2.70				10,857 0.58	
정밀스캐너						29,359 0.37	29,359 0.01
워크스테이션							
구조화S/W							
태블릿PC				890 0.43	890 0.02		
드론론							
드론영상후처리S/W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품질관리							
	연속지적도 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도해 수치	토지	임야	수치	도해	수치	도해	수치	
토 탈스 테 이 션								
펜 콤 퓨 터								
소 자 세 트								
카 메 라				231 0.02	231 0.01	231 0.02	231 0.01	
무 전 기								
햄 머 드 릴								
롤 프 린 터				5,317 0.07	5,317 0.04	5,317 0.07	5,317 0.04	
컴 퓨 터	1,349 0.03	1,349 0.045	1,349 0.047	1,349 0.026	1,349 0.27	1,349 0.12	1,349 0.28	1,349 0.14
프 린 터	5,095 0.002	5,095 0.004	5,095 0.004	5,095 0.003	5,095 0.12	5,095 0.05	5,095 0.12	5,095 0.05
운 영 용 S / W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펜컴퓨터삼각대								
유 리 섬 유 줄 자								
자 동 제 도 기								
도 면 편 집 S / W	10,857 0.02	10,857 0.04	10,857 0.05	10,857 0.03	10,857 0.14	10,857 0.16	10,857 0.16	10,857 0.17
정 밀 스 캐 너								
워크스 테 이 션					21,272 0.17	21,272 0.19	21,272 0.18	21,272 0.20
구 조 화 S / W	13,959 0.02	13,959 0.04	13,959 0.04	13,959 0.03	13,959 0.03	13,959 0.03	13,959 0.02	13,959 0.03
태 블 럿 P C								
드 른 론								
드론영상후처리S/W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품질관리				국토정보DB구축		드론지적측량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작성	지적(임야도) 작성·재작성	조서작성	지적정보 DB구축	지적원도 DB구축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토 탈스 테이션							4,726 1.00
펜 콤 퓨 터							5,272 1.00
소 자 세 트							2,314 1.00
카 메 라							231 1.00
무 전 기							417 1.00
햄 머 드 릴							1,403 1.00
롤 프 린 터							
컴 퓨 터	1,349 0.07	1,349 0.50	1,349 0.74	1,349 0.02	1,349 35.79	1,349 0.24	1,349 2.87
프 린 터	5,095 0.02	5,095 0.16		5,095 0.01	5,095 2.46	5,095 0.01	5,095 0.50
운 영 용 S / W		14,611 0.13					14,611 1.00
GPS수신기세트							
G P S 수 신 기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토 탈 삼 각 대							272 1.00
펜컴퓨터삼각대							163 1.00
유 리 섬 유 줄 자							102 1.00
자 동 제 도 기		5,539 0.15			5,539 0.02		
도 면 편 집 S / W		10,857 0.58		10,857 6.14	10,857 0.23		
정 밀 스 캐 너							
워크스 테이션					21,272 0.02	21,272 1.12	
구 조 화 S / W				13,959 20.63	13,959 0.02		
태 블 럿 P C							
드 룬 론							9,090 0.62
드론영상후차리S/W							8,331 1.12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2.2.3 1일당 기계경비 산출표

(금액단위 : 원)

기계명칭	규격	가격	내용 년수	연간 가동 일수	내용		합계	1일 기계 경비
					상각비	정비비		
토탈스테이션	1급	10,400,000	10	220	4,490	236	4,726	4,726
토탈삼각대	알루미늄 (1,033mm~1,700mm)	120,000	2	220	259	13	272	272
GPS수신기세트	1급 (4대기준)	87,200,000	8	220	47,068	2,477	49,545	49,545
GPS수신기	1급 (1대기준)	15,800,000	8	220	8,528	448	8,976	8,976
펜컴퓨터	현장용	5,800,000	5	220	5,009	263	5,272	5,272
펜컴퓨터삼각대	알루미늄 (800mm~1,310mm)	108,000	3	220	155	8	163	163
소자세트	단소자, 폴(2세트)	1,018,500	2	220	2,199	115	2,314	2,314
카메라	디지털	408,800	8	220	220	11	231	231
무전기	단거리(3대기준)	276,000	3	220	397	20	417	417
햄머드릴	충전식	2,780,100	9	220	1,333	70	1,403	1,403
유리섬유줄자	유리섬유사 50m	68,000	3	220	97	5	102	102
지상라이다	레이저스캐너	198,000,000	11	220	77,727	4,090	81,817	81,817
지하탐사장비		6,800,000	9	220	3,262	171	3,433	3,433
컴퓨터	데스크탑	1,523,000	5	220	1,315	34	1,349	1,349
태블릿PC	8.0', LTE	980,000	5	220	846	44	890	890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	24,000,000	5	220	20,727	545	21,272	21,272
프린터	컬러, A4	6,900,000	6	220	4,965	130	5,095	5,095
롤프린터	44인치	7,200,000	6	220	5,181	136	5,317	5,317
자동제도기		7,500,000	6	220	5,397	142	5,539	5,539
정밀스캐너	A2형	26,500,000	4	220	28,607	752	29,359	29,359
운영용S/W	랜디고측량시스템	32,970,720	10	220	14,237	374	14,611	14,611
도면편집S/W	AutoCAD	2,450,000	1	220	10,579	278	10,857	10,857
구조화S/W	ArchGIS	12,600,000	4	220	13,602	357	13,959	13,959
드론	회전익	10,000,000	5	220	8,636	454	9,090	9,090
드론영상후처리S/W	DJI Terra	7,520,000	4	220	8,118	213	8,331	8,331

* 상각비=취득가격 \div (내용년수 \times 연간가동일수) \times 0.95

* 정비비=실내사용기재=취득가격 \div (내용년수 \times 연간가동일수) \times 0.025

└현장사용기재=취득가격 \div (내용년수 \times 연간가동일수) \times 0.050

2.2.3 재료 · 소모품비

재료·소모품비는 2025년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에 지적측량종목별 소모량을 산정하여 계산함.

(금액단위: 원)

종목별		금액	비고
지 적 삼 각 (삼 각 보 조)	G N S S	86,534	
	T / S	86,534	
지 적 도 근	G N S S	52,322	
	T / S	52,322	
신 규 등 록	도 해	23,934	
	수 치	19,041	
등 록 전 환	도 해	25,205	
	수 치	20,997	
분 할 측 량	도 해	23,591	
	수 치	19,497	
축 척 변 경	도 해	24,276	
	수 치	20,083	
지 적 불 부 합 지 조 사 측 량	도 해	25,235	
경 계 복 원	도 해	23,021	
	수 치	18,470	
지 적 현 황	도 해	23,364	
	수 치	18,812	
도 시 계 획 선 명 시 측 량	도 해	23,021	
	수 치	18,470	
예 정 지 적 좌 표 도 작 성 업 무	지 구 계 점	7,812	
분 할 내 업 품	도 해	7,091	
	수 치	8,497	
현 황 내 업 품	도 해	6,864	
	수 치	7,812	

종목별	금액	비고
지적 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950,250
	경지구획정리	991,406
	신규토지구획	854,855
	신규경지구획	805,376
지적 재조사 측량	28,408	
세계측지계좌표변환	도 해	4,155
	수 치	3,292
다목적지적측량	659,168	
3차원지적구축측량	28,352	
침수흔적지조사측량	33,142	
지적기준점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279
	지적도근점	137
지적이용현황조사	377	
지적(임야)도전산화	4,169	
측량결과도전산화	29,685	
연속지적도작성	도해·수치	1,053
연속지적도품질개선	토지	1,053
	임야	1,053
	수치	1,053
용도지역지구도면작성	도 해	20,041
	수 치	19,699
지적공간정보도면작성	도 해	20,041
	수 치	19,714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	194	
도면작성	1,543	
지적(임야)도작성·재작성	15,610	
조서작성	125	
지적정보DB구축	28,251	
지적원도DB구축	8,598	
드론지적측량	107,267	

2.2.3.1 측량종목별 재료·소모품비 일람표

(금액단위: 원)

재료·소모품명 종목별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보조점표지					16,500	11,000	16,500	11,000
일반용지	900	900	480	480	168	204	168	204
프린터잉크	58,277	58,277	35,091	35,091	4,464	4,856	4,856	5,718
프린터드럼	26,657	26,657	16,051	16,051	2,042	2,221	2,221	2,615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700	700	700	700	700	700	1,400	1,400
성과도특수용지					60	60	60	60
롤패이퍼(종이)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합계	86,534	86,534	52,322	52,322	23,934	19,041	25,205	20,997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금액단위: 원)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불부합지 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도해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보조점표지	16,500	11,000	16,500	1,800	11,000	16,500	11,000	16,500	11,000
일반용지	168	204	168	204	204	168	204	168	204
프린터잉크	4,229	5,169	4,699	5,200	5,091	3,838	4,464	4,073	4,699
프린터드럼	1,934	2,364	2,149	2,328	2,328	1,755	2,042	1,863	2,149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700	700	700	1,400	1,400	700	700	700	700
성과도특수용지	60	60	60	27	60	60	60	60	60
롤페이지(종이)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합계	23,591	19,497	24,276	10,959	20,083	23,021	18,470	23,364	18,812

(금액단위: 원)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분할 내업품		지적현황 내업품	
	도해	수치	지구계점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보조점표지	2,700	11,000					
일반용지	168	204	204	168	204	168	204
프린터잉크	3,920	4,464	4,699	4,229	5,169	4,073	4,699
프린터드럼	1,755	2,042	2,149	1,934	2,364	1,863	2,149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성과도특수용지	27	60	60	60	60	60	60
롤페이지(종이)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합계	9,270	18,470	7,812	7,091	8,497	6,864	7,812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금액단위: 원)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토지구획	경지구획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도해	수치
보조점표지					2,750		
일반용지	20,520	20,160	20,520	20,160	120	120	120
프린터잉크	625,151	634,473	562,252	513,218	3,211	1,801	1,253
프린터드럼	285,959	290,223	257,187	234,758	1,469	824	573
롤플로터잉크						152	112
롤플로터헤드						96	72
측량결과도용지	7,000	17,500	5,600	14,000	14		
성과도특수용지					120		
롤페이퍼(종이)	11,620	29,050	9,296	23,240	2,324	1,162	1,162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10,000		
경계표지(철재)					8,400		
바인더							
D V D							
합계	950,250	991,406	854,855	805,376	28,408	4,155	3,292

(금액단위: 원)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조사관리		국토정보품질관리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이용 현황조사	지적(임야)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치	수치	수치	지적삼각	지적도근	조사	
보조점표지	16,500		16,500				
일반용지	7,200		168	24	24	36	
프린터잉크	46,998	17,859	10,026	861	78	234	469
프린터드럼	21,498	8,169	4,586	394	35	107	214
롤플로터잉크							5,833
롤플로터헤드							9,777
측량결과도용지	420,000		700				
성과도특수용지							
롤페이퍼(종이)	6,972	2,324	1,162			3,486	
폴리에스터필름	140,000						14,000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75
합계	659,168	28,352	33,142	1,279	137	377	4,169 29,685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금액단위: 원)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품질관리							
	연속지적도 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도해 수치	토지	임야	수치	도해	수치	도해
보조점표지								
일반용지	12	12	12	12	12	12	12	12
프린터잉크	704	704	704	704	548	313	548	313
프린터드럼	322	322	322	322	250	143	250	143
롤플로터잉크					5,833	5,833	5,833	5,833
롤플로터헤드					9,777	9,777	9,777	9,777
측량결과도용지								
성과도특수용지								
롤페이퍼(종이)					3,486	3,486	3,486	3,486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120	120	120	120
D V D	15	15	15	15	15	15	15	30
합계	1,053	1,053	1,053	1,053	20,041	19,699	20,041	19,714

(금액단위: 원)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품질관리				국토정보 DB구축		드론지적측량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작성	지적(임야도) 작성·재작성	조서작성	지적정보 DB구축	지적원도 DB구축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보조점표지							49,500
일반용지	12			12	168	12	51,300
프린터잉크	125	1,018		78	19,269	78	3,916
프린터드럼	57	465		35	8,814	35	1,791
롤플로터잉크			5,833			116	
롤플로터헤드			9,777			195	
측량결과도용지							700
성과도특수용지		60					60
롤페이퍼(종이)						1,162	
폴리에스터필름						7,000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합계	194	1,543	15,610	125	28,251	8,598	107,267

2.2.3.2 측량종목별 재료·소모품비 사용일수 및 1일 재료·소모품비 일람표

(1일재료소모품비/사용일수)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보조점표지					5,500 3.00	5,500 2.00	5,500 3.00	5,500 2.00
일반용지	12 75.00	12 75.00	12 40.00	12 40.00	12 14.00	12 17.00	12 14.00	12 17.00
프린터잉크	7,833 7.44	7,833 7.44	7,833 4.48	7,833 4.48	7,833 0.57	7,833 0.62	7,833 0.62	7,833 0.73
프린터드럼	3,583 7.44	3,583 7.44	3,583 4.48	3,583 4.48	3,583 0.57	3,583 0.62	3,583 0.62	3,583 0.73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2.00	700 2.00
성과도특수용지					60 1.00	60 1.00	60 1.00	60 1.00
롤페이퍼(종이)								
폴리에스터필름								
경계점표지(목재)								
경계점표지(철재)								
바인더								
D V D								

(1일재료소모품비/사용일수)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불부합지 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도해	도해	수치	도해
보조점표지	5,500 3.00	5,500 2.00	5,500 3.00	5,500 2.00	5,500 3.00	5,500 3.00	5,500 2.00	5,500 3.00	5,500 2.00
일반용지	12 14.00	12 17.00	12 14.00	12 17.00	12 21.00	12 14.00	12 17.00	12 14.00	12 17.00
프린터잉크	7,833 0.54	7,833 0.66	7,833 0.60	7,833 0.65	7,833 0.58	7,833 0.49	7,833 0.57	7,833 0.52	7,833 0.60
프린터드럼	3,583 0.54	3,583 0.66	3,583 0.60	3,583 0.65	3,583 0.58	3,583 0.49	3,583 0.57	3,583 0.52	3,583 0.60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700 1.00	700 1.00	700 1.00	700 2.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성과도특수용지	60 1.00	60 1.00	60 1.00	60 1.00		60 1.00	60 1.00	60 1.00	60 1.00
롤페이퍼(종이)					1,162 1.00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일재료소모품비/사용일수)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업무	분할 내업품		지적현황 내업품	
	도해	수치	지구계점	도해	수치	도해	수치
보조점표지	5,500 3.00	5,500 2.00					
일반용지	12 14.00	12 17.00	12 17.00	12 14.00	12 17.00	12 14.00	12 17.00
프린터잉크	7,833 0.49	7,833 0.57	7,833 0.60	7,833 0.54	7,833 0.66	7,833 0.52	7,833 0.60
프린터드럼	3,583 0.49	3,583 0.57	3,583 0.60	3,583 0.54	3,583 0.66	3,583 0.52	3,583 0.60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700 1.00
성과도특수용지	60 1.00	60 1.00	60 1.00	60 1.00	60 1.00	60 1.00	60 1.00
롤판이퍼(종이)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1일재료소모품비/사용일수)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측정측량				지적재조사		
	토지구획	경지구획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도해	수치
보조점표지					5,500 0.50		
일반용지	12 1,710	12 1,680	12 1,710	12 1,680	12 10.0	12 10.0	12 10.0
프린터잉크	7,833 79.81	7,833 81.00	7,833 71.78	7,833 65.52	7,833 0.41	7,833 0.23	7,833 0.16
프린터드럼	3,583 79.81	3,583 81.00	3,583 71.78	3,583 65.52	3,583 0.41	3,583 0.23	3,583 0.16
롤플로터잉크						5,833 0.04	5,833 0.03
롤플로터헤드						9,777 0.04	9,777 0.03
측량결과도용지	700 10.0	700 25.00	700 8.00	700 20	700 0.02		
성과도특수용지					60 2.00		
롤페이퍼(종이)	1,162 10.0	1,162 25.00	1,162 8.00	1,162 20	1,162 2.00	1,162 1.00	1,162 1.00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1,000 10		
경계표지(철재)					2,800 3.00		
바인더							
D V D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일재료소모품비)/사용일수)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조사관리		국토정보품질관리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이용 현황조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치	3차원	수치	지적삼각	지적도근		
보조점표지	5,500 3.00		5,500 3.00				
일반용지	12 600.0		12 14.00	12 2.00	12 2.00	12 3.00	
프린터잉크	7,833 6.00	7,833 2.28	7,833 1.28	7,833 0.11	7,833 0.01	7,833 0.03	7,833 0.06
프린터드럼	3,583 6.00	3,583 2.28	3,583 1.28	3,583 0.11	3,583 0.01	3,583 0.03	3,583 0.06
롤플로터잉크							5,833 1.00
롤플로터헤드							9,777 1.00
측량결과도용지	700 600.0		700 1.00				
성과도특수용지							
롤패이퍼(종이)	1,162 6.00	1,162 2.00	1,162 1.00			1,162 3.00	
폴리에스터필름	7,000 20.0						7,000 2.00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1,500 0.05

(1일재료소모품비/사용일수)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품질관리							
	연속지적도 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도해 수치	토지	임야	수치	도해	수치	도해
보조점표지								
일반용지	12 1.00	12 1.00	12 1.00	12 1.00	12 1.00	12 1.00	12 1.00	12 1.00
프린터잉크	7,833 0.09	7,833 0.09	7,833 0.09	7,833 0.09	7,833 0.07	7,833 0.04	7,833 0.07	7,833 0.04
프린터드럼	3,583 0.09	3,583 0.09	3,583 0.09	3,583 0.09	3,583 0.07	3,583 0.04	3,583 0.07	3,583 0.04
롤플로터잉크					5,833 1.00	5,833 1.00	5,833 1.00	5,833 1.00
롤플로터헤드					9,777 1.00	9,777 1.00	9,777 1.00	9,777 1.00
측량결과도용지								
성과도특수용지								
롤판이퍼(종이)					1,162 3.00	1,162 3.00	1,162 3.00	1,162 3.00
폴리에스터필름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6,000 0.02	6,000 0.02	6,000 0.02	6,000 0.02
D V D	1,500 0.01	1,500 0.01	1,500 0.01	1,500 0.01	1,500 0.01	1,500 0.01	1,500 0.01	1,500 0.02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일재료소모품비/사용일수)

종목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품질관리				국토정보 DB구축		드론지적측량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작성	지적(임야도)작 성·재작성	조서작성	지적정보 DB구축	지적원도 DB구축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보조점표지							5,500 9.00
일반용지	12 1.00			12 1.00	12 14.00	12 1.00	12 4,275.00
프린터잉크	7,833 0.02	7,833 0.13		7,833 0.01	7,833 2.46	7,833 0.01	7,833 0.50
프린터드럼	3,583 0.02	3,583 0.13		3,583 0.01	3,583 2.46	3,583 0.01	3,583 0.50
롤플로터잉크			5,833 1.00			5,833 0.02	
롤플로터헤드			9,777 1.00			9,777 0.02	
측량결과도용지							700 1.00
성과도특수용지		60 1.00					60 1.00
롤페이퍼(종이)						1,162 1.00	
폴리에스터필름						7,000 1.00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인더							
D V D							

2.2.3.3 재료소모품비 가격표(1)

(금액단위: 원)

품명	단위	규격	단가	비고
보조점표지	개	0.6cm*5cm*4cm(철재)	900	5,500원
일반용지	장	A4용지	12	32,000원÷2,500장=12원
프린터잉크	개	컬러(흑, 적, 청, 황)	7,833	940,000원÷120일=7,833원
프린터드럼	개	컬러(흑, 적, 청, 황)	3,583	645,000원÷180일=3,583원
롤플로터잉크	개	컬러(흑, 적, 청, 황)	5,833	700,000원÷120일=5,833원
롤플로터헤드	개	컬러(흑, 적, 청, 황)	9,777	1,760,000원÷180일=9,777원
측량결과도용지	장	520mm×420mm(무인쇄)	700	700원
성과도특수용지	장	A4(1권250매)	60	15,000원÷250장=60원
롤패이퍼(종이)	롤	24인치, 45m(지적도86장)	1,162	100,000원÷86장=1,162원
폴리에스터필름	매	540mm×440mm	7,000	7,000원
경계표지(목재)	개	3.5cm×3.5cm×35cm(목재)	1,000	1,000원
경계표지(철재)	개	철못1호, 2호, 3호평균	2,800	철제평균2,800원
바인더	개		6,000	6,000원
D V D	개	4Gb	1,500	1,500원

2.2.3.3 재료소모품비 가격표(2)

(금액단위: 원)

품명	단위	규격	단가	비고
터파기	m ³	1m ³ 당	시가	
거푸집	m ²	일반합판	시가	
콘크리트	m ³	중량배합손비빔	시가	
표석(주석)	개	화강암(9cm × 9cm × 15cm) +(11cm × 11cm × 45cm)	시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제1항
표석(반석)	개	24cm × 24cm × 8cm	시가	“
철제도근점	조	지름(4 ~ 6cm × 1 ~ 2cm) +(1cm × 15cm)	시가	“
각재	개	4cm × 4cm × 3m	시가	
각재	개	4cm × 4cm × 50cm	시가	
철선	kg	경2mm(연선)	시가	
측량깃폭	장	50cm × 40cm	시가	

2.3 간접측량비

2.3.1 제경비

구분	적용비율	비고
군지역	20%	
시지역	23%	
구지역	27%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50% 이내로 계상(「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2.3.2 기술료

구분	적용비율	비고
군지역	13%	
시지역	13%	
구지역	13%	

※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로 계상(「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4호)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Ⅱ. 단가산출표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1. 지적기준점측량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1-1.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1-1-1. 작업공정 품셈기준

1-1-1-1.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T/S) 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1.48)	1	2			(1.48)	(2.96)				
계획준비	(1.13)	1	1			(1.13)	(1.13)				
답사	2.78		2	1			5.56	2.78			
선점	1.57	1	2			1.57	3.14				
조표	3.65		2	1	1		7.30	3.65	3.65		
관측	3.74		2	1			7.48	3.74			
계산	(1.65)		2				(3.30)				
지적전산파일 변환	(1.48)		1				(1.48)				
준비도	작성	(1.74)			1			(1.74)			
	확인	(0.26)	1			(0.26)					
기지부합여부 확인	3.22		2	1			6.44	3.22			
성과	계산부	(1.48)		1			(1.48)				
작성	대장	(0.70)		1			(0.70)				
점검	(0.78)	1				(0.78)					
성과인계	(0.44)		1				(0.44)				
소계	외업	14.96				1.57	29.92	13.39	3.65		
	내업	(11.14)				(3.65)	(11.49)	(1.74)			
합계	26.10					5.22	41.41	15.13	3.65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9조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본 품은 토텔스테이션 장비로 작업 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이상 일 때와 위성(GNSS)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본 품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표고	계수		비고
	경위의(T/S)	위성(GNSS)	
500m 미만	1.0	0.5	
500m ~ 1,000m	1.2	0.6	
1,000m 초과	1.4	0.7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1-2. 단 가 산 출 (예)

1-1-2-1.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T/S) 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5.22	인	274,286	1,431,772	
	지적산업기사	41.41	인	242,724	10,051,200	
	지적기능사	15.13	인	180,875	2,736,638	
	인부	3.65	인	171,037	624,285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1.57	인	25,000	39,2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29.92	인	25,000	748,0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13.39	인	25,000	334,75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256,662	
		재료소모품비			86,534	
		기타				
기타	제경비	20%			2,968,779	
	기술료	13%			2,315,648	
합계		8점			21,593,518	여점 3 구점 5
1점당					2,699,190	

1-1-2-2. 지적삼각점측량(위성(GNSS)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2.61	인	274,286	715,886	
	지적산업기사	20.71	인	242,724	5,026,814	
	지적기능사	7.56	인	180,875	1,367,415	
	인부	1.82	인	171,037	311,287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78	인	25,000	19,500	
	지적산업기사	14.96	인	25,000	374,000	
	지적기능사	6.69	인	25,000	167,250	
	인부					
	기계경비				394,032	
	재료소모품비				86,534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484,280	
	기술료	13%			1,157,739	
합계		8점			11,104,737	여점 3 구점 5
1점당					1,388,092	

1-1-3. 수수료 기본단가표

1-1-3-1. 지적삼각점측량

- ① **지적삼각점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또는 위성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②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경위의(T/S)측량 : 군지역 41.4%, 시지역 41.5%, 구지역 41.5%

위성(GNSS)측량 : 군지역 44.6%, 시지역 44.7%, 구지역 44.5%

- ③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경위의(T/S)측량	1,116,000	1,146,000	1,181,000
위성(GNSS)측량	619,000	634,000	650,000

1-1-3-2.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단가 적용 기준

- ⑦ 위성(GNS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본 위성(GNSS) 측량방법의 지적 삼각점측량 단가를 적용하고,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지적삼각점측량 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⑧ 기준단가에는 지적삼각점표지 및 재료표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⑨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및 인부임은 별도로 계산한다.
- ⑩ 별채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1-4. 공정일람표

1-1-4-1.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T/S)측량)

(여점3점, 구점5점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1.57 (3.65)	1.57 (3.65)	1.57 (3.65)
지적산업기사		29.92 (11.49)	29.92 (11.49)	29.92 (11.49)
지적기능사		13.39 (1.74)	13.39 (1.74)	13.39 (1.74)
인부		3.65	3.65	3.65
소계	외업	48.53	48.53	48.53
	내업	(16.88)	(16.88)	(16.88)
합계		65.41	65.41	65.41

* ()내는 내업임

1-1-4-2. 지적삼각점측량(위성(GNSS)측량)

(여점3점, 구점5점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0.78 (1.83)	0.78 (1.83)	0.78 (1.83)
지적산업기사		14.96 (5.75)	14.96 (5.75)	14.96 (5.75)
지적기능사		6.69 (0.87)	6.69 (0.87)	6.69 (0.87)
인부		1.82	1.82	1.82
소계	외업	24.25	24.25	24.25
	내업	(8.45)	(8.45)	(8.45)
합계		32.70	32.70	32.70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1-2. 지적도근점측량

1-2-1. 작업공정 품셈기준

1-2-1-1. 지적도근점측량(경위의(T/S) 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1.12)	1	1			(1.12)	(1.12)				
계획준비	(0.56)	1	2			(0.56)	(1.12)				
답사	0.84		2	1			1.68	0.84			
선점	1.96	1	2		1	1.96	3.92		1.96		
관측	3.92		2	1			7.84	3.92			
계산	(1.68)		2				(3.36)				
지적전산파일변환	(1.12)		1				(1.12)				
준비도작성	(1.12)			1				(1.12)			
기지부합여부확인	2.24		2	1			4.48	2.24			
성과작성	(1.12)		2				(2.24)				
점검	(0.56)	1				(0.56)					
성과인계	(0.56)		1				(0.56)				
소계	외업	8.96				1.96	17.92	7.00	1.96		
	내업	(7.84)				(2.24)	(9.52)	(1.12)			
합계	16.80					4.20	27.44	8.12	1.96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적도근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본 품은 방위각법·위성(GNSS)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계수		비고
	방위각법, 위성(GNSS)측량법	배각법	
계수	1.00	1.37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지적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점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점측량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1-2-2. 단 가 산 출 (예)

1-2-2-1.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T/S) 측량)

군지역(방위각법)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4.20	인	274,286	1,152,001	
	지적산업기사	27.44	인	242,724	6,660,346	
	지적기능사	8.12	인	180,875	1,468,705	
	인부	1.96	인	171,037	335,232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1.96	인	25,000	49,000	
	지적산업기사	17.92	인	25,000	448,000	
	지적기능사	7.00	인	25,000	175,000	
	인부					
직접경비	기계경비				188,154	
	재료소모품비				52,322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923,257	
	기술료	13%			1,500,140	
합계		50점			13,952,157	
1점당					279,043	

1-2-2-2.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T/S) 측량)

군지역(배각법)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5.76	인	274,286	1,579,887	
	지적산업기사	37.59	인	242,724	9,123,995	
	지적기능사	11.12	인	180,875	2,011,330	
	인부	2.69	인	171,037	460,089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2.69	인	25,000	67,250	
	지적산업기사	24.55	인	25,000	613,750	
	지적기능사	9.59	인	25,000	239,750	
	인부					
	기계경비				188,154	
	재료소모품비				52,322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2,635,060	
	기술료	13%			2,055,347	
합계		50점			19,026,934	
1점당					380,539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2-2-3. 지적도근점측량(위성(GNSS)측량)

군지역(위성측량법)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4.20	인	274,286	1,152,001	
	지적산업기사	27.44	인	242,724	6,660,346	
	지적기능사	8.12	인	180,875	1,468,705	
	인부	1.96	인	171,037	335,232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1.96	인	25,000	49,000	
	지적산업기사	17.92	인	25,000	448,000	
	지적기능사	7.00	인	25,000	175,000	
	인부					
	기계경비				173,105	
	재료소모품비				52,322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923,257	
	기술료	13%			1,500,140	
합계		50점			13,937,108	
1점당					278,742	

1-2-3. 수수료 기본단가표

1-2-3-1. 지적도근점측량

① **지적도근점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적도근점측량을 경위의측량 또는 위성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도근점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배각법(T/S) : 군지역 30.1%, 시지역 30.2%, 구지역 35.1%

방위각법(T/S) : 군지역 37.3%, 시지역 37.1%, 구지역 45.2%

위성(GNSS)측량법 : 군지역 38.0%, 시지역 38.1%, 구지역 45.6%

③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경위의 (T/S)측량	배각법	1점당	115,000	118,000	141,000
	방위각법	1점당	104,000	106,000	133,000
위성(GNSS)측량법		1점당	106,000	109,000	134,000

1-2-3-2. 지적도근점측량 수수료 단가 적용 기준

Ⓐ 본 단가는 2등도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등도선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본 단가를 적용한다.

Ⓑ 기준단가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점 측량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가산한다.

Ⓒ 기준단가에는 도근점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및 인부임은 별도 가산한다.

1-2-4. 공정일람표

1-2-4-1. 지적도근점측량(T/S 방위각법, GNSS)

(50점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1.96 (2.24)	1.96 (2.24)	1.96 (2.24)
지적산업기사		17.92 (9.52)	17.92 (9.52)	17.92 (9.52)
지적기능사		7.00 (1.12)	7.00 (1.12)	7.00 (1.12)
인부		1.96	1.96	1.96
소계	외업	28.84	28.84	28.84
	내업	(12.88)	(12.88)	(12.88)
합계		41.72	41.72	41.72

* ()내는 내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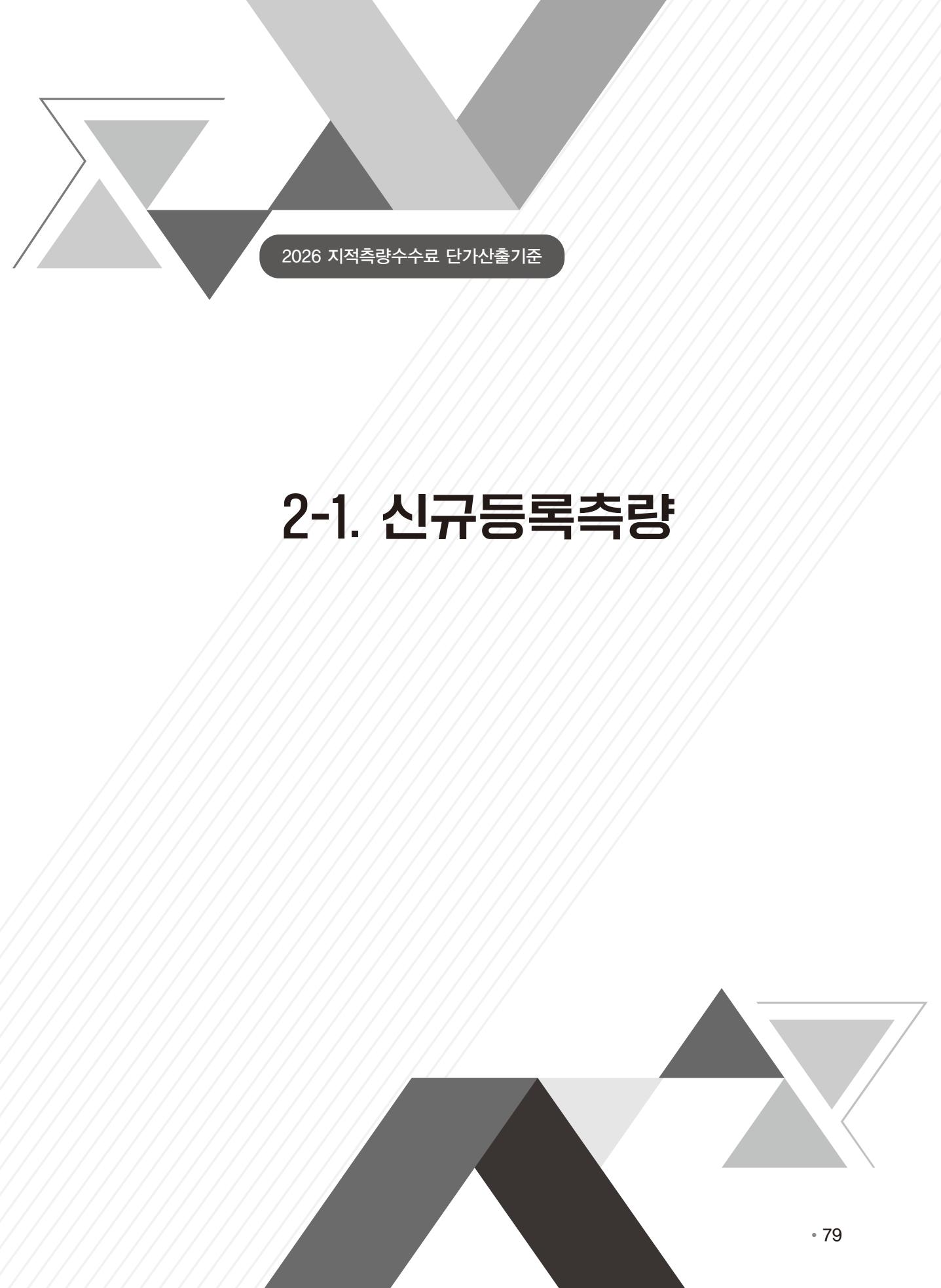
1-2-4-2. 지적도근점측량(T/S 배각법)

(50점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2.69 (3.07)	2.69 (3.07)	2.69 (3.07)
지적산업기사		24.55 (13.04)	24.55 (13.04)	24.55 (13.04)
지적기능사		9.59 (1.53)	9.59 (1.53)	9.59 (1.53)
인부		2.69	2.69	2.69
소계	외업	39.52	39.52	39.52
	내업	(17.64)	(17.64)	(17.64)
합계		57.16	57.16	57.16

* ()내는 내업임

2. 지적세부측량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1. 신규등록측량

2-1-1. 작업공정 품셈기준

2-1-1-1. 신규등록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측량계획 및 준비	(0.02)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29	0.29	0.29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22)	0.34 (0.34)	0.31	0.30
합계		0.56	0.65	0.30

-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text{m}^2$, 임야는 $5,000\text{m}^2$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 \times 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⑤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⑥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1-1-2. 신규등록측량(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4)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26	0.26	0.26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31	0.28	0.27	
	내업	(0.21)	(0.34)		
합계		0.52	0.62	0.27	

()는
내업임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 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1-1-3. 품셈 적용기준

① 신규등록 토지의 축척은 신규등록(도해)는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하며, 신규등록(수치)는 1/500, 1/1000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등록 측량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규등록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m²이하, 임야 대장등록지는 200m²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계상한다.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1-2. 단 가 산 출 (예)

2-1-2-1. 신규등록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56	인	274,286	153,600	
	지적산업기사	0.65	인	242,724	157,770	
	지적기능사	0.30	인	180,875	54,262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34	인	25,000	8,50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31	인	25,000	7,75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30	인	25,000	7,500
	인부					
	기계경비				13,560	
	재료소모품비				23,934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73,126	
	기술료	13%			57,039	
합계		1필, 1,500m ²			557,041	
1필당					557,041	

2-1-2-2. 신규등록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52	인	274,286	142,628	
	지적산업기사	0.62	인	242,724	150,488	
	지적기능사	0.27	인	180,875	48,836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31	인	25,000	7,750	
	지적산업기사	0.28	인	25,000	7,000	
	지적기능사	0.27	인	25,000	6,750	
	인부					
	기계경비				12,688	
	재료소모품비				19,041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68,390	
	기술료	13%			53,344	
합계		1필, 1,500m ²			516,915	
1필당					516,915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1-3. 수수료 기본단가표

2-1-3-1. 신규등록측량(도해)

① 본 단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신규등록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8.3%, 시지역 78.3%, 구지역 78.2%

임야 : 군지역 77.4%, 시지역 78.3%, 구지역 78.7%

③ 신규등록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436,000	614,000	688,000
	임야	5,000m ²	546,000	727,000	815,000

2-1-3-2. 신규등록측량(수치)

① 본 단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신규등록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80.5%, 시지역 80.9%, 구지역 81.0%

③ 신규등록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500m ²	416,000	587,000	664,000

2-1-3-3. 연속지 · 집단지 신규등록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 · 군 · 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 수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436,000	423,000	399,000	372,000	342,000
		임야	546,000	538,000	505,000	482,000	444,000
	수치	416,000	402,000	380,000	358,000	325,000	
시지역	도해	토지	614,000	600,000	579,000	542,000	512,000
		임야	727,000	716,000	691,000	664,000	631,000
	수치	587,000	576,000	556,000	522,000	488,000	
구지역	도해	토지	688,000	674,000	651,000	620,000	586,000
		임야	815,000	801,000	778,000	744,000	713,000
	수치	664,000	653,000	626,000	600,000	561,000	

2-1-4. 공정일람표

2-1-4-1. 신규등록측량(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34 (0.22)	0.44 (0.28)	0.48 (0.31)	0.57 (0.37)	0.52 (0.34)	0.62 (0.40)
지적산업기사	0.31 (0.34)	0.40 (0.44)	0.43 (0.48)	0.52 (0.57)	0.48 (0.52)	0.56 (0.62)
지적기능사	0.30	0.38	0.42	0.50	0.46	0.55
인부						
소계	외업	0.95	1.22	1.33	1.59	1.46
	내업	(0.56)	(0.72)	(0.79)	(0.94)	(0.86)
합계	1.51	1.94	2.12	2.53	2.32	2.75

* ()내는 내업임

2-1-4-2. 신규등록측량(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31 (0.21)		0.43 (0.29)		0.48 (0.32)	
지적산업기사	0.28 (0.34)		0.39 (0.48)		0.43 (0.52)	
지적기능사	0.27		0.38		0.42	
인부						
소계	외업	0.86		1.20		1.33
	내업	(0.55)		(0.77)		(0.84)
합계	1.41		1.97		2.17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2. 등록전환측량

2-2-1. 작업공정 품셈기준

2-2-1-1. 등록전환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5)	(0.06)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5)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5	0.45	0.45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6)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51	0.47	0.46
	내업	(0.25)	(0.34)	
합계	0.76	0.81	0.46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면적 $1,500\text{m}^2$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 + (0.1 \times 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2-1-2. 등록전환측량(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5)	(0.06)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5	0.45	0.45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51	0.47	0.46
	내업	(0.24)	(0.34)	
합계	0.75	0.81	0.46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회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 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2-1-3. 품셈 적용기준

① 등록전환 할 토지의 축척은 등록전환(도해)는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하며, 등록전환(수치)는 1/500, 1/1000으로 구분한다.

② 등록전환 될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 기준 200m²이하)인 필지에 대해서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등록전환을 위하여 수반되는 임야분할측량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2-2. 단 가 산 출 (예)

2-2-2-1. 등록전환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76	인	274,286	208,457	
	지적산업기사	0.81	인	242,724	196,606	
	지적기능사	0.46	인	180,875	83,202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51	인	25,000	12,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47	인	25,000	11,75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46	인	25,000	11,50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8,305	
	재료소모품비				25,205	
	기타					
	제경비	20%			97,653	
기술료	기술료	13%			76,169	
	합계	1필, 1,500m ²			741,597	
1필당					741,597	

2-2-2-2. 등록전환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75	인	274,286	205,714	
	지적산업기사	0.81	인	242,724	196,606	
	지적기능사	0.46	인	180,875	83,202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51	인	25,000	12,750	
	지적산업기사	0.47	인	25,000	11,750	
	지적기능사	0.46	인	25,000	11,500	
	인부					
	기계경비				18,027	
	재료소모품비				20,997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97,104	
	기술료	13%			75,741	
합계		1필, 1,500m ²			733,391	
1필당					733,391	

2-2-3. 수수료 기본단가표

2-2-3-1. 등록전환측량(도해)

① 등록전환측량(도해)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등록전환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0.3%, 시지역 70.4%, 구지역 70.4%

③ 등록전환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521,000	735,000

2-2-3-2. 등록전환측량(수치)

① 등록전환측량(수치)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이 경우에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등록전환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73.6%, 시지역 73.5%, 구지역 73.3%

③ 등록전환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500m ²	540,000	761,000	856,000

2-2-3-3. 연속지 · 집단지 신규등록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 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521,000	506,000	478,000	444,000
	수차		540,000	524,000	494,000	459,000
시지역	도해	토지	735,000	720,000	693,000	653,000
	수차		761,000	745,000	714,000	675,000
구지역	도해	토지	831,000	813,000	782,000	746,000
	수차		856,000	837,000	808,000	768,000

2-2-4. 공정일람표

2-2-4-1. 등록전환측량(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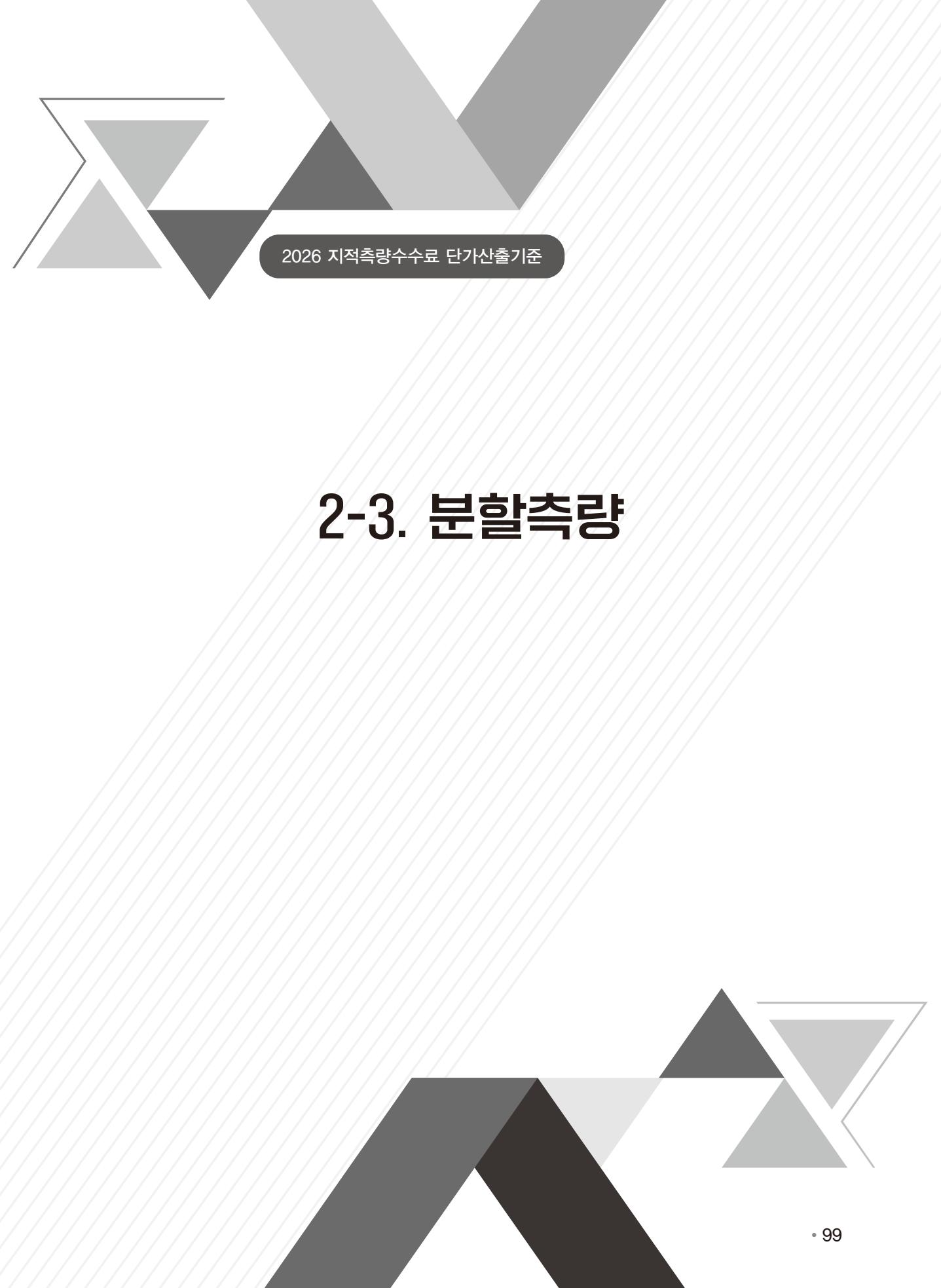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51 (0.25)	0.71 (0.35)	0.79 (0.39)	0.57 (0.37)	0.52 (0.34)	0.62 (0.40)
지적산업기사	0.47 (0.34)	0.66 (0.48)	0.72 (0.52)	0.52 (0.57)	0.48 (0.52)	0.56 (0.62)
지적기능사	0.46	0.64	0.71	0.50	0.46	0.55
인부						
소계	외업	1.44	2.01	2.22	1.59	1.46
	내업	(0.59)	(0.83)	(0.91)	(0.94)	(0.86)
합계	2.03	2.84	3.13	2.53	2.32	2.75

* ()내는 내업임

2-2-4-2. 등록전환측량(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51 (0.24)		0.71 (0.34)		0.79 (0.37)	
지적산업기사	0.47 (0.34)		0.66 (0.48)		0.72 (0.52)	
지적기능사	0.46		0.64		0.71	
인부						
소계	외업	1.44	2.01	2.22		
	내업	(0.58)	(0.82)	(0.89)		
합계	2.02		2.83		3.11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3. 분할측량

2-3-1. 작업공정 품셈기준

2-3-1-1. 분할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5	0.45	0.45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51	0.47	0.46
	내업	(0.22)	(0.34)	
합계	0.73	0.81	0.46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m², 임야는 5,0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⑤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⑥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3-1-2. 분할측량(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4)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8	0.38	0.38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44	0.40	0.39
	내업	(0.21)	(0.34)	
합계	0.65	0.74	0.39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3-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②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한 면적계수를 품에 곱하여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 ③ 분할측량 할 토지의 축척은 분할측량(도해)는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하며 분할측량(수치)는 1/500, 1/1000으로 구분한다.
- ④ 면적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 값을 가산하고, 분할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 값을 가산한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지역 등에서 현장측량 없이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분할측량 내업품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및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⑥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⑦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⑧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3-2. 단 가 산 출 (예)

2-3-2-1. 분할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73	인	274,286	200,228	
	지적산업기사	0.81	인	242,724	196,606	
	지적기능사	0.46	인	180,875	83,202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51	인	25,000	12,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47	인	25,000	11,75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46	인	25,000	11,50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7,963	
	재료소모품비				23,591	
	기타					
	제경비	20%			96,007	
기술료	기술료	13%			74,886	
	합계	2필, 1,500m ²			728,483	
1필당					364,242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2-2-2. 등록전환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65	인	274,286	178,285	
	지적산업기사	0.74	인	242,724	179,615	
	지적기능사	0.39	인	180,875	70,541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44	인	25,000	11,000	
	지적산업기사	0.40	인	25,000	10,000	
	지적기능사	0.39	인	25,000	9,750	
	인부					
	기계경비				15,962	
	재료소모품비				19,497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85,688	
	기술료	13%			66,837	
합계		2필, 1,500m ²			647,175	
1필당					323,588	

2-3-3. 수수료 기본단가표

2-3-3-1. 분할측량(도해)

① **분할측량(도해)** 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이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분할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8.4%, 시지역 72.5%, 구지역 72.7%
 임야 : 군지역 77.8%, 시지역 73.6%, 구지역 73.9%

③ **분할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286,000	372,000
	임야	5,000m ²	358,000	450,000

2-3-3-2. 분할측량(수치)

① **분할측량(수치)** 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이 경우에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분할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85.3%, 시지역 78.3%, 구지역 79.3%

③ **분할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500m ²	276,000	358,000	408,00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3-3-3. 단가 적용기준

- ① 분할측량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②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m²)으로 한다.
- ③ 분할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 공시 지가	9,000원 이하	9,001원~ 26,000원	26,001원~ 51,000원	51,001원~ 170,000원	170,001원~ 1,710,000원	1,71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17,060,001원 ~ 25,590,000원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70	1.80

개별 공시 지가	25,590,001원 ~ 34,120,000원	34,120,001원 ~ 42,650,000원	42,650,001원 ~ 51,180,000원	51,180,001원 ~ 59,710,000원	59,710,001원 ~ 68,240,000원	68,240,001원 ~ 77,000,000원	77,000,000원 초과
계수	1.90	2.00	2.10	2.20	2.30	2.40	2.50

- ④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0,000m²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0,000m² 이상일 경우 각각 30,000m², 100,000m²에 해당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해당필지 전체에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분할측량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분할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m²이하, 임야대장 등록지는 200m²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 ⑥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 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 ⑦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지역에서 현장측량 없이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분할측량 내업품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를 적용하되, 면적을 지정할 경우 내업품 수수료 단가의 40%를 가산하고 선을 지정할 경우 3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⑧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 차액정산은 종목변경 시점의 수수료 체계(지역구분 또는 지가계수)를 따른다.
- ⑨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2-3-4. 연속지 · 집단지 신규등록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 · 군 · 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 수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286,000	277,000	261,000	242,000
		임야	358,000	353,000	334,000	317,000
	수치	276,000	269,000	251,000	236,000	213,000
시지역	도해	토지	372,000	364,000	350,000	330,000
		임야	450,000	442,000	427,000	409,000
	수치	358,000	350,000	336,000	319,000	296,000
구지역	도해	토지	421,000	412,000	397,000	377,000
		임야	504,000	493,000	479,000	460,000
	수치	408,000	399,000	385,000	368,000	346,00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3-4. 공정일람표

2-3-4-1. 분할측량(도해)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51 (0.22)	0.65 (0.28)	0.71 (0.31)	0.86 (0.37)	0.79 (0.34)	0.93 (0.40)		
지적산업기사	0.47 (0.34)	0.60 (0.44)	0.66 (0.48)	0.79 (0.57)	0.72 (0.52)	0.86 (0.62)		
지적기능사	0.46	0.59	0.64	0.77	0.71	0.84		
인부								
소계	외업	1.44	1.84	2.01	2.42	2.22	2.63	
	내업	(0.56)	(0.72)	(0.79)	(0.94)	(0.86)	(1.02)	
합계	2.00	2.56	2.80	3.36	3.08	3.65		

* ()내는 내업임

2-3-4-2. 분할측량(수치)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44 (0.21)		0.62 (0.29)		0.68 (0.32)	
지적산업기사			0.40 (0.34)		0.56 (0.48)		0.62 (0.52)	
지적기능사			0.39		0.55		0.60	
인부								
소계	외업		1.23		1.73		1.90	
	내업		(0.55)		(0.77)		(0.84)	
합계			1.78		2.50		2.74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4. 축척변경측량

2-4-1. 작업공정 품셈기준

2-4-1-1. 축척변경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0	0.40	0.40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42	0.41	
	내업	(0.34)		
합계	0.69	0.76	0.41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m², 임야는 5,0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⑤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⑥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축적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4-1-2. 축척변경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4)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4	0.44	0.44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5)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내업	0.51 (0.21)	0.46 (0.34)	0.45
합계		0.72	0.80	0.45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4-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②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계상한다.
- ③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4-2. 단 가 산 출 (예)

2-4-2-1. 축척변경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69	인	274,286	189,257	
	지적산업기사	0.76	인	242,724	184,470	
	지적기능사	0.41	인	180,875	74,158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47	인	25,000	11,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42	인	25,000	10,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41	인	25,000	10,25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6,487	
	재료소모품비				24,276	
	기타					
	제경비	20%			89,577	
기술료	기술료	13%			69,870	
	합계	1필, 1,500m ²			680,595	
1필당					680,595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4-2-2. 축척변경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72	인	274,286	197,485	
	지적산업기사	0.80	인	242,724	194,179	
	지적기능사	0.45	인	180,875	81,393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51	인	25,000	12,750	
	지적산업기사	0.46	인	25,000	11,500	
	지적기능사	0.45	인	25,000	11,250	
	인부					
	기계경비				17,732	
	재료소모품비				20,083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94,611	
	기술료	13%			73,797	
합계		1필, 1,500m ²			714,780	
1필당					714,780	

2-4-3. 수수료 기본단가표

2-4-3-1. 축척변경측량(도해)

① **축척변경측량(도해)** 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축척변경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5.1%, 시지역 55.2%, 구지역 55.3%

임야 : 군지역 54.8%, 시지역 54.7%, 구지역 55.0%

③ 축척변경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375,000	530,000
	임야	5,000m ²	471,000	625,000

2-4-3-2. 축척변경측량(수치)

① **축척변경측량(수치)** 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축척변경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55.8%, 시지역 56.5%, 구지역 56.0%

③ 분할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500m ²	399,000	568,000	637,00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4-3-3. 연속지 · 집단지 축척변경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 · 군 · 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375,000	366,000	343,000	316,000	292,000
		임야	471,000	464,000	439,000	416,000	388,000
	수치	399,000	387,000	364,000	341,000	309,000	
시지역	도해	토지	530,000	518,000	499,000	469,000	444,000
		임야	625,000	614,000	593,000	565,000	539,000
	수치	568,000	560,000	536,000	506,000	473,000	
구지역	도해	토지	597,000	585,000	563,000	538,000	509,000
		임야	699,000	685,000	665,000	640,000	609,000
	수치	637,000	624,000	600,000	571,000	541,000	

2-4-4. 공정일람표

2-4-4-1. 축척변경측량(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47 (0.22)	0.60 (0.28)	0.66 (0.31)	0.79 (0.37)	0.72 (0.34)	0.86 (0.40)
지적산업기사	0.42 (0.34)	0.54 (0.44)	0.59 (0.48)	0.71 (0.57)	0.65 (0.52)	0.76 (0.62)
지적기능사	0.41	0.52	0.57	0.69	0.63	0.75
인부						
소계	외업	1.30	1.66	1.82	2.19	2.00
	내업	(0.56)	(0.72)	(0.79)	(0.94)	(0.86)
합계	1.86	2.38	2.61	3.13	2.86	3.39

* ()내는 내업임

2-4-4-2. 축척변경측량(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51 (0.21)		0.71 (0.29)		0.79 (0.32)	
지적산업기사	0.46 (0.34)		0.64 (0.48)		0.71 (0.52)	
지적기능사	0.45		0.63		0.69	
인부						
소계	외업	1.42		1.98		2.19
	내업	(0.55)		(0.77)		(0.84)
합계	1.97		2.75		3.03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5.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2-5-1. 작업공정 품셈기준

2-5-1-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측량계획 및 준비	(0.01)	(0.01)		
측량준비도 작성		(0.06)		
현지측량 준비	(0.01)	(0.01)		
현지측량	(0.01)			
성과설명	0.35	0.34	0.3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15)	(0.33)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1)	(0.03)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35	0.34	0.34
	내업	(0.28)	(0.55)	
합계	0.63	0.89	0.34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조사·측량으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m², 임야는 5,0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⑤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⑥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축적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5-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②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 · 측량할 경우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조사 · 측량으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 시 분할 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단가를 가산한다.
- ④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한 면적계수를 품에 곱하여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 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5-2. 단 가 산 출 (예)

2-5-2-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63	인	274,286	172,800	
	지적산업기사	0.89	인	242,724	216,024	
	지적기능사	0.34	인	180,875	61,497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35	인	25,000	8,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34	인	25,000	8,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34	인	25,000	8,50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8,445	
	재료소모품비				25,235	
	기타					
	제경비	20%			90,064	
기술료	기술료	13%			70,250	
	합계	2필, 1,500m ²			680,065	
1필당					340,033	

2-5-3. 수수료 기본단가표

2-5-3-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 ①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측량할 경우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②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7.3%, 시지역 73.1%, 구지역 73.2%
 임야 : 군지역 77.5%, 시지역 72.6%, 구지역 72.7%

- ③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263,000	350,000	394,000
	임야	5,000m ²	334,000	413,000	461,000

2-5-3-2. 단가 적용기준

- ①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 수수료는 분할 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가 추가될 때마다 1필지 단가를 가산한다.

2-5-3-3. 연속지 · 집단지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 · 군 · 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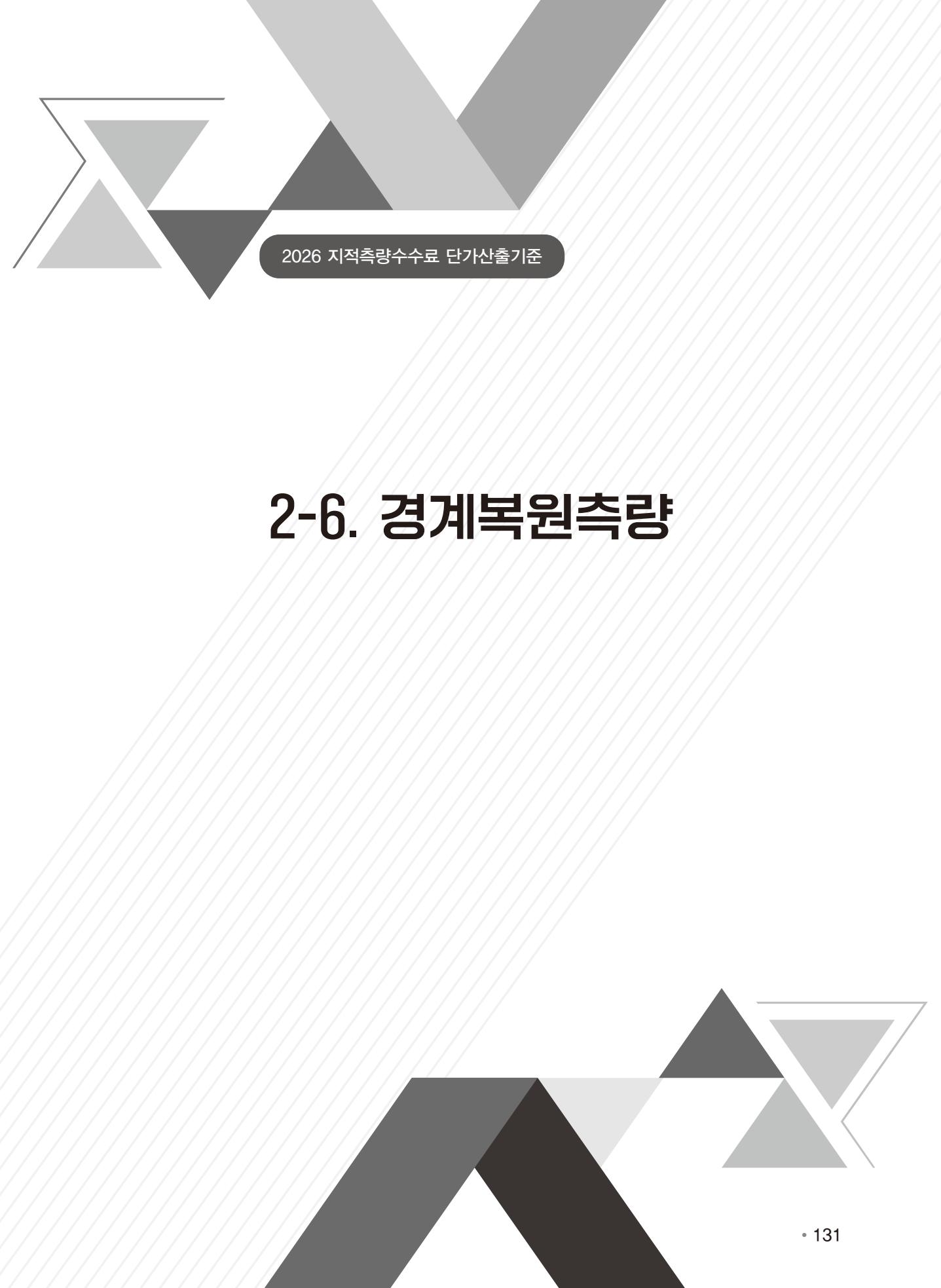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263,000	255,000	240,000	224,000
		수치	334,000	327,000	309,000	293,000
시지역	도해	토지	350,000	342,000	330,000	310,000
		수치	413,000	406,000	392,000	377,000
구지역	도해	토지	394,000	386,000	373,000	356,000
		수치	461,000	453,000	439,000	419,000
						402,000

2-5-4. 공정일람표

2-5-4-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35 (0.28)	0.45 (0.36)	0.49 (0.39)	0.59 (0.47)	0.54 (0.43)	0.64 (0.51)
지적산업기사	0.34 (0.55)	0.44 (0.70)	0.48 (0.77)	0.57 (0.92)	0.52 (0.85)	0.62 (1.00)
지적기능사	0.34	0.44	0.48	0.57	0.52	0.62
인부						
소계	외업	1.03	1.33	1.45	1.73	1.58
	내업	(0.83)	(1.06)	(1.16)	(1.39)	(1.28)
합계	1.86	2.39	2.61	3.12	2.86	3.39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6. 경계복원측량

2-6-1. 작업공정 품셈기준

2-6-1-1. 경계복원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6	0.46	0.46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4)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3)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53	0.48	0.47
	내업	(0.20)	(0.29)	
합계	0.73	0.77	0.47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300m², 임야는 3,0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⑤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⑥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6-1-2. 경계복원측량(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3	0.33	0.33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2)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내업	0.38 (0.20)	0.35 (0.27)	0.34
합계		0.58	0.62	0.34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6-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에는 경계점표지의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경계점표지를 제작하여 제공할 경우 재료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 ②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품을 별도 계상한다.
- ③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6-2. 단 가 산 출 (예)

2-6-2-1. 경계복원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73	인	274,286	200,228	
	지적산업기사	0.77	인	242,724	186,897	
	지적기능사	0.47	인	180,875	85,011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53	인	25,000	13,2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48	인	25,000	12,0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47	인	25,000	11,75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7,916	
	재료소모품비				23,021	
	기타					
	제경비	20%			94,427	
기술료	기술료	13%			73,653	
	합계	1필, 300m ²			718,153	
1필당					718,153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6-2-2. 경계복원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58	인	274,286	159,085	
	지적산업기사	0.62	인	242,724	150,488	
	지적기능사	0.34	인	180,875	61,497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38	인	25,000	9,500	
	지적산업기사	0.35	인	25,000	8,750	
	지적기능사	0.34	인	25,000	8,500	
	인부					
	기계경비				13,655	
	재료소모품비				18,470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74,214	
	기술료	13%			57,887	
합계		1필, 300m ²			562,046	
1필당					562,046	

2-6-3. 수수료 기본단가표

2-6-3-1. 경계복원측량(도해)

① **경계복원측량(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경계복원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0.7%, 시지역 56.1%, 구지역 56.5%

임야 : 군지역 59.7%, 시지역 56.7%, 구지역 57.9%

③ 경계복원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300m ²	436,000	568,000
	임야	3,000m ²	542,000	686,000

2-6-3-2. 경계복원측량(수치)

① **경계복원측량(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경계복원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6.6%, 시지역 61.6%, 구지역 62.2%

③ 경계복원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300m ²	374,000	488,000	558,00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6-3-3. 단가 적용기준

- ①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m²)으로 한다.
- ②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 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 공시 지가	9,000원 이하	9,001원~ 26,000원	26,001원~ 51,000원	51,001원~ 170,000원	170,001원~ 1,710,000원	1,710,001원~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17,060,001원 ~ 25,590,000원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70	1.80

개별 공시 지가	25,590,001원 ~ 34,120,000원	34,120,001원 ~ 42,650,000원	42,650,001원 ~ 51,180,000원	51,180,001원 ~ 59,710,000원	59,710,001원 ~ 68,240,000원	68,240,001원 ~ 77,000,000원	77,000,000원 초과
계수	1.90	2.00	2.10	2.20	2.30	2.40	2.50

- ③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 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 ④ 경계복원측량 시 해당필지 일부 경계점(연접한 필지와 맞닿은 부분의 경계점)에 대한 경계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하고자 하는 경계복원점이 여러 필지에 연접되어 있는 경우 연접한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⑤ 경계복원측량 필지수가 5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6-3-4. 연속지 · 집단지 경계복원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 · 군 · 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436,000	423,000	398,000	370,000	335,000
		임야	542,000	529,000	507,000	476,000	445,000
	수치	374,000	363,000	345,000	319,000	292,000	
시지역	도해	토지	568,000	556,000	532,000	507,000	475,000
		임야	686,000	671,000	648,000	620,000	590,000
	수치	488,000	477,000	458,000	432,000	406,000	
구지역	도해	토지	646,000	632,000	609,000	581,000	548,000
		임야	775,000	765,000	740,000	710,000	679,000
	수치	558,000	544,000	524,000	499,000	472,000	

2-6-4. 공정일람표

2-6-4-1. 경계복원측량(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53 (0.20)	0.68 (0.26)	0.74 (0.28)	0.89 (0.34)	0.82 (0.31)	0.96 (0.36)
지적산업기사	0.48 (0.29)	0.61 (0.37)	0.67 (0.41)	0.81 (0.49)	0.74 (0.45)	0.87 (0.53)
지적기능사	0.47	0.60	0.66	0.79	0.72	0.86
인부						
소계	외업	1.48	1.89	2.07	2.49	2.28
	내업	(0.49)	(0.63)	(0.69)	(0.83)	(0.76)
합계	1.97	2.52	2.76	3.32	3.04	3.58

* ()내는 내업임

2-6-4-2. 경계복원측량(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38 (0.20)		0.53 (0.28)		0.59 (0.31)	
지적산업기사	0.35 (0.27)		0.49 (0.38)		0.54 (0.42)	
지적기능사	0.34		0.48		0.52	
인부						
소계	외업	1.07		1.50		1.65
	내업	(0.47)		(0.66)		(0.73)
합계	1.54		2.16		2.38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7. 지적현황측량

2-7-1. 작업공정 품셈기준

2-7-1-1. 지적현황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1	0.41	0.41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4)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3)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48	0.43	0.42
	내업	(0.20)	(0.29)	
합계	0.68	0.72	0.42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m², 임야는 5,0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⑤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⑥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지적현황측량 시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7-1-2. 지적현황측량(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6	0.36	0.36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2)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내업	0.41 (0.20)	0.38 (0.27)	0.37
합계		0.61	0.65	0.37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현황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지적현황측량 시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7-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적현황측량시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②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한 면적계수를 품에 곱하여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 ③ 면적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하고, 현황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의 값을 가산한다.
- ④ 현장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및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계상한다.
- ⑦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7-2. 단 가 산 출 (예)

2-7-2-1. 지적현황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68	인	274,286	186,514	
	지적산업기사	0.72	인	242,724	174,761	
	지적기능사	0.42	인	180,875	75,967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48	인	25,000	12,000	
	지적산업기사	0.43	인	25,000	10,750	
	지적기능사	0.42	인	25,000	10,500	
	인부					
직접경비	기계경비				16,441	
	재료소모품비				23,364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87,448	
	기술료	13%			68,210	
합계		2필, 1,500m ²			665,955	
1필당					332,978	

2-7-2-2. 지적현황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61	인	274,286	167,314	
	지적산업기사	0.65	인	242,724	157,770	
	지적기능사	0.37	인	180,875	66,923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41	인	25,000	10,250	
	지적산업기사	0.38	인	25,000	9,500	
	지적기능사	0.37	인	25,000	9,250	
	인부					
	기계경비				16,001	
	재료소모품비				18,812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78,401	
	기술료	13%			61,153	
합계		2필, 1,500m ²			595,374	
1필당					297,687	

2-7-3. 수수료 기본단가표

2-7-3-1. 지적현황측량(도해)

① **지적현황측량(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현황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7.2%, 시지역 70.8%, 구지역 71.7%
 임야 : 군지역 76.6%, 시지역 72.6%, 구지역 73.2%

③ 지적현황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257,000	332,000
	임야	5,000m ²	322,000	407,000

2-7-3-2. 지적현황측량(수치)

① **지적현황측량(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83.2%, 시지역 76.5%, 구지역 77.5%

③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500m ²	248,000	320,000	368,00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7-3-3. 단가 적용기준

- ①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②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m²)으로 한다.
- ③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 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 가를 적용한다.

개별 공시 지가	9,000원 이하	9,001원~ 26,000원	26,001원~ 51,000원	51,001원~ 170,000원	170,001원~ 1,710,000원	1,71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17,060,001원 ~ 25,590,000원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70	1.80

개별 공시 지가	25,590,001원 ~ 34,120,000원	34,120,001원 ~ 42,650,000원	42,650,001원 ~ 51,180,000원	51,180,001원 ~ 59,710,000원	59,710,001원 ~ 68,240,000원	68,240,001원 ~ 77,000,000원	77,000,000원 초과
계수	1.90	2.00	2.10	2.20	2.30	2.40	2.50

- ④ 현황(분할식)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0,000m²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0,000m² 이상일 경우 각각 30,000m², 100,000m²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해당필지 전체에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현황측량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현황(분할식)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m²이하, 임야대장등록지는 200m²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 ⑥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 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 ⑦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지구 등의 지적확정측량 지역에서 지적확정측량예정선에 의한 경위의측량 방법에 따른 수치도면 발급요구시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⑧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획물 지적현황 측량(수치) 수수료에 50%의 값을 가산 적용한다.
- ⑨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은 지역구분계수를 적용한 행정구역별(시·군·구) 수수료를 적용하며, 인허가 면적등을 도상에 맞추어 성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에 40%, 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 적용한다.
- ⑩ 면적측량을 요하지 않는 선현황의 경우는 연속된 매 200m마다 기본단가를 적용하며 1필지 내 선의 증가시 마다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 ⑪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접합 및 도로명기본도의 정밀도 개선 사업」에 따른 수수료는 지역구분 계수를 반영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되, 국가시책사업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⑫ 지적현황측량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7-3-4. 연속지 · 집단지 지적현황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 · 군 · 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257,000	250,000	235,000	217,000
		임야	322,000	316,000	301,000	283,000
	수치	248,000	241,000	227,000	210,000	192,000
시지역	도해	토지	332,000	326,000	311,000	296,000
		임야	407,000	398,000	384,000	367,000
	수치	320,000	313,000	300,000	285,000	268,000
구지역	도해	토지	380,000	371,000	358,000	341,000
		임야	453,000	448,000	433,000	416,000
	수치	368,000	359,000	345,000	330,000	310,000

2-7-4. 공정일람표

2-7-4-1. 지적현황측량(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48 (0.20)	0.61 (0.26)	0.69 (0.26)	0.81 (0.34)	0.74 (0.31)	0.87 (0.36)
지적산업기사	0.43 (0.29)	0.55 (0.37)	0.60 (0.41)	0.72 (0.49)	0.66 (0.45)	0.78 (0.53)
지적기능사	0.42	0.54	0.59	0.71	0.65	0.76
인부						
소계	외업	1.33	1.70	1.88	2.24	2.41
	내업	(0.49)	(0.63)	(0.67)	(0.83)	(0.89)
합계	1.82	2.33	2.55	3.07	2.81	3.30

* ()내는 내업임

2-7-4-2. 지적현황측량(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41 (0.20)		0.57 (0.28)		0.63 (0.31)	
지적산업기사	0.38 (0.27)		0.53 (0.38)		0.59 (0.42)	
지적기능사	0.37		0.52		0.57	
인부						
소계	외업	1.16		1.62		1.79
	내업	(0.47)		(0.66)		(0.73)
합계	1.63		2.28		2.52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8. 도시계획선명시측량

2-8-1. 작업공정 품셈기준

2-8-1-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6	0.46	0.46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4)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3)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53	0.48	0.47
	내업	(0.20)	(0.29)	
합계	0.73	0.77	0.47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300m^2 , 임야는 $3,000\text{m}^2$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 + (0.1 \times 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⑤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⑥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8-1-2.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3	0.33	0.33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2)		()는 내업임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내업	0.38 (0.20)	0.35 (0.27)	0.34
합계		0.58	0.62	0.34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2-8-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에는 경계점표지의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경계점표지를 제작하여 제공할 경우 재료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 ②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8-2. 단 가 산 출 (예)

2-8-2-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73	인	274,286	200,228	
	지적산업기사	0.77	인	242,724	186,897	
	지적기능사	0.47	인	180,875	85,011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53	인	25,000	13,2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48	인	25,000	12,0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47	인	25,000	11,75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7,916	
	재료소모품비				23,021	
	기타					
	제경비	20%			94,427	
기술료	기술료	13%			73,653	
	합계	1필, 300m ²			718,153	
1필당					718,153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8-2-2.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58	인	274,286	159,085	
	지적산업기사	0.62	인	242,724	150,488	
	지적기능사	0.34	인	180,875	61,497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38	인	25,000	9,500	
	지적산업기사	0.35	인	25,000	8,750	
	지적기능사	0.34	인	25,000	8,500	
	인부					
	기계경비				13,655	
	재료소모품비				18,470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74,214	
	기술료	13%			57,887	
합계		1필, 300m ²			562,046	
1필당					562,046	

2-8-3. 수수료 기본단가표

2-8-3-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 ①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②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0.9%, 시지역 56.3%, 구지역 56.6%
 임야 : 군지역 59.8%, 시지역 56.9%, 구지역 58.1%

- ③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300m ²	437,000	570,000
	임야	3,000m ²	543,000	688,000

2-8-3-2.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 ①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②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6.8%, 시지역 61.7%, 구지역 62.4%

- ③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300m ²	375,000	489,000	560,00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8-3-3. 단가 적용기준

- ①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m²)으로 한다.
- ②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 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 공시 지가	9,000원 이하	9,001원~ 26,000원	26,001원~ 51,000원	51,001원~ 170,000원	170,001원~ 1,710,000원	1,71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17,060,001원 ~ 25,590,000원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70	1.80

개별 공시 지가	25,590,001원 ~ 34,120,000원	34,120,001원 ~ 42,650,000원	42,650,001원 ~ 51,180,000원	51,180,001원 ~ 59,710,000원	59,710,001원 ~ 68,240,000원	68,240,001원 ~ 77,000,000원	77,000,000원 초과
계수	1.90	2.00	2.10	2.20	2.30	2.40	2.50

- ③ 1필지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작은 면적으로 한다. 다만, 동시에 일부분의 지적선을 경계복원 하였을 때 경계복원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④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 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 ⑤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필지수가 5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8-3-4. 연속지 · 집단지 도시계획선명시측량

① 50필지까지는 지역(시 · 군 · 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 원)

구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군지역	도해	토지	437,000	424,000	400,000	371,000	337,000
		임야	543,000	530,000	508,000	476,000	446,000
	수치	375,000	364,000	346,000	320,000	293,000	
시지역	도해	토지	570,000	558,000	534,000	509,000	476,000
		임야	688,000	674,000	650,000	622,000	592,000
	수치	489,000	478,000	459,000	433,000	407,000	
구지역	도해	토지	648,000	633,000	610,000	582,000	549,000
		임야	777,000	767,000	742,000	712,000	681,000
	수치	560,000	546,000	526,000	500,000	473,00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8-4. 공정일람표

2-8-4-1. 도시계획선행시측량(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53 (0.20)	0.68 (0.26)	0.74 (0.28)	0.89 (0.34)	0.82 (0.31)	0.96 (0.36)
지적산업기사	0.48 (0.29)	0.61 (0.37)	0.67 (0.41)	0.81 (0.49)	0.74 (0.45)	0.87 (0.53)
지적기능사	0.47	0.60	0.66	0.79	0.72	0.86
인부						
소계	외업	1.48	1.89	2.07	2.49	2.28
	내업	(0.49)	(0.63)	(0.69)	(0.83)	(0.76)
합계	1.97	2.52	2.76	3.32	3.04	3.58

* ()내는 내업임

2-8-4-2. 도시계획선행시측량(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38 (0.20)		0.53 (0.28)		0.59 (0.31)	
지적산업기사	0.35 (0.27)		0.49 (0.38)		0.54 (0.42)	
지적기능사	0.34		0.48		0.52	
인부						
소계	외업	1.07		1.50		1.65
	내업	(0.47)		(0.66)		(0.73)
합계	1.54		2.16		2.38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9.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2-8-1. 작업공정 품셈기준

2-8-1-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계획준비	(0.08)	(0.08)		()는 내업임
준비도작성		(0.10)		
면적측정 및 계산		(0.03)		
결과도 작성		(0.13)		
결과부 및 조서작성		(0.09)		
성과점검 및 인계		(0.08)		
합계	(0.08)	(0.51)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산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에 적용하는 품이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2-9-1-2. 품셈 적용기준

①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품은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 품이다.

② 지구내에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말박기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2항2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한다.

③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를 작성함에 있어 지구계, 지구내 점을 결정하기 위한 도해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계상한다.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9-2. 단 가 산 출 (예)

2-9-2-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8	인	274,286	21,942	
	지적산업기사	0.51	인	242,724	123,789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4,699	
	재료소모품비				7,812	
	기타					
	제경비	20%			29,146	
기술료	기술료	13%			22,734	
	합계	2점			210,122	
1필당					105,061	

2-9-3. 수수료 기본단가표

2-9-3-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 ① 본 단가는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지구계, 지구내점에 대한 측량과정을 거친 후,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기 위한 업무에 적용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과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②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2.0%, 시지역 66.0%, 구지역 67.1%

- ③ 예정지적도 작성업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점당	76,000	97,000	112,000

2-9-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측량,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② 사업지구내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말박기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2항2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한다.
-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9-4. 공정일람표

2-9-4-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0.08)	(0.11)	(0.12)
지적산업기사		(0.51)	(0.71)	(0.79)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59)	(0.82)	(0.91)
합계		0.59	0.82	0.91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10. 분할측량 내업품

2-10-1. 작업공정 품셈기준

2-10-1-1. 분할측량 내업품(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22)	(0.34)		
합계	0.22	0.34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 지역 등에서 현장측량 없이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등 내업품만을 적용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m², 임야는 5,0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10-1-2. 분할측량 내업품(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는 내업임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21)	내업 (0.34)		
합계	0.21	0.34		

-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 지역 등에서 협장측량 없이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등 내업품만을 적용할 경우의 품이다.
-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text{m}^2$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 + (0.1 * 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2-10-1-3. 품셈 적용기준

- 본 품은 분할측량의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을 적용한 것으로서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와 필지 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각각 적용한다.

2-10-2. 단 가 산 출 (예)

2-10-2-1. 분할측량 내업품(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22	인	274,286	60,342	
	지적산업기사	0.34	인	242,724	82,526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4,093	
	재료소모품비				7,091	
	기타					
	제경비	20%			28,574	
기술료	기술료	13%			22,287	
	합계	2필, 1,500m ²			204,913	
1필당					102,457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10-2-2. 분할측량 내업품(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21	인	274,286	57,600	
	지적산업기사	0.34	인	242,724	82,526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기계경비			4,158	
		재료소모품비			8,497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28,025	
	기술료	13%			21,860	
합계		2필, 1,500m ²			202,666	
1필당					101,333	

2-10-3. 수수료 기본단가표

2-10-3-1. 분할측량 내업품(도해)

- ① **분할측량 내업품(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 지역 등에서 현장측량 없이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등 분할측량 내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분할측량 내업품(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3.7%, 시지역 48.5%, 구지역 49.1%
 임야 : 군지역 51.0%, 시지역 46.4%, 구지역 45.2%

③ 분할측량 내업품(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55,000	71,000
	임야	5,000m ²	66,000	80,000

2-10-3-2. 분할측량 내업품(수치)

- ① **분할측량 내업품(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현장측량 없이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 지역 등에서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등 분할측량 내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분할측량 내업품(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2.2%, 시지역 58.9%, 구지역 56.3%

③ 분할측량 내업품(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500m ²	63,000	84,000	90,000

2-10-3-3. 단가 적용기준

- ① **분할측량 내업품** 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② 본 단가는 분할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이다. 이 경우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및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지역구분계수를 적용한 행정구역별(군·시·구) 단가를 적용하며, 인허가 면적등을 도상에 맞추어 성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에 40%, 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 적용한다.

2-10-4. 공정일람표

2-10-4-1. 분할측량 내업품(도해)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22)	(0.28)	(0.31)	(0.37)	(0.34)	(0.40)		
지적산업기사	(0.34)	(0.44)	(0.48)	(0.57)	(0.52)	(0.62)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56)	(0.72)	(0.79)	(0.94)	(0.86)	(1.02)	
합계	0.56	0.72	0.79	0.94	0.86	1.02		

* ()내는 내업임

2-10-4-2. 분할측량 내업품(수치)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21)		(0.29)			(0.32)
지적산업기사			(0.34)		(0.48)			(0.52)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55)		(0.77)			(0.84)	
합계		0.55		0.77			0.84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2-1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

2-11-1. 작업공정 품셈기준

2-11-1-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3)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20)	내업 (0.29)		
합계	0.20	0.29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아 지적현황측량의 내업품만을 적용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 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m², 임야는 5,0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 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④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11-1-2. 지적현황 내업품(수치)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2)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는 내업임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내업	(0.20)	(0.27)	
합계	0.20	0.27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아 지적현황측량의 내업품만을 적용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2-11-1-3.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지적현황측량의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을 적용한 것으로서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와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각각 적용한다.

2-11-2. 단 가 산 출 (예)

2-11-2-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20	인	274,286	54,857	
	지적산업기사	0.29	인	242,724	70,389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3,751	
	재료소모품비				6,864	
	기타					
	제경비	20%			25,049	
기술료	기술료	13%			19,538	
	합계	2필, 1,500m ²			180,448	
1필당					90,224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11-2-2.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20	인	274,286	54,857	
	지적산업기사	0.27	인	242,724	65,535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기계경비				3,326	
	재료소모품비				7,812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24,078	
	기술료	13%			18,781	
합계		2필, 1,500m ²			174,389	
1필당					87,195	

2-11-3. 수수료 기본단가표

2-11-3-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 ①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이라 함은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도해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지적현황측량 내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8.7%, 시지역 52.8%, 구지역 51.1%

임야 : 군지역 56.4%, 시지역 50.4%, 구지역 51.6%

- ③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해	토지	1,500m ²	53,000	67,000
	임야	5,000m ²	65,000	77,000

2-11-3-2.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 ①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이라 함은 현장을 수반하지 않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지적현황측량 내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5.4%, 시지역 61.0%, 구지역 59.4%

- ③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500m ²	57,000	75,000	83,000

2-11-3-3. 단가 적용기준

- ① 지적현황측량 내업품 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② 본 단가는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이다. 이 경우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및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지역구분계수를 적용한 행정구역별(시·군·구) 단가를 적용하며, 인허가 면적등을 도상에 맞추어 성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에 40%, 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 적용한다.
- ④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에 의하여 작성된 성과는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할 수 없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10-4. 공정일람표

2-11-4-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20)	(0.26)	(0.26)	(0.34)	(0.31)	(0.36)
지적산업기사	(0.29)	(0.37)	(0.41)	(0.49)	(0.45)	(0.53)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49)	(0.63)	(0.67)	(0.83)	(0.89)
합계	0.49	0.63	0.67	0.83	0.76	0.89

* ()내는 내업임

2-11-4-2.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20)		(0.28)		(0.31)	
지적산업기사	(0.27)		(0.38)		(0.42)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47)		(0.66)		(0.73)
합계	0.47		0.66		0.73	

* ()내는 내업임

3. 지적확정측량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3-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3-1-1. 작업공정 품셈기준

3-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계획준비		(3.43)	(3.43)		
자료조사			(4.04)		
현장조사		3.41	6.82		
지적전산파일변환			(3.59)		
지구계 준비도	작성		(6.20)		
	확인	(0.92)			
지구계	측량	7.04	14.08	7.04	
	결과도작성	(6.59)	(6.59)		
가구점	측량	9.36	18.72	9.36	
	계산	(10.88)	(10.88)		
필계점	측량	15.14	30.28	15.14	
	계산	(10.91)	(10.91)		
중심점계산		(8.41)	(8.41)		
좌표면적계산		(8.44)	(8.44)		
결과도작성			(6.20)		
성과작성			(16.42)		
조서작성			(11.78)		
남품도서류작성			(20.08)		
점검		(5.02)			
성과설명 및 인계		(2.58)			
소계	외업	34.95	69.90	31.54	
	내업	(57.18)	(116.97)		
합계		92.13	186.87	31.54	

()는
내업임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m²를 기준한 것으로 지구면적이 100,000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횟수	10만m ² 이하	10만m ² 초과 ~50만m ²	50만m ² 초과 ~100만m ²	100만m ² 초과 ~200만m ²	2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1-2. 단 가 산 출 (예)

3-1-2-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92.13	인	274,286	25,269,969	
	지적산업기사	186.87	인	242,724	45,357,833	
	지적기능사	31.54	인	180,875	5,704,797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34.95	인	25,000	873,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69.90	인	25,000	1,747,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31.54	인	25,000	788,500
	인부					
	기계경비				1,415,165	
	재료소모품비				950,250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5,266,520	
	기술료	13%			11,907,885	
합계		100,000m ²			109,282,169	
1m ² 당					1,092.82	

3-1-3. 수수료 기본단가표

3-1-3-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②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84.1%, 시지역 84.1%, 구지역 88.3%

- ③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m ² 당	919.1	940.6	1,017.8

3-1-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의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3-1-4-3 말박기 측량 수수료(중심점·가구점, 필계점) 참조
-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85%를 적용한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⑦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m²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⑧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1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는 측량지구 면적이 5,000m²이하인 경우 5,000m²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또는 2개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지구가 연접되어 있고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시 계약하는 경우에는 면적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사업완료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3-1-4. 면적체감계수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

3-1-4-1. 면적체감계수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m²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다.

가산횟수	10만m ² 이하	10만m ² 초과 ~50만m ²	50만m ² 초과 ~100만m ²	100만m ² 초과 ~200만m ²	2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1-4-2. 면적별 단가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10만m ² 이하	10만m ² 초과 ~50만m ²	50만m ² 초과 ~100만m ²	100만m ² 초과 ~200만m ²	2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군지역	919.1	829.1	739.2	649.3	559.4	469.4
시지역	940.6	848.5	756.4	664.4	572.3	480.2
구지역	1017.8	918.1	818.4	718.7	619.0	519.3

3-1-4-3. 말박기측량 수수료 단가(중심점 · 가구점, 필계점)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10만m ² 이하	10만m ² 초과 ~50만m ²	50만m ² 초과 ~100만m ²	100만m ² 초과 ~200만m ²	2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군지역	275.7	248.7	221.8	194.8	167.8	140.8
시지역	282.2	254.5	226.9	199.3	171.7	144.1
구지역	305.3	275.4	245.5	215.6	185.7	155.8

3-1-5. 공정일람표

3-1-5-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지구당 1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34.95 (57.18)	34.95 (57.18)	34.95 (57.18)
지적산업기사	69.90 (116.97)	69.90 (116.97)	69.90 (116.97)
지적기능사	31.54	31.54	31.54
인부			
소계	외업	136.39	136.39
	내업	(174.15)	(174.15)
합계	310.54	310.54	310.54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3-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3-2-1. 작업공정 품셈기준

3-2-1-1.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계획준비		(2.63)	(2.63)		
자료조사			(6.82)		
현장조사		2.76	2.76		
지적전산파일변환			(12.02)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4)	(15.68)	(7.84)	
	확인	(1.05)			
지구계	측량	10.29	20.58	10.29	
	결과도작성	(15.50)	(31.00)	(15.50)	
필계점	측량	15.38	30.76	15.38	
	계산	(16.73)	(16.73)		
좌표면적계산		(15.77)	(15.77)		()는 내업임
결과도작성		(3.03)	(6.06)	(3.03)	
성과작성		(9.70)	(19.40)	(9.70)	
조서작성			(11.78)	(5.89)	
남품도서류작성		(8.46)	(16.92)	(8.46)	
점검		(5.66)			
성과설명 및 인계		(1.40)			
소계	외업	28.43	54.10	25.67	
	내업	(87.77)	(154.81)	(50.42)	
합계		116.20	208.91	76.09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경지구획정리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m²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 지구면적이 1,000,000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횟수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2-2. 단 가 산 출 (예)

3-2-2-1. 경지구획정리 지적획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116.20	인	274,286	31,872,033	
	지적산업기사	208.91	인	242,724	50,707,470	
	지적기능사	76.09	인	180,875	13,762,778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28.43	인	25,000	710,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54.10	인	25,000	1,352,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25.67	인	25,000	641,750
	인부					
	기계경비				1,205,396	
	재료소모품비				991,406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9,268,456	
	기술료	13%			15,029,396	
합계		1,000,000m ²			135,541,935	
1m ² 당					135.54	

3-2-3. 수수료 기본단가표

3-2-3-1.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②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5.8%, 시지역 55.8%, 구지역 55.7%

- ③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m ² 당	75.6	77.5	79.7

3-2-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본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다만,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 ③ 말박기 측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④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3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3-2-4. 면적체감계수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

3-2-4-1. 면적체감계수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m²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다.

가산횟수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2-4-2. 면적별 단가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군지역	75.6	68.2	60.7	53.3	45.9	38.4
시지역	77.5	69.8	62.2	54.6	47.0	39.3
구지역	79.7	71.9	64.0	56.2	48.3	40.5

3-2-4-3. 말박기측량 수수료 단가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군지역	22.7	20.5	18.2	16.0	13.8	11.5
시지역	23.2	20.9	18.7	16.4	14.1	11.8
구지역	23.9	21.6	19.2	16.9	14.5	12.1

3-2-5. 공정일람표

3-2-5-1.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지구당 1,0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28.43 (87.77)	28.43 (87.77)	28.43 (87.77)
지적산업기사	54.10 (154.81)	54.10 (154.81)	54.10 (154.81)
지적기능사	25.67 (50.42)	25.67 (50.42)	25.67 (50.42)
인부			
소계	외업	108.20	108.20
	내업	(293.00)	(293.00)
합계	401.20	401.20	401.20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3-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3-1. 작업공정 품셈기준

3-3-1-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계획준비		(4.04)		
자료조사	(3.43)	(3.43)		
현장조사	3.41	6.82		
지적전산파일변환		(3.59)		
지구계 준비도	작성	(6.20)		
	확인	(0.92)		
가구점	측량	9.36	18.72	9.36
	계산	(10.88)	(10.88)	
필계점	측량	6.50	13.00	6.50
	계산	(9.45)	(9.45)	
중심점계산	(8.41)	(8.41)		()는 내업임
좌표면적계산	(8.44)	(8.44)		
결과도작성		(6.20)		
성과작성		(36.50)		
조서작성		(11.78)		
점검	(5.02)			
성과설명 및 인계	(2.58)			
소계	외업	19.27	38.54	15.86
	내업	(49.13)	(108.92)	
합계	68.40	147.46	15.86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과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text{m}^2$ 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 지구면적이 $200,000\text{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횟수	20만 m^2 이하	20만 m^2 초과 ~50만 m^2	50만 m^2 초과 ~100만 m^2	100만 m^2 초과 ~200만 m^2	200만 m^2 초과 ~300만 m^2	300만 m^2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text{m}^2$ 이하인 경우에는 $10,000\text{m}^2$ 의 품으로 적용한다.

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일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필지수	50필지 이하	51~100 필지	101~200 필지	201~300 필지	301~400 필지	401~500 필지	500 필지초과 매100필마다
계수	1.00	1.05	1.10	1.15	1.20	1.25	1.05 ^{*n}

3-3-2. 단 가 산 출 (예)

3-3-2-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68.40	인	274,286	18,761,162	
	지적산업기사	147.46	인	242,724	35,792,081	
	지적기능사	15.86	인	180,875	2,868,677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19.27	인	25,000	481,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38.54	인	25,000	963,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15.86	인	25,000	396,50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958,259	
	재료소모품비				854,885	
	기타					
	제경비	20%			11,484,384	
기술료	기술료	13%			8,957,820	
	합계	200,000 m ²			81,519,018	
1m ² 당					407.60	

3-3-3. 수수료 기본단가표

3-3-3-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① 본 단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 · 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94.4%, 시지역 94.4%, 구지역 94.4%

③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m ² 당	384.9	394.1	406.3

3-3-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절차상 도해 측량방법에 의한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 신규등록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중심점 · 가구점, 필계점의 말박기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⑤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1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3-3-4. 면적체감계수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

3-3-4-1. 면적체감계수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200,000m²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다.

가산횟수	20만m ² 이하	20만m ² 초과 ~50만m ²	50만m ² 초과 ~100만m ²	100만m ² 초과 ~200만m ²	2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3-4-2. 면적별 단가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20만m ² 이하	20만m ² 초과 ~50만m ²	50만m ² 초과 ~100만m ²	100만m ² 초과 ~200만m ²	2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군지역	384.9	347.3	309.7	272.0	234.4	196.7
시지역	394.1	355.5	317.0	278.4	239.9	201.3
구지역	406.3	366.5	326.7	287.0	247.2	207.4

3-3-4-3. 말박기측량 수수료 단가(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20만m ² 이하	20만m ² 초과 ~50만m ²	50만m ² 초과 ~100만m ²	100만m ² 초과 ~200만m ²	2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군지역	115.5	104.2	92.9	81.6	70.3	59.0
시지역	118.2	106.6	95.1	83.5	72.0	60.4
구지역	121.9	109.9	98.0	86.1	74.2	62.2

3-3-5. 공정일람표

3-3-5-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지구당 2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19.27 (49.13)	19.27 (49.13)	19.27 (49.13)
지적산업기사	38.54 (108.92)	38.54 (108.92)	38.54 (108.92)
지적기능사	15.86	15.86	15.86
인부			
소계	외업	73.67	73.67
	내업	(158.05)	(158.05)
합계	231.72	231.72	231.72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3-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1. 작업공정 품셈기준

3-4-1-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6.82)		
계획준비		(2.63)	(2.63)		
현장조사		2.76	2.76		
지적전산파일변환			(12.02)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4)	(15.68)	(7.84)	
	확인	(1.05)			
필계점	측량	15.38	30.76	15.38	
	계산	(16.73)	(16.73)		
좌표면적계산		(15.78)	(15.78)		
결과도작성		(3.03)	(6.06)	(3.03)	
성과작성		(18.16)	(36.32)	(18.16)	
조서작성			(11.78)	(5.89)	
점검		(5.66)			
성과설명 및 인계		(1.40)			
소계	외업	18.14	33.52	15.38	
	내업	(72.28)	(123.82)	(34.92)	
합계		90.42	157.34	50.30	

()는
내업임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농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은 면적 1,000,000m²의 1개 측량지구를 기준한 것이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횟수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4-2. 단 가 산 출 (예)

3-4-2-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90.42	인	274,286	24,800,940	
	지적산업기사	157.34	인	242,724	38,190,194	
	지적기능사	50.30	인	180,875	9,098,012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18.14	인	25,000	453,50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33.52	인	25,000	838,0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15.38	인	25,000	384,50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906,703	
	재료소모품비				805,376	
	기타					
	제경비	20%			14,417,829	
기술료	기술료	13%			11,245,907	
	합계	1,000,000m ²			101,140,961	
1m ² 당					101.14	

3-4-3. 수수료 기본단가표

3-4-3-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① 본 단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농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4.7%, 시지역 74.6%, 구지역 74.7%

③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m ² 당	75.6	77.3	79.8

3-4-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본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지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절차상 도해 측량방법에 의한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 신규등록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3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⑥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의 말박기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3-4-4. 면적체감계수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

3-4-4-1. 면적체감계수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m²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다.

가산횟수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4-4-2. 면적별 단가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군지역	75.6	68.1	60.7	53.3	45.8	38.4
시지역	77.3	69.7	62.1	54.5	46.9	39.3
구지역	79.8	71.9	64.1	56.2	48.4	40.5

3-4-4-3. 말박기측량 수수료 단가(중심점 · 가구점, 필계점)

(단위: 1m²당 / 원)

면적별	100만m ² 이하	100만m ² 초과 ~300만m ²	300만m ² 초과 ~500만m ²	500만m ² 초과 ~800만m ²	800만m ² 초과 ~1,000만m ²	1,000만m ² 초과
군지역	22.7	20.4	18.2	16.0	13.7	11.5
시지역	23.2	20.9	18.6	16.3	14.1	11.8
구지역	23.9	21.6	19.2	16.9	14.5	12.1

3-4-5. 공정일람표

3-4-5-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지구당 1,0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18.14 (72.28)	18.14 (72.28)	18.14 (72.28)
지적산업기사	33.52 (123.82)	33.52 (123.82)	33.52 (123.82)
지적기능사	15.38 (34.92)	15.38 (34.92)	15.38 (34.92)
인부			
소계	외업	67.04	67.04
	내업	(231.02)	(231.02)
합계	298.06	298.06	298.06

* ()내는 내업임

4. 지적재조사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4-1. 지적재조사측량

4-1-1. 작업공정 품셈기준

4-1-1-1.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6)	1				(0.06)					
계획 준비	현장답사	0.02	1	1	1	0.02	0.02	0.02		()는 내업임	
	사전계획	(0.01)	1	1		(0.01)	(0.01)				
사업지구내외 측량	0.05	1	1	1		0.05	0.05	0.05			
일필지측량	0.16	1	1	1		0.16	0.16	0.16			
면적측정 및 계산	(0.02)	1	1			(0.02)	(0.02)				
토지현황 조사서작성	(0.02)		1	1			(0.02)	(0.02)			
경계조정 협의	0.34	1	1	1		0.34	0.34	0.34			
확정경계점 표지설치	0.05	1	1	1		0.05	0.05	0.05			
경계확정 측량	0.04	1	1	1		0.04	0.04	0.04			
지적확정(예정)조서작성	(0.03)		1	1			(0.03)	(0.03)			
지상경계점 등록부작성	(0.04)	1	1			(0.04)	(0.04)				
경계조정 협의	(0.05)	1	1	1		(0.05)	(0.05)	(0.05)			
소계	외업	0.66				0.66	0.66	0.66			
	내업	(0.23)				(0.18)	(0.17)	(0.10)			
합계	0.89					0.84	0.83	0.76			

-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 ② 본 품 적용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2호에 따른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의 적용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 지적확정조서	2부
ⓘ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 일필지 조사서	1부

4-1-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텔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장비이다.
- ②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③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 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⑥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⑦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⑧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⑨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및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 ⑩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

4-1-2. 단 가 산 출 (예)

4-1-2-1. 지적재조사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84	인	274,286	230,400	
	지적산업기사	0.83	인	242,724	201,460	
	지적기능사	0.76	인	180,875	137,465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66	인	25,000	16,50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66	인	25,000	16,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66	인	25,000	16,50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30,089	
	재료소모품비				28,408	
	기타					
	제경비	20%			113,865	
기술료						
	기술료	13%			88,815	
합계		1필			880,002	
1필당					880,002	

4-1-3. 수수료 기본단가표

4-1-3-1. 지적재조사측량

- ① 본 단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단가이다.
- ②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40.5%, 시지역 33.1%, 구지역 33.0%

- ③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필지당	356,000	407,000	460,000

4-1-3-2. 단가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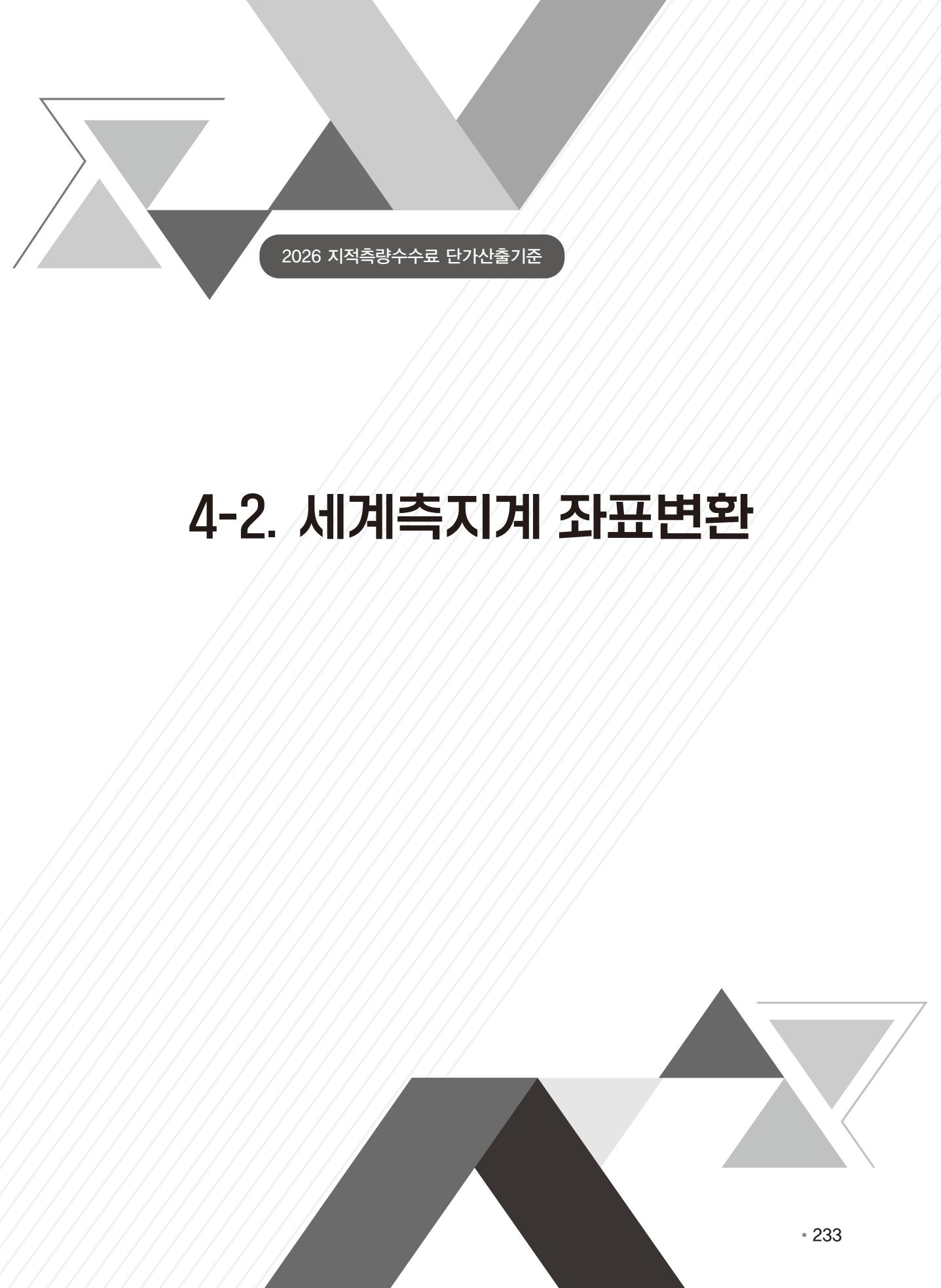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한다.
- ② 지적재조사측량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년도 고시단가의 50%를 적용한다.

4-1-4. 공정일람표

4-1-4-1. 지적재조사측량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0.66 (0.18)	0.92 (0.25)	1.02 (0.28)
지적산업기사		0.66 (0.17)	0.92 (0.24)	1.02 (0.26)
지적기능사		0.66 (0.10)	0.92 (0.14)	1.02 (0.15)
인부				
소계	외업	1.98	2.76	3.06
	내업	(0.45)	(0.63)	(0.69)
합계		2.43	3.39	3.75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4-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4-2-1. 작업공정품셈기준

4-2-1-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 조사	사전조사	(0.04)		1				(0.04)		()는 내업임	
	현장조사	0.03	1	1	1		0.03	0.03	0.03		
계획 및 준비		(0.04)	1				(0.04)				
공통점변환 및 결정		(0.06)		1				(0.06)			
도면변환		(0.04)		1				(0.04)			
점증 측량	점증측량	0.03	1	1	1		0.03	0.03	0.03		
	성과분석	(0.04)	1	1			(0.04)	(0.04)			
성과물작성 및 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06					0.06	0.06	0.06		
	내업	(0.31)					(0.08)	(0.27)			
합계		0.37					0.14	0.33	0.06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4-2-1-2. 세계측지계 변환(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 조사	사전조사	(0.03)		1				(0.03)			()는 내업임	
	현장조사	0.02	1	1	1		0.02	0.02	0.02			
계획 및 준비		(0.03)	1				(0.03)					
공통점변환 및 결정		(0.04)		1				(0.04)				
도면변환		(0.03)		1				(0.03)				
검증 측량	검증측량	0.02	1	1	1		0.02	0.02	0.02			
	성과분석	(0.03)	1	1			(0.03)	(0.03)				
성과물작성 및 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04					0.04	0.04	0.04			
	내업	(0.22)					(0.06)	(0.19)				
합계		0.26					0.10	0.23	0.04			

① 본 품은 경계점좌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4-2-1-3. 품셈 적용기준

- ① 작업상 지적기준점(공통점)을 설치 또는 관측할 경우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4-2-2. 단 가 산 출 (예)

4-2-2-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군지역(도해)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14	인	274,286	38,400	
	지적산업기사	0.33	인	242,724	80,098	
	지적기능사	0.06	인	180,875	10,852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06	인	25,000	1,50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0.06	인	25,000	1,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0.06	인	25,000	1,50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3,982	
	재료소모품비				4,531	
	기타					
	제경비	20%			25,870	
기술료	기술료	13%			20,179	
	합계	1도과			188,412	
1도과당					188,412	

4-2-2-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군지역(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10	인	274,286	27,428	
	지적산업기사	0.23	인	242,724	55,826	
	지적기능사	0.04	인	180,875	7,235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04	인	25,000	1,000	
	지적산업기사	0.04	인	25,000	1,000	
	지적기능사	0.04	인	25,000	1,000	
	인부					
	기계경비				2,773	
	재료소모품비				3,575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8,098	
	기술료	13%			14,116	
합계		1도파			132,051	
1도파당					132,051	

4-2-3. 수수료 기본단가표

4-2-3-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 ① 본 단가는 도해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②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6.8%, 시지역 57.1%, 구지역 57.2%

임야 : 군지역 56.8%, 시지역 57.1%, 구지역 57.2%

- ③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1도각	107,000	110,000	114,000
임야	1도각	107,000	110,000	114,000

4-2-3-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 ① 본 단가는 경계점좌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②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57.6%, 시지역 58.5%, 구지역 57.5%

- ③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도각	76,000	79,000	80,000

4-2-3-3. 단가 적용기준

- 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2-4. 공정일람표

4-2-4-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06 (0.08)	0.06 (0.08)	0.06 (0.08)	0.06 (0.08)	0.06 (0.08)	0.06 (0.08)
지적산업기사	0.06 (0.27)	0.06 (0.27)	0.06 (0.27)	0.06 (0.27)	0.06 (0.27)	0.06 (0.27)
지적기능사	0.06	0.06	0.06	0.06	0.06	0.06
인부						
소계	외업	0.18	0.18	0.18	0.18	0.18
	내업	(0.35)	(0.35)	(0.35)	(0.35)	(0.35)
합계	0.53	0.53	0.53	0.53	0.53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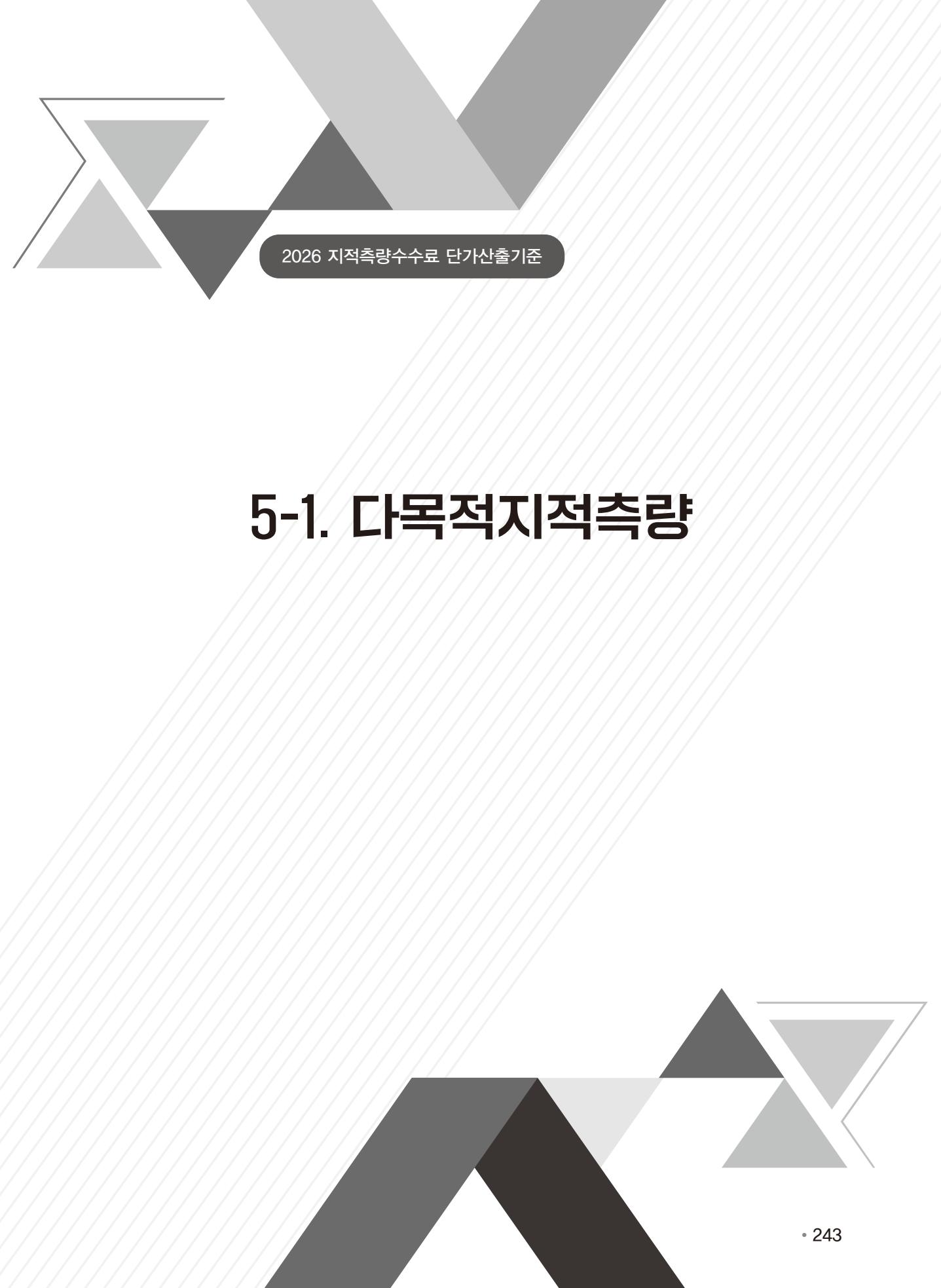
* ()내는 내업임

4-2-4-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04 (0.06)		0.04 (0.06)		0.04 (0.06)	
지적산업기사	0.04 (0.19)		0.04 (0.19)		0.04 (0.19)	
지적기능사	0.04		0.04		0.04	
인부						
소계	외업	0.12	0.12	0.12	0.12	0.12
	내업	(0.25)	(0.25)	(0.25)	(0.25)	(0.25)
합계	0.37		0.37		0.37	

* ()내는 내업임

5. 국토정보조사측량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5-1. 다목적지적측량

5-1-1. 단 가 산 출 (예)

5-1-1-1. 다목적지적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265.20	인	274,286	72,740,647	
	지적산업기사	586.60	인	242,724	142,381,898	
	지적기능사					
	인부	44.70	인	171,037	7,645,353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154.70	인	25,000	3,867,50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419.40	인	25,000	10,485,0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2,320,012	
	재료소모품비				659,168	
	기타					
	제경비	20%			44,553,580	
기술료	기술료	13%			34,751,792	
	합계	450,000m ²			319,404,950	
1m ² 당					709.79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5-1-2. 수수료 기본단가표

5-1-2-1. 다목적지적측량

① 본 단가는 지상·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지상, 지하시설물의 관계위치를 정밀하게 측량하여 한 도면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지하시설물은 종목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호(2010. 2. 2) / 국토해양부장관
지적22680-001566('89. 2. 21) / 내무부장관

③ '다목적지적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73.2%, 시지역 73.3%, 구지역 73.1%

④ 다목적지적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1m ² 당	519.8	532.8	547.7

5-1-3. 공정일람표

5-1-3-1. 다목적지적측량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154.70 (110.50)	154.70 (110.50)	154.70 (110.50)
지적산업기사		419.40 (167.20)	419.40 (167.20)	419.40 (167.20)
지적기능사				
인부		44.70	44.70	44.70
소계	외업	618.80	618.80	618.80
	내업	(277.70)	(277.70)	(277.70)
합계		896.50	896.50	896.50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5-2.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5-2-1. 작업공정 품셈기준

5-2-1-1.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8)		1				(0.28)				
계획준비	(0.78)	1	1			(0.78)	(0.78)				
현지조사	3.11	1	2	1		3.11	6.22	3.11		()는 내업임	
데이터편집 및 수정	(2.70)	1	2			(2.70)	(5.40)				
성과수정	(1.50)		2				(3.00)				
성과점검 및 인계	(0.57)	1				(0.57)					
소계	외업	3.11				3.11	6.22	3.11			
	내업	(5.83)				(4.05)	(9.46)				
합계	8.94					7.16	15.68	3.11			

① 본 품은 지적공부인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기반으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 등을 입체적인 3차원방식으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text{m}^3$, 임야는 $5,000\text{m}^3$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체적 이하는 기준체적을 적용하고, 기준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3차원 지적현황측량 대상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세밀도계수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은 가시화 정보구축 상태에 따른 단계에 따라 다음의 세밀도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LOD 1	LOD 2	LOD 3	LOD 4	비고
계수	0.50	0.67	0.84	1.00	

* LOD 1)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한가지 컬러의 색을 갖는 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OD 2)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OD 3)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구조와 실제 구조를 혼합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OD 4) 하나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시화 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실제의 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5-2-1-2.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의 세밀도는 LOD4 단계의 가시화 정보구축 상태의 구조로 제작된 측량 품이다.

②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을 지상라이다에 의할 경우 작업방법은 「지상라이다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 결과도면 1부

ⓑ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 성과도면 및 파일 각 1부

ⓒ 체적(부피) 및 경사도 측정 도면 1부

ⓓ 3차원 영상데이터(dwg, dxf, shape 등) 1부

⑦ 상기의 성과작성품(실측 및 기본도면작성) 외에 CG, 모델링, 모형제작 등 별도의 성과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쌍방협의에 의하여 비용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5-2-2. 단 가 산 출 (예)

5-2-2-1. 3차원 지적현황(구축) 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7.16	인	274,286	1,963,887	
	지적산업기사	15.68	인	242,724	3,805,912	
	지적기능사	3.11	인	180,875	562,521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3.11	인	25,000	77,750	
	지적산업기사	6.22	인	25,000	155,500	
	지적기능사	3.11	인	25,000	77,750	
	인부					
직접경비	기계경비				329,370	
	재료소모품비				28,352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266,464	
	기술료	13%			987,842	
합계					9,255,348	
1필당					9,255,348	

5-2-3. 수수료 기준단가표

5-2-3-1.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 ①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 방법은 2차원의 X, Y 지적위치 정보에 높이(Z), 색상, 질감 및 구조 정보를 추가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지적공부 기반의 입체적인 고정밀도 측량으로써, 체적계수, 지역구분계수,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및 세밀도계수를 적용한다.
- ② 본 단가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로써 본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상라이다 장비 등을 이용한 3차원방식의 지적현황(구축) 측량으로 성과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 품을 적용한다.
- ④ 3차원 지적현황(구축) 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98.5%, 시지역 98.5%, 구지역 98.5%

⑤ 3차원 지적측량(구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3차원 지적측량	1m ² 당	9,112,000	12,912,000	14,610,000

5-2-4. 공정일람표

5-2-4-1.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3.11 (4.05)	4.35 (5.67)	4.79 (6.24)
지적산업기사		6.22 (9.46)	8.71 (13.24)	9.58 (14.57)
지적기능사		3.11	4.35	4.79
인부				
소계	외업	12.44	17.41	19.16
	내업	(13.51)	(18.91)	(20.81)
합계		25.95	36.32	39.97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5-3. 침수흔적지조사측량

5-3-1. 단 가 산 출 (예)

5-3-1-1. 침수흔적지조사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43.05	인	274,286	11,808,012	
	지적산업기사	79.23	인	242,724	19,231,022	
	지적기능사	14.63	인	180,875	2,646,201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15.33	인	25,000	383,2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30.66	인	25,000	766,5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14.63	인	25,000	365,750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33,040	
	재료소모품비				33,142	
	기타					
	제경비	20%			6,737,047	
기술료	기술료	13%			5,254,897	
	합계	100,000m ²			47,258,861	
1m ² 당					472.59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5-3-2. 수수료 기준단가표

5-3-2-1. 침수흔적지조사측량

①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호(2010. 2. 2) / 국토해양부장관
지적팀-3817('06. 8. 7) / 행정자치부장관

② 측량지구의 면적은 1지구 $100,000\text{m}^2$ 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text{m}^2$ 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text{m}^2$ 초과 시마다 기준면적 단가에 10%를 누적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한다. 단,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text{m}^2$ 이하인 경우에는 $30,000\text{m}^2$ 의 면적으로 한다.

③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④ 「침수흔적지조사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15.7%, 시지역 15.7%, 구지역 15.7%

⑤ 침수흔적지조사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1m^2 당	74.4	76.1	78.6

5-3-3. 공정일람표

5-3-3-1. 침수흔적지조사측량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15.33 (27.72)	15.33 (27.72)	15.33 (27.72)
지적산업기사		30.66 (48.57)	30.66 (48.57)	30.66 (48.57)
지적기능사		14.63	14.63	14.63
인부				
소계	외업	60.62	60.62	60.62
	내업	(76.29)	(76.29)	(76.29)
합계		136.91	136.91	136.91

* ()내는 내업임

6. 국토정보 조사관리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6-1.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6-1-1. 작업공정 품셈기준

6-1-1-1. 지적삼각점 현황조사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48)	1				(0.048)					
계획준비	(0.027)	1				(0.027)					
현지조사	0.433	1	1			0.433	0.433			()는 내업임	
조사보고서작성	(0.034)	1				(0.034)					
점검 및 보고	(0.027)	1				(0.027)					
소계	외업	0.43				0.43	0.43				
	내업	(0.14)				(0.14)					
합계	0.57					0.57	0.43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6-1-1-2.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03)	1				(0.003)					
계획준비	(0.001)	1				(0.001)					
현지조사	0.021	1	1			0.021	0.021			()는 내업임	
조사보고서작성	(0.003)	1				(0.003)					
점검 및 보고	(0.002)	1				(0.002)					
소계	외업	0.02				0.02	0.02				
	내업	(0.01)				(0.01)					
합계	0.03					0.03	0.02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6-1-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적기준점 1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 ②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작업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또는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⑤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

6-1-2. 단 가 산 출 (예)

6-1-2-1. 지적삼각점 현황조사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57	인	274,286	156,343	
	지적산업기사	0.43	인	242,724	104,371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43	인	25,000	10,750	
	지적산업기사	0.43	인	25,000	10,750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경비	기계경비				1,190	
	재료소모품비				1,279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52,143	
	기술료	13%			40,671	
합계		1점			377,497	
1점당					377,497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6-1-2. 단 가 산 출 (예)

6-1-2-2.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3	인	274,286	8,228	
	지적산업기사	0.02	인	242,724	4,854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02	인	25,000	500	
	지적산업기사	0.02	인	25,000	500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경비	기계경비				86	
	재료소모품비				137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2,616	
	기술료	13%			2,041	
합계		1점			18,962	
1점당					18,962	

6-1-3. 수수료 기본단가표

6-1-3-1.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지적삼각점 : 군지역 91.0%, 시지역 91.5%, 구지역 91.3%
 지적도근점 : 군지역 85.0%, 시지역 82.9%, 구지역 82.5%

②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1점	344,000	353,000	363,000
지적도근점	1점	16,000	16,000	16,000

6-1-3-2. 단가적용 기준

①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작업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또는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③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단가의 30%를 감면하여 적용 한다.

6-1-4. 공정일람표

6-1-4-1. 지적삼각점 현황조사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433 (0.136)	0.433 (0.136)	0.433 (0.136)	0.433 (0.136)	0.433 (0.136)	0.433 (0.136)
지적산업기사	0.433	0.433	0.433	0.433	0.433	0.433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0.866	0.866	0.866	0.866	0.866
	내업	(0.136)	(0.136)	(0.136)	(0.136)	(0.136)
합계	1.002	1.002	1.002	1.002	1.002	1.002

* ()내는 내업임

6-1-4-2.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021 (0.009)		0.021 (0.009)		0.021 (0.009)	
지적산업기사	0.021		0.021		0.021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0.042	0.042	0.042	0.042	0.042
	내업	(0.009)	(0.009)	(0.009)	(0.009)	(0.009)
합계	0.051		0.051		0.051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6-2. 지적이용 현황조사

6-2-1. 작업공정 품셈기준

6-2-1-1. 지적이용 현황조사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5)		1				(0.05)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1)	1	1			(0.01)	(0.01)				
현지조사	0.10	1				0.10					
데이터편집 및 수정	(0.09)		1				(0.09)				
성과작성	(0.02)		1				(0.02)				
검사	(0.01)	1				(0.01)					
성과점검및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10				0.10					
	내업	(0.20)				(0.04)	(0.17)				
합계		0.30				0.14	0.17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을 기반으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지적이용현황 조사와 개략적인 점유현황·점유자 및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6-2-1-2. 품셈 적용기준

- ① 지적이용 현황조사는 원필지 1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필지 내 점유자별 또는 토지이용 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그 분류 수량에 따라 필지 수를 추가하며 추가되는 필지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 ②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⑨ 지적이용 현황 실태 조사서	1부
⑩ 지적이용 현황도 및 파일	1부
⑪ 지적이용 현황조서 및 파일	1부
- ⑤ 지적이용 현황조사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로서 발주자의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6-2-2. 단 가 산 출 (예)

6-2-2-1. 지적이용 현황조사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14	인	274,286	38,400	
	지적산업기사	0.17	인	242,724	41,263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 측량비	지적기사	0.10	인	25,000	2,50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 측량비	기계경비				697	
	재료소모품비				377	
	기타					
	제경비	20%			15,933	
기술료	기술료	13%			12,427	
	합계	1필			111,597	
1필당					111,597	

6-2-3. 수수료 기본단가표

6-2-3-1. 지적이용 현황조사

① 지적이용 현황조사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수치 : 군지역 27.8%, 시지역 28.4%, 구지역 28.6%
임야 : 군지역 29.9%, 시지역 28.3%, 구지역 27.8%

② 지적이용 현황조사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 수치	1,500m ²	31,000	46,000	51,000
임야	5,000m ²	43,000	55,000	59,000

6-2-4. 공정일람표

6-2-4-1. 지적이용 현황조사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10 (0.04)	0.13 (0.05)	0.14 (0.06)	0.17 (0.07)	0.15 (0.06)	0.18 (0.07)
지적산업기사	(0.17)	(0.22)	(0.24)	(0.29)	(0.26)	(0.31)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0.21)	0.10 (0.27)	0.13 (0.30)	0.14 (0.36)	0.17 (0.32)	0.18 (0.38)
합계		0.31	0.40	0.44	0.53	0.47
						0.56

* ()내는 내업임



7. 국토정보 품질관리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1. 지적(임야)도 전산화

7-1-1. 작업공정 품셈기준

7-1-1-1. 지적(임야)도 전산화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4)		1				(0.04)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좌표독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조수정	(0.09)	1				(0.09)					
성과작성	(0.06)		1				(0.06)				
점검	(0.07)	1				(0.07)					
성과인계	(0.02)	1				(0.02)					
합계	(0.83)					(0.21)	(0.65)				

① 본 품은 종이에 구현된 지적(임야)도, 세부원도 등의 좌표를 독취하여 전산화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지적도, 임야도)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지적도	임야도	비고
계수	1.00	1.28	

7-1-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과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기준규격의 1/2이하일 경우에는 본 품의 50%를 적용한다.

7-1-2. 단 가 산 출 (예)

7-1-2-1. 지적(임야)도 전산화

군지역(지적도)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21	인	274,286	57,600	
	지적산업기사	0.65	인	242,724	157,770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8,988	
	재료소모품비				4,169	
	기타					
	제경비	20%			43,074	
기술료	기술료	13%			33,598	
	합계	1도과			315,199	
1도과당					315,199	

7-1-3. 수수료 기본단가표

7-1-3-1. 지적(임야)도 전산화

① 지적(임야)도 전산화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0.1%, 시지역 70.4%, 구지역 70.4%
 임야 : 군지역 61.2%, 시지역 61.3%, 구지역 61.2%

② 지적(임야)도 전산화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도	1도과	221,000	227,000	234,000
임야도	1도과	243,000	249,000	256,000

7-1-4. 공정일람표

7-1-4-1. 지적(임야)도 전산화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21)	(0.27)	(0.21)	(0.27)	(0.21)	(0.27)
지적산업기사	(0.65)	(0.83)	(0.65)	(0.83)	(0.65)	(0.83)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86)	(1.10)	(0.86)	(1.10)	(0.86)
합계	0.86	1.10	0.86	1.10	0.86	1.10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2. 측량결과도 전산화

7-2-1. 작업공정 품셈기준

7-2-1-1. 측량결과도 전산화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 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작업준비	(0.002)			1					(0.002)		
스캐닝작업	(0.003)	1				(0.003)					
이미지보정 및 검증	(0.001)	1				(0.001)					
자료전송	(0.007)			1					(0.007)		
좌표독취	(0.012)		1				(0.012)				
검사제도(1차)	(0.006)			1					(0.006)		
대조수정(1차)	(0.022)		1				(0.022)				
자료전송	(0.003)			1					(0.003)		
속성정보입력	(0.016)			1					(0.016)		
검사제도(2차)	(0.006)			1					(0.006)		
대조수정(2차)	(0.017)		1				(0.017)				
자료전송	(0.004)			1					(0.004)		
검사수정	(0.006)	1				(0.006)					
저장매체수록	(0.054)		1				(0.054)				
결과도재편철	(0.002)			1					(0.002)		
소관청DB구축	(0.004)	1				(0.004)					
성과검수요청	(0.001)	1				(0.001)					
성과인계	(0.001)	1				(0.001)					
합계	(0.167)					(0.016)	(0.105)	(0.046)			

① 본 품은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좌표독취를 위한 스캐닝 작업을 거쳐 DB구축하는 작업 품이다.

7-2-1-2.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7-2-2. 단 가 산 출 (예)

7-2-2-1. 측량결과도 전산화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2	인	274,286	5,485	
	지적산업기사	0.11	인	242,724	26,699	
	지적기능사	0.05	인	180,875	9,043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기계경비				564	
	재료소모품비				29,685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8,245	
	기술료	13%			6,431	
합계		1장			86,152	
1장당					86,152	

7-2-3. 수수료 기본단가표

7-2-3-1. 측량결과도 전산화

- ① 본 단가는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는데 좌표독취를 위한 스캐닝과 벡터라이징 작업절차를 거쳐 DB 구축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호(2010. 2. 2) / 국토해양부장관
- ② 측량결과도를 정밀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 ③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54.6%, 시지역 54.8%, 구지역 54.8%

- ④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 장 당	47,000	48,000	49,000

7-2-4. 공정일람표

7-2-4-1. 측량결과도 전산화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0.02)	(0.02)	(0.02)
지적산업기사		(0.11)	(0.11)	(0.11)
지적기능사		(0.05)	(0.05)	(0.05)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18)	(0.18)	(0.18)
합계		0.18	0.18	0.18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3. 연속지적도작성

7-3-1. 작업공정 품셈기준

7-3-1-1. 연속지적도 작성(도해, 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 및 준비	(0.001)	1	1			(0.001)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1			(0.001)				
공간/속성자료위상, 구조화작업	(0.007)			2	1		(0.014)	(0.007)		()는 내업임	
성과대조 및 협의	(0.001)	1				(0.001)					
성과납품	(0.001)	1				(0.001)					
소계	외업										
	내업	(0.011)				(0.003)	(0.016)	(0.007)			
합계	0.011					0.003	0.016	0.007			

① 본 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디지털 지적도면을 연속된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7-3-1-2.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7-3-2. 단 가 산 출 (예)

7-3-2-1. 연속지적도 작성(도해, 수치)

군지역(도해, 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03	인	274,286	822	
	지적산업기사	0.016	인	242,724	3,883	
	지적기능사	0.007	인	180,875	1,266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590	
	재료소모품비				1,053	
	기타					
	제경비	20%			1,194	
기술료	기술료	13%			931	
	합계	1도과			9,739	
1도과당					9,739	

7-3-3. 수수료 기본단가표

7-3-3-1. 연속지적도 작성

① 연속지적도 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임야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수치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② 연속지적도 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1도과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도과 (임야도크기)	10,000	10,000	10,000
수치	1도과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7-3-4. 공정일람표

7-3-4-1. 연속지적도 작성

자격별	지역별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시 · 군 · 구
		토지	임야	수치
지적기사		(0.003)	(0.003)	(0.003)
지적산업기사		(0.016)	(0.016)	(0.016)
지적기능사		(0.007)	(0.007)	(0.007)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026)	(0.026)	(0.026)
합계		0.026	0.026	0.026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7-4-1. 작업공정 품셈기준

7-4-1-1.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 및 준비	(0.001)	1	1			(0.001)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1			(0.001)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0.001)			1	1		(0.001)	(0.001)		()는 내업임	
공간/속성자료위상, 구조화수정	(0.018)			2			(0.036)				
성과대조 및 협의	(0.002)	1				(0.002)					
성과납품	(0.001)	1	1			(0.001)	(0.001)				
소계	외업										
	내업	(0.024)				(0.004)	(0.040)	(0.001)			
합계	0.024					0.004	0.040	0.001			

① 본 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7-4-1-2.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 및 준비	(0.001)	1	1			(0.001)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1			(0.001)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0.001)			2			(0.002)			()는 내업임	
공간/속성자료위상, 구조화수정	(0.019)			2			(0.038)				
성과대조 및 협의	(0.002)	1				(0.002)					
성과납품	(0.001)	1	1			(0.001)	(0.001)				
소계	외업										
	내업	(0.025)				(0.004)	(0.043)				
합계	0.025					0.004	0.043				

① 본 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7-4-1-3.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 및 준비	(0.001)	1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1				(0.001)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0.001)		1				(0.001)				
공간/속성자료위상, 구조화수정	(0.010)		1	1			(0.010)	(0.010)		()는 내업임	
성과대조 및 협의	(0.002)		1				(0.002)				
성과납품	(0.001)	1				(0.001)					
소계	외업										
	내업	(0.016)				(0.002)	(0.014)	(0.010)			
합계	0.016					0.002	0.014	0.010			

① 본 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7-4-1-4.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오류율 계수

본 품은 지적(임야)도 필지 오류율 15% 이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적(임야)도 필지 오류율 15% 초과할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15% 이하	15% 초과 ~ 30% 이하	30% 초과
계수	1.00	1.20	1.40

7-4-2. 단 가 산 출 (예)

7-4-2-1.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

군지역(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04	인	274,286	1,097	
	지적산업기사	0.040	인	242,724	9,708	
	지적기능사	0.001	인	180,875	180	
	인부					
직접 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 측량비	기계경비				1,148	
	재료소모품비				1,053	
	기타					
	제경비	20%			2,197	
기술료	기술료	13%			1,714	
	합계	1도과			17,097	
1도과당					17,097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7-4-2-2.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

군지역(임야)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04	인	274,286	1,097	
	지적산업기사	0.043	인	242,724	10,437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현장여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직접경비	인부				
		기계경비			1,200	
		재료소모품비			1,053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2,307	
	기술료	13%			1,799	
합계		1도과			17,893	
1도과당					17,893	

7-4-2-3.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

군지역(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02	인	274,286	548	
	지적산업기사	0.014	인	242,724	3,398	
	지적기능사	0.010	인	180,875	1,808	
	인부					
직접 측량비	현장여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직접경비	인부				
		기계경비			670	
	재료소모품비				1,053	
		기타				
간접 측량비	제경비	20%			1,151	
	기술료	13%			898	
합계		1도과			9,526	
1도과당					9,526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7-4-3. 수수료 기본단가표

7-4-3-1.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①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임야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수치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②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1도과 (지적도크기)	17,000	17,000	18,000
임야	1도과 (임야도크기)	18,000	18,000	19,000
수치	1도과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7-4-4. 공정일람표

7-4-4-1.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자격별	지역별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시 · 군 · 구
		토지	임야	수치
지적기사		(0.004)	(0.004)	(0.002)
지적산업기사		(0.040)	(0.043)	(0.014)
지적기능사		(0.001)	0.000	(0.010)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045)	(0.047)	(0.026)
합계		0.045	0.047	0.026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5.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7-5-1. 작업공정 품셈기준

7-5-1-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및준비	(0.02)		1				(0.02)				
자료조사 및 수집	(0.10)	1	1			(0.10)	(0.10)				
기초자료정비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제작	(0.09)	1				(0.09)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2)	1				(0.02)				()는 내업임	
성과대조	(0.07)	1				(0.07)					
지적전산도면수정	(0.05)	1				(0.05)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성과납품	(0.02)	1				(0.02)					
소계	내업	(0.42)				(0.40)	(0.12)				
	외업										
합계		0.42				0.40	0.12				

- ① 본 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개별법령에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선, 도로구역선 등을 연속지적도 위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을 출력 또는 파일을 작성하거나 지적도 도형의 변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 도면파일을 작성하는 품이다.
-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7-5-1-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및준비	(0.01)		1				(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4)	1	1			(0.04)	(0.04)				
기초자료정비	(0.02)	1				(0.02)					
지적전산도면제작	(0.12)	1				(0.12)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2)	1				(0.02)					
성과대조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수정	(0.04)	1				(0.04)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성과납품	(0.01)	1				(0.01)					
소계	내업	(0.31)				(0.30)	(0.05)				
	외업										
합계		0.31				0.30	0.05				

① 본 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개별법령에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선, 도로구역선 등을 연속지적도 위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을 출력 또는 파일을 작성하거나 지적도 도형의 변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 도면파일을 작성하는 품이다.

7-5-1-3. 품셈 적용기준

- ①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하는데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지적도 크기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7-5-2. 단 가 산 출 (예)

7-5-2-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군지역(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40	인	274,286	109,714	
	지적산업기사	0.12	인	242,724	29,126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 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 측량비	기계경비				6,907	
	재료소모품비				20,041	
	기타					
	제경비	20%			27,768	
기술료	기술료	13%			21,659	
	합계	1도과			215,215	
1도과당					215,215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7-5-2-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군지역(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30	인	274,286	82,285	
	지적산업기사	0.05	인	242,724	12,136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현장여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직접경비	인부				
		기계경비			6,828	
		재료소모품비			19,699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18,884	
	기술료	13%			14,730	
합계		1도과			154,562	
1도과당					154,562	

7-5-3. 수수료 기본단가표

7-5-3-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4.3%, 시지역 64.3%, 구지역 63.5%
 임야 : 군지역 65.4%, 시지역 64.7%, 구지역 65.0%

②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1도곽	138,000	141,000	144,000
임야	1도곽	174,000	176,000	182,000

7-5-3-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1.7%, 시지역 61.8%, 구지역 62.0%

②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	1도곽	95,000	97,000	100,000

7-5-4. 공정일람표

7-5-4-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40)	(0.51)	(0.40)	(0.51)	(0.40)	(0.51)		
지적산업기사	(0.12)	(0.19)	(0.12)	(0.19)	(0.12)	(0.19)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52)	(0.70)	(0.52)	(0.70)	(0.52)	(0.70)	
합계	0.52	0.70	0.52	0.70	0.52	0.70		

* ()내는 내업임

7-5-4-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30)		(0.30)		(0.30)	
지적산업기사			(0.05)		(0.05)		(0.05)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35)		(0.35)		(0.35)		
합계		0.35		0.35		0.35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6.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7-6-1. 작업공정 품셈기준

7-6-1-1.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도해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및준비	(0.02)		1				(0.02)				
자료조사및수집	(0.10)	1	1			(0.10)	(0.10)				
기초자료정비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제작	(0.09)	1				(0.09)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1)	1				(0.01)					
성과대조	(0.07)	1				(0.07)					
지적전산도면수정	(0.07)	1				(0.07)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DB탑재	(0.05)		1				(0.05)				
성과납품	(0.02)	1				(0.02)					
소계	내업	(0.48)				(0.41)	(0.17)				
	외업										
합계		0.48				0.41	0.17				

① 본 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지적)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③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도면파일 형식으로 제작, 간신, 보수 등 다양한 지적전산·정보화 업무에 소요되는 품을 나열한 것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작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세부공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④ 작업별 세부공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 구분	세부공정	일 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④ 계획 및 준비	업무분석	(0.015)		1			(0.015)			
	계획수립	(0.005)		1			(0.005)			
	소계	(0.020)					(0.020)			
④ 자료 조사 및 수집	자료수집분석	(0.014)	1	1		(0.014)	(0.014)			
	CIF 자료수집	(0.012)	1	1		(0.012)	(0.012)			
	KLIS 자료수집	(0.021)	1	1		(0.021)	(0.021)			
	정사영상 수집	(0.003)	1	1		(0.003)	(0.003)			
	소유권정보 수집	(0.008)	1	1		(0.008)	(0.008)			
	기타자료수집	(0.016)	1	1		(0.016)	(0.016)			
	도면, 도서자료 수집	(0.004)	1	1		(0.004)	(0.004)			
	자료오류분석	(0.010)	1	1		(0.010)	(0.010)			
	사업대상 기초자료 정제	(0.010)	1	1		(0.010)	(0.010)			
	소계	(0.098)				(0.098)	(0.098)			
④ 기초 자료 정비	문서자료 공간정보 변환	(0.007)	1			(0.007)			()는 내업임	
	수집도면간 부합여부 확인	(0.005)	1			(0.005)				
	수집도면간 매칭	(0.005)	1			(0.005)				
	데이터 포맷 변환	(0.010)	1			(0.010)				
	각종자료간 공간위치 매칭	(0.016)	1			(0.016)				
	소계	(0.043)				(0.043)				
④ 지적 전산 도면 제작	각종 필요공간 객체생성	(0.009)	1			(0.009)				
	각종 필요공간 객체편집	(0.043)	1			(0.043)				
	속성 DB 입력	(0.006)	1			(0.006)				
	속성 DB 편집	(0.006)	1			(0.006)				
	관련기관 협의	(0.017)	1			(0.017)				
	부대서류 작성 (조서 등)	(0.005)	1			(0.005)				
	소계	(0.086)				(0.086)				
④ 공간 속성 자료 구조화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007)	1			(0.007)				
	CAD용 파일작성	(0.007)	1			(0.007)				
	소계	(0.014)				(0.014)				

작업구분	세부공정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④ 성과 대조	대조용 도면제작	(0.018)	1			(0.018)			()는 내업임	
	대조용 도면출력	(0.017)	1			(0.017)				
	대조용 서류(조서) 작성	(0.006)	1			(0.006)				
	파일작성	(0.006)	1			(0.006)				
	도면대조	(0.014)	1			(0.014)				
	대조결과 협의	(0.006)	1			(0.006)				
	소계	(0.067)				(0.067)				
⑤ 지적 전산 도면 수정	공간객체생성	(0.005)	1			(0.005)			()는 내업임	
	공간객체편집	(0.010)	1			(0.010)				
	속성DB입력	(0.005)	1			(0.005)				
	속성DB편집	(0.005)	1			(0.005)				
	부대서류 (조서 등)작성	(0.005)	1			(0.005)				
	위상검사 및 데이터무결성검사	(0.016)	1			(0.016)				
	지적전산도면출력	(0.020)	1			(0.020)				
	부대서류(조서 등) 출력	(0.004)	1			(0.004)				
	소계	(0.070)				(0.070)				
	⑥ 공간 속성 자료 구조화 수정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006)	1		(0.006)				
⑦ DB 탑재	CAD용 파일작성	(0.007)	1			(0.007)			()는 내업임	
	소계	(0.013)				(0.013)				
	계획수립	(0.029)		1			(0.029)			
	DB검사	(0.004)		1			(0.004)			
	DB백업 및 삭제	(0.004)		1			(0.004)			
⑧ 성과 납품	DB정비 및 탑재	(0.015)		1			(0.015)		()는 내업임	
	소계	(0.052)					(0.052)			
	성과품 정리 · 점검	(0.012)	1			(0.012)				
	성과품 인계	(0.006)	1			(0.006)				
소 계	소계	(0.018)				(0.018)			()는 내업임	
	내업	(0.481)				(0.409)	(0.170)			
	외업									
총 계		0.481				0.409	0.170			

7-6-1-2.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수치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및준비	(0.01)		1				(0.01)				
자료조사및수집	(0.04)	1	1			(0.04)	(0.04)				
기초자료정비	(0.02)	1				(0.02)					
지적전산도면제작	(0.12)	1				(0.12)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2)	1				(0.02)				()는 내업임	
성과대조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수정	(0.05)	1				(0.05)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DB탑재	(0.03)		1				(0.03)				
성과납품	(0.01)	1				(0.01)					
소계	내업	(0.35)				(0.31)	(0.08)				
	외업										
합계		0.35				0.31	0.08				

① 본 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지적)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도면파일 형식으로 제작, 개신, 보수 등 다양한 지적전산·정보화 업무에 소요되는 품을 나열한 것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작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세부공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작업별 세부공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 구분	세부공정	일 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④ 계획 및 준비	업무분석	(0.007)		1			(0.007)			
	계획수립	(0.003)		1			(0.003)			
	소계	(0.010)					(0.010)			
④ 자료 조사 및 수집	자료수집분석	(0.004)	1	1		(0.004)	(0.004)			
	CIF 자료수집	(0.004)	1	1		(0.004)	(0.004)			
	KLIS 자료수집	(0.005)	1	1		(0.005)	(0.005)			
	정사영상 수집	(0.002)	1	1		(0.002)	(0.002)			
	소유권정보 수집	(0.005)	1	1		(0.005)	(0.005)			
	기타자료수집	(0.002)	1	1		(0.002)	(0.002)			
	도면, 도서자료 수집	(0.004)	1	1		(0.004)	(0.004)			
	자료오류분석	(0.003)	1	1		(0.003)	(0.003)			
	사업대상 기초자료 정제	(0.005)	1	1		(0.005)	(0.005)			
	소계	(0.006)	1	1		(0.006)	(0.006)			
④ 기초 자료 정비	문서자료 공간정보 변환	(0.040)				(0.040)	(0.040)		()는 내업임	
	수집도면간 부합여부 확인	(0.003)	1			(0.003)				
	수집도면간 매칭	(0.005)	1			(0.005)				
	데이터 포맷 변환	(0.004)	1			(0.004)				
	각종자료간 공간위치 매칭	(0.005)	1			(0.005)				
	소계	(0.005)	1			(0.005)				
④ 지적 전산 도면 제작	각종 필요공간 객체생성	(0.022)				(0.022)				
	각종 필요공간 객체편집	(0.048)	1			(0.048)				
	속성 DB 입력	(0.047)	1			(0.047)				
	속성 DB 편집	(0.007)	1			(0.007)				
	관련기관 협의	(0.006)	1			(0.006)				
	부대서류 작성 (조서 등)	(0.010)	1			(0.010)				
	소계	(0.006)	1			(0.006)				
④ 공간 속성 자료 구조화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124)				(0.124)				
	CAD용 파일작성	(0.011)	1			(0.011)				
	소계	(0.006)	1			(0.006)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작업구분	세부공정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④ 성과 대조	대조용 도면제작	(0.010)	1			(0.010)			()는 내업임	
	대조용 도면출력	(0.005)	1			(0.005)				
	대조용 서류(조서) 작성	(0.006)	1			(0.006)				
	파일작성	(0.004)	1			(0.004)				
	도면대조	(0.010)	1			(0.010)				
	대조결과 협의	(0.005)	1			(0.005)				
	소계	(0.040)				(0.040)				
⑤ 지적 전산 도면 수정	공간객체생성	(0.006)	1			(0.006)			()는 내업임	
	공간객체편집	(0.006)	1			(0.006)				
	속성DB입력	(0.004)	1			(0.004)				
	속성DB편집	(0.005)	1			(0.005)				
	부대서류 (조서 등)작성	(0.006)	1			(0.006)				
	위상검사 및 데이터무결성검사	(0.009)	1			(0.009)				
	지적전산도면출력	(0.008)	1			(0.008)				
	부대서류(조서 등) 출력	(0.005)	1			(0.005)				
	소계	(0.049)				(0.049)				
⑥ 공간 속성 자료 구조화 수정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005)	1			(0.005)				
	CAD용 파일작성	(0.004)	1			(0.004)				
	소계	(0.009)				(0.009)				
⑦ DB 탑재	계획수립	(0.003)		1			(0.003)			
	DB검사	(0.005)		1			(0.005)			
	DB백업 및 삭제	(0.005)		1			(0.005)			
	DB정비 및 탑재	(0.013)		1			(0.013)			
	소계	(0.026)					(0.026)			
⑧ 성과 납품	성과품 정리 · 점검	(0.005)	1			(0.005)				
	성과품 인계	(0.003)	1			(0.003)				
	소계	(0.008)				(0.008)				
소계	내업	(0.345)				(0.309)	(0.076)			
	외업									
총 계		0.345				0.309	0.076			

7-6-2. 단 가 산 출 (예)

7-6-2-1.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도해지역)

군지역(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41	인	274,286	112,457	
	지적산업기사	0.17	인	242,724	41,263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 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 측량비	기계경비				7,210	
	재료소모품비				20,041	
	기타					
	제경비	20%			30,744	
기술료	기술료	13%			23,980	
	합계	1도과			235,695	
1도과당					235,695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7-6-2-2.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수치지역)

군지역(수치)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31	인	274,286	85,028	
	지적산업기사	0.08	인	242,724	19,417	
	지적기능사					
	인부					
직접측량비	현장여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직접경비	인부				
		기계경비			7,177	
		재료소모품비			19,714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20,889	
	기술료	13%			16,293	
합계		1도과			168,518	
1도과당					168,518	

7-6-3. 수수료 기본단가표

7-6-3-1.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 ① 본 단가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로써 본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②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92.8%, 시지역 92.8%, 구지역 92.8%

임야 : 군지역 93.6%, 시지역 93.3%, 구지역 93.6%

수치 : 군지역 91.0%, 시지역 91.6%, 구지역 91.5%

- ③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219,000	224,000	230,000
임야	274,000	280,000	289,000
수치	153,000	158,000	162,000

7-6-4. 공정일람표

7-6-4-1.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도해지역)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41)	(0.52)	(0.41)	(0.52)	(0.41)	(0.52)		
지적산업기사	(0.17)	(0.22)	(0.17)	(0.22)	(0.17)	(0.22)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58)	(0.74)	(0.58)	(0.74)	(0.58)	(0.74)	
합계	0.58	0.74	0.58	0.74	0.58	0.74		

* ()내는 내업임

7-6-4-2.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수치지역)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토지	임야
지적기사			(0.31)		(0.31)		(0.31)	
지적산업기사			(0.08)		(0.08)		(0.08)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39)		(0.39)		(0.39)		
합계		0.39		0.39		0.39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7. 지적전산 자료정비

7-7-1. 작업공정 품셈기준

7-7-1-1. 지적전산 자료정비(개별지적자료정비)(토지 · 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0.002)	1			1		(0.002)		(0.002)		
자료조사	(0.010)			1				(0.010)			
준비도작성	(0.007)			1				(0.007)			
접합작업	(0.030)			1	1			(0.030)	(0.030)		
성과결정	(0.004)	1					(0.004)				
성과점검및인계	(0.004)	1					(0.004)				
소계	외업										
	내업	(0.057)					(0.010)	(0.047)	(0.032)		
합계	0.057					0.010	0.047	0.032			

① 본 품은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에 따른 수정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7-7-1-2. 지적전산 자료정비(개별지적자료정비)(임야)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0.002)	1	1			(0.002)	(0.002)				
자료조사	(0.010)		1				(0.010)				
준비도작성	(0.009)		1				(0.009)				
접합작업	(0.042)		1	1			(0.042)	(0.042)			
성과결정	(0.005)	1				(0.005)					
성과점검및인계	(0.004)	1				(0.004)					
소계	외업										
	내업	(0.072)				(0.011)	(0.063)	(0.042)			
합계	0.072					0.011	0.063	0.042			

① 본 품은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에 따른 수정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7-7-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②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자료)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③ 본 품에는 성과 탑재 완료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도면파일(DAT 등),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각 1식
- 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7-7-2. 단 가 산 출 (예)

7-7-2-1.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전산자료)(토지 · 수치)

군지역(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10	인	274,286	2,742	
	지적산업기사	0.047	인	242,724	11,408	
	지적기능사	0.032	인	180,875	5,788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측량비	기계경비				188	
	재료소모품비				194	
	기타					
	제경비	20%			3,988	
기술료	기술료	13%			3,110	
	합계	1필지			27,418	
1필지당					27,418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7-7-2-2.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전산자료)(임야)

군지역(임야)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11	인	274,286	3,017	
	지적산업기사	0.063	인	242,724	15,291	
	지적기능사	0.042	인	180,875	7,596	
	인부					
직접측량비	현장여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직접경비	인부				
		기계경비			188	
		재료소모품비			194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5,181	
	기술료	13%			4,041	
합계		1필지			35,508	
1필지당					35,508	

7-7-3. 수수료 기본단가표

7-7-3-1. 지적전산 자료정비

① 지적전산 자료정비 수수료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수치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임야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② 지적전산 자료정비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 수치	1필지	27,000	28,000	29,000
임야	1필지	36,000	36,000	38,000

7-7-4. 공정일람표

7-7-4-1.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전산자료)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 수치	임야	토지 · 수치	임야	토지 · 수치	임야
지적기사	(0.010)	(0.011)	(0.010)	(0.011)	(0.010)	(0.011)
지적산업기사	(0.047)	(0.063)	(0.047)	(0.063)	(0.047)	(0.063)
지적기능사	(0.032)	(0.042)	(0.032)	(0.042)	(0.032)	(0.042)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089)	(0.116)	(0.089)	(0.116)	(0.089)
합계	0.089	0.116	0.089	0.116	0.089	0.116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8. 도면작성

7-8-1. 작업공정 품셈기준

7-8-1-1. 도면작성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제도	(0.34)		1				(0.34)				
대조수정	(0.03)		1				(0.03)				
성과작성	(0.13)		1				(0.13)				
점검	(0.02)		1				(0.02)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53)						(0.53)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7-8-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적도 크기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기준규격의 1/2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7-8-2. 단 가 산 출 (예)

7-8-2-1. 도면작성

군지역(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0.53	인	242,724	128,643	
	지적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기계경비				3,389	
	재료소모품비				1,543	
간접측량비	기타					
	제경비	20%			25,729	
	기술료	13%			20,068	
합계		지적도 크기			179,372	
1장당					179,372	

7-8-3. 수수료 기본단가표

7-8-3-1. 도면작성

① 도면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6%, 시지역 5.5%, 구지역 5.3%
 임야 : 군지역 5.7%, 시지역 6.0%, 구지역 5.8%

② 도면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수치	1도과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도과 (임야도크기)	13,000	14,000	14,000

7-4-4. 공정일람표

7-8-4-1. 도면작성

자격별	지역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토지	임야	수치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0.53)	(0.68)	(0.53)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53)	(0.68)	(0.53)
합계		0.53	0.68	0.53

* ()내는 내업임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9. 지적도작성 및 지적도재작성

7-9-1. 수수료 기본단가표

7-9-1-1. 지적도작성 및 지적도재작성

- ① 본 단가는 지적확정측량, 복구측량 등으로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지적도가 마모, 훼손되어 다시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지적도작성 및 지적도재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44.0%, 시지역 45.0%, 구지역 46.0%

임야 : 군지역 43.4%, 시지역 44.5%, 구지역 45.5%

토지 : 군지역 44.0%, 시지역 45.0%, 구지역 46.0%

- ③ 지적도작성 및 지적도재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수치	1도과 (지적도크기)	87,000	91,000	96,000
임야	1도과 (임야도크기)	107,000	113,000	119,000

7-9-1-2. 단가 적용기준

- ① 본 단가는 지적(임야)도 크기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단가는 전산파일에 의한 자동제도기 또는 롤플로터에 의하여 알루미늄 캔트지 및 폴리에스터 캔드지에 제도한 것이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7-10. 조서작성

7-10-1. 작업공정 품셈기준

7-10-1-1. 조서작성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1)		1				(0.01)				
조서작성	(0.01)		1				(0.01)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04)						(0.04)				

①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지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7-10-1-2.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

③ 조서용지는 1매에 10횡 미만의 조서 작성 시에도 본 품에 의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7-10-2. 단 가 산 출 (예)

7-10-2-1. 조서작성

군지역(토지)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0.04	인	242,724	9,708	
	지적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기계경비				77	
	재료소모품비				125	
간접측량비	기타					
	제경비	20%			1,942	
	기술료	13%			1,515	
합계					13,367	
1장당					13,367	

7-10-3. 수수료 기본단가표

7-10-3-1. 조서작성

① 조서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22.4%, 시지역 21.9%, 구지역 21.9%

② 조서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 임야 · 수치	A4(횡) 10행	3,000	3,000	3,000

7-10-3-2. 단가 적용기준

① 본 단가는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단가는 조서용지 기준서식을 A4횡사이즈 10행(또는 줄)으로 한다. 다만, 조서용지 1매에 10횡 미만의 조서 작성 시에도 본 품에 의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7-10-4. 공정일람표

7-10-4-1. 조서작성

자격별	지역별	시 · 군 · 구	
		토지	임야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0.04)	(0.04)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04)	(0.04)
합계		0.04	0.04

* ()내는 내업임

8. 국토정보 자료구축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8-1. 지적정보 D/B구축

8-1-1. 작업공정 품셈기준

8-1-1-1. 지적정보 DB구축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0.88)	1				(0.88)					
기본자료수집	4.79		2				9.58				
측량현황편집	(3.26)		2				(6.52)				
속성DB구축	(2.88)	1	2			(2.88)	(5.76)				
도형/속성연계	(1.06)		2				(2.12)				
DB조회용툴구축	(19.57)	1	3			(19.57)	(58.71)				
점검및보완	(6.56)	1	1			(6.56)	(6.56)				
성과물출력	(1.58)		2				(3.16)				
성과점검및인계	(0.38)	1				(0.38)					
소계	외업	4.79					9.58				
	내업	(36.17)				(30.27)	(82.83)				
합계		40.96				30.27	92.41				

① 본 품은 지적기반의 지적이용현황조사 및 측량을 통하여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집, 설계, DB화하여 효율적인 자료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② DB의 복잡계수

구축대상 DB논리파일의 레코드 요소 유형개수 및 데이터 요소 유형개수 복잡도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레코드 요소 유형의개수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0.80	0.90	1.00
2~5	0.90	1.00	1.10
6 이상	1.00	1.10	1.20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③ 외부입력의 복잡도

지적정보DB에 연계되게 구축되는 외부 파일의 개수와 데이터 요소 유형의 개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참조파일 유형의개수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		
	1~4	5~15	16 이상
0~1	0.90	0.95	1.00
2	0.95	1.00	1.05
3 이상	1.00	1.05	1.10

8-1-1-2. 품셈 적용기준

- ① 지적정보 DB구축 품은 "DB의 복잡계수"가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2~5)와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20~50)를 적용하였으며, "외부입력의 복잡도"는 참조파일의 개수(2)와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5~15)를 기준으로 하였다.
- ② 지적정보 DB구축은 성과품 1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적정보 DB구축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적정보 DB구축 품을 제외한다.
- ③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 지적현황측량, 지적이용현황조사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와 지적정보 DB와 함께 납품되는 상용S/W, 항공사진 등의 물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지적정보유지 및 조회용 툴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는 별도 계상한다.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정보 DB(분석/설계 단계 포함) 1식
 - Ⓑ 지적정보 DB조회용 툴 1식
 - Ⓒ 지적정보 DB조서 및 일람표 1부
 - Ⓓ 지적정보 DB조회용 툴 사용자 매뉴얼 1부
- ⑦ 지적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정보DB 구축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로서 발주자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8-1-2. 수수료 기본단가표

8-1-2-1. 지적정보DB구축

- ① 본 단가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로써 본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② 지적정보DB구축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 ③ 지적정보DB구축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정보DB구축	1식	42,357,000	43,399,000	44,788,000

8-1-3. 공정일람표

8-1-3-1. 지적정보 DB구축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30.27)	(30.27)	(30.27)
지적산업기사	9.58 (82.83)	9.58 (82.83)	9.58 (82.83)
지적기능사			
인부			
소계	외업	9.58	9.58
	내업	(113.10)	(113.10)
합계	122.68	122.68	122.68

* ()내는 내업임

8-2-1. 작업공정 품셈기준

8-2-1-1. 지적원도 DB구축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작업계획	(0.003)	1				(0.003)					
스캐닝	(0.003)			1					(0.003)		
이미지보정및검증	(0.001)	1				(0.001)					
자료전송	(0.005)			1					(0.005)		
좌표독취	(0.120)		1						(0.120)		
속성입력	(0.035)		1						(0.035)		
검수도면출력	(0.008)			1					(0.008)		
대조	(0.020)		1						(0.020)		
수치파일작성	(0.015)		1						(0.015)		
보정파일작성	(0.008)	1				(0.008)					
도면접합	(0.020)		1						(0.020)		
원접체계단일화	(0.008)	1				(0.008)					
구조화편집	(0.015)		1						(0.015)		
전산검사	(0.010)		1						(0.010)		
좌표변환	(0.001)	1				(0.001)					
점검	(0.010)	1				(0.010)					
소계	외업										
	내업	(0.28)				(0.03)	(0.24)	(0.02)			
	합계	0.28				0.03	0.24	0.02			

① 본 품은 북한지역 지적측량(세부)원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스캐닝작업, 좌표독취, 연속지적도 제작을 거쳐 DB를 구축하는 작업 품이다.

8-2-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에는 좌표독취, 속성입력, 수치파일작성, 보정파일작성 공정에는 작업자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 ② 본 품은 지적측량원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지적원도 DB구축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로서 발주자의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8-2. 지적원도 D/B구축

8-2-2. 단 가 산 출 (예)

8-2-2-1. 지적원도 DB구축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0.03	인	274,286	8,228	
	지적산업기사	0.24	인	242,724	58,253	
	지적기능사	0.02	인	180,875	3,617	
	인부					
직접 측량비	지적기사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인부					
간접 측량비	기계경비				3,686	
	재료소모품비				8,598	
	기타					
	제경비	20%			14,020	
	기술료	13%			10,935	
	합계				107,337	
1장당					107,337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8-2-3. 수수료 기본단가표

8-2-3-1. 지적원도 DB구축

- ① 본 단가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로써 본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② 지적원도DB구축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95.2%, 시지역 95.0%, 구지역 95.5%

- ③ 지적정보DB구축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원도DB구축	도과	102,000	104,000	108,000

8-2-4. 공정일람표

8-2-4-1. 지적원도 DB구축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0.03)	(0.03)	(0.03)
지적산업기사		(0.24)	(0.24)	(0.24)
지적기능사		(0.02)	(0.02)	(0.02)
인부				
소계	외업			
	내업	(0.29)	(0.29)	(0.29)
합계		0.29	0.29	0.29

* ()내는 내업임



9. 드론지적측량





202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9-1. 드론지적측량

9-1-1. 작업공정품셈기준

9-1-1-1. 드론지적측량

작업구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고
작업계획 및 준비 현장답사 지상기준점측량 및 대공표지설치 지상기준점 좌표계산 및 성과정리 비행 및 촬영 자료처리 정사영상 제작 경계추출 및 성과검증	(0.50)	(0.25)	(0.25)		()는 내업임
		0.50	0.50		
	0.25	1.00	1.00		
		(0.25)	(0.50)		
	0.62	0.62	0.50		
		(1.25)	(0.25)		
		(0.62)	(0.75)		
	(0.25)	(0.50)			
소계	외업	0.87	2.12	2.00	
	내업	(0.75)	(2.87)	(1.75)	
합계		1.62	4.99	3.75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드론측량의 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0.25k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 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측량면적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5	2.0	2.5	3.0	3.5	1.5+(0.4*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9-1-1-2.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의 성과물은 2차원 성과품 기준이며, 3차원 성과품(3D City Model 등) 제작시 본 품에의한 단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② 드론을 활용하여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을 실시할 경우, “2. 지적세부측량” 중 각 종목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의 65%를 본 품에 의한 수수료에 가산하여 산출한다.

③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9-1-2. 단 가 산 출 (예)

9-1-2-1. 드론지적측량

군지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지적기사	1.62	인	274,286	444,343	
	지적산업기사	4.99	인	242,724	1,211,192	
	지적기능사	3.75	인	180,875	678,281	
	인부					
직접측량비	지적기사	0.87	인	25,000	21,750	
	현장여비	지적산업기사	2.12	인	25,000	53,000
	직접경비	지적기능사	2.00	인	25,000	50,000
	인부					
	기계경비				74,721	
	재료소모품비				107,267	
	기타					
간접측량비	제경비	20%			466,763	
	기술료	13%			364,075	
합계		0.25km ²			3,471,392	

9-1-3. 수수료 기본단가표

9-1-3-1. 드론지적측량

① '드론지적측량'이라 함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드론지적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③ 드론지적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 · 수치 · 임야	0.25km ²	3,471,000	3,551,000	3,656,000

9-1-4. 공정일람표

9-1-4-1. 드론지적측량

자격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사		0.87 (0.75)	0.87 (0.75)	0.87 (0.75)
지적산업기사		2.12 (2.87)	2.12 (2.87)	2.12 (2.87)
지적기능사		2.00 (1.75)	2.00 (1.75)	2.00 (1.75)
인부				
소계	외업	4.99	4.99	4.99
	내업	(5.37)	(5.37)	(5.37)
합계		10.36	10.36	10.36

* ()내는 내업임

III.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4. 12. 6 내무부예규 제762호 제정
1996. 1. 10 내무부예규 제776호 개정
1997. 9. 26 내무부예규 제786호 개정
2000. 9. 18 행정자치부예규 제 58호 개정
2001. 1. 20 행정자치부예규 제 71호 개정
2003. 3. 10 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전문개정
2004. 12. 27 행정자치부예규 제157호 개정
2006. 12. 27 행정자치부예규 제224호 개정
2007. 12. 26 행정자치부예규 제262호 개정
2008. 4. 16 국토해양부예규 제 4호 개정
2008. 12. 22 국토해양부예규 제 26호 개정
2009. 8. 21 국토해양부예규 제110호 개정
2009. 12. 28 국토해양부예규 제151호 개정
2010. 12. 31 국토해양부예규 제178호 개정
2011. 12. 30 국토해양부예규 제214호 개정
2012. 12. 27 국토해양부예규 제263호 개정
2013. 5. 1 국토교통부예규 제 37호 개정
2013. 12. 27 국토교통부예규 제 65호 개정
2014. 12. 22 국토교통부예규 제 94호 개정
2015. 11. 19 국토교통부예규 제118호 전부개정
2015. 12. 30 국토교통부예규 제123호 개정
2016. 12. 30 국토교통부예규 제145호 개정
2020. 1. 10 국토교통부예규 제286호 개정
2020. 8. 10 국토교통부예규 제302호 개정
2022. 1. 1 국토교통부예규 제339호 개정
2024. 2. 1 국토교통부예규 제378호 개정
2025. 12. 24 국토교통부예규 제450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란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2.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4. "지가계수"란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5. "등록계수"란 토지, 임야 등 지적공부 등록지를 구분 및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시·군·구)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7.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란 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8. "필지체감계수"란 50개 이하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9. "면적계수"란 1필지 당 측량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수수료를 가산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기준면적"이란 업무종목별, 등록지별로 단가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소면적을 말한다.
11.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00)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 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

제2장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제4조(수수료의 산정) ①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 산출하고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처리 한다.

②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수수료는 원단위까지 산정한 후 1천원단위(500원 초과는 절상)로 결정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10전 단위(5전 초과는 절상)로 산정하되, 수수료 총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사)로 결정한다.

제5조(수수료의 산정방법) ①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직접측량비(직접인건비 + 직접 경비)와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1. 직접인건비

- 가. 해당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비용 등
- 나. 기초비용과 추가(체감)비용
- 다. 특수비용(특별인건비)

2. 직접경비

- 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나. 측량재료 · 소모품비, 기계상각비 및 정비비, 특수재료비
- 다. 정보이용 및 고객서비스 이용료
- 라. 산재보험, 지적측량보증보험 등 보험료

3. 제경비

- 가. 지적측량업의 유지 · 관리를 위한 임원 · 서무 ·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법정비용 등
-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계상

4. 기술료

- 가. 지적측량수행자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와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지적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한 투자비용 등
-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계상

제6조(직접인건비 산출) ① 직접인건비 세부산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액 = 수량 × 단가
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함

② 지적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를 따른다.

③ 지적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별표 5와 같다.

제7조(직접경비 산출) ① 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산출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액 = 수량 × 단가
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 「공무원 여비규정」 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여행자 일비를 적용함
- ② 기계경비는 해당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 정비비로서 측량종목별 금액에 합산하여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가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2.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3. 금액 = (상각비 + 정비비) × 사용일수(품셈의 일수)
 4. 상각비계산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95
 5. 정비비
 - 가. 실내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025
 - 나. 현장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050
 6. 내용연수 : 「물품관리법」 16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 연수에 따라 물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③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금액 = 조사가격 × 사용량
2.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계상함

제3장 지적측량수수료 세부 적용

제8조(면적계수 적용)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품셈에 따른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하며 면적계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측량 시행규칙」 20조제4항 본문에 해당하면 가산면적 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2.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만제곱미터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각각 3만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3. 여러 도과에 연속되어 걸쳐 있는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인 1필지의 토지 일부분만 측량할 경우에는 해당 도과 내 면적만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또는 2개 이상 연접한 토지 개발사업지구를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 및 사업완료 시기가 다르나 그 시기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 면적을 합산하여 면적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분할식)의 측량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m^2$ 이하, 임야대장등록지의 경우 $200m^2$ 이하)인 필지에

대해서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제24조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면적계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가계수 적용) ①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에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측량 대상 필지 수가 51필지 이상 연속지 · 집단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토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적용한다.

③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으면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④ 측량대상 필지의 지목이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수도 용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계수가 기본구간(1.00)에 해당하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적용 계수의 기본구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지역구분계수 적용)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종목이나 연속지 · 집단지측량 시에 적용한다.

제11조(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 적용) 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연속지 · 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②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단가가 저렴한 필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적소관청별로 각각 51필지 이상일 경우 적용하여,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2조(필지체감계수 적용) ①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는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다.

②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까지 기본단가의 100분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③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도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가 저렴할 경우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4조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장 지적측량수수료 종목별 적용

제13조(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4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측량 시행규칙」 10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GNSS측량 또는 지적삼각점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5조(지적확정측량)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적확정측량방법으로 시행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6조(등록전환측량) ① 법 제78조, 영 제64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 측량을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1. 해당 임야의 일부만 인가·허가 업무를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 의뢰인이 등록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등록전환 될 임야가 여러 필지로 분할 될 경우
 - 가. 필지전체를 등록전환하되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인가·허가 부분의 면적만 적용한다.

나. 분할 후 필지수를 적용하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전 지목대로 존치되는 부분의 분할 수수료는 감면한다.

- ②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각종 인가·허가 또는 토목공사 등의 완료 전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적용한다.
 1.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 측량수수료를 적용
 2.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인가·허가를 득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과 제19조제4항제2호에 적용한 현장여비를 납부한다.
- ③ 인가·허가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소유권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 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와 영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 수수료만 적용한다.
- ④ 인가·허가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 ⑤ 인가·허가선,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선)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⑦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예시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7조(분할측량) ①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 ②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선)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8조(경계복원측량) ① 분할측량과 동시에 수반되는 경계복원측량 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분할선에 따라 구분된 필지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전체 필지를 경계복원할 경우에는 원래면적으로 한다.

② 동일인 소유의 연접한 필지를 합산한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필요 시 1필지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가계수는 해당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필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필지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가가 낮은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해당 필지의 일부 경계점에 대한 경계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측량, 수치측량 등 측량방법의 구분에 따라 연접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확인하려는 경계복원점이 여러 필지에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④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는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구분되는 필지 중 작은 필지의 면적을 적용하며, 적용 예시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9조(지적현황측량) ①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수수료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공부정리에 필요한 일부작업이 생략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한다.

2. 적용유형은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현황, 선 현황, 점 현황으로 구분 한다.

3.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선 현황, 점 현황이면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 필지 내 추가되는 현황은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4.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건축·구조물 등의 점유현황은 1구획마다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지적현황측량 유형별 수수료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예시는 별표 4에 따른다.

1.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 현황

- 가. 구획은 건축·구조물 및 점유형태의 현황에 대하여 적용한다.
- 나. 분할식이 아닌 위치만 표시하는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의 실측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 다. 건축·구조물 등은 독립된 구획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구조물 등이 2필지 이상에 걸치면 1구획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구조물 등에 대하여 각 필지마다 별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 필지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라.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 단독으로 면적측정을 한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건물을 분할식으로 면적측정을 합산하여 1구획으로 성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1구획으로 적용한다.
- 마. 축척이 상이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걸쳐서 하나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현황에 대해서는 분할식으로 각각 면적을 산출할 경우 분할 측량과 같게 적용하며, 동일축척으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다만,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 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층별로 측량할 때 1개의 층을 제외한 다른 층 및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 사.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이 필지경계선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필지 원면적을 기준으로 1구획을 적용한다.
- 아.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수반되는 진입로 등의 도로현황은 1구획으로 적용하되 진입로 실측면적에 대해서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각 필지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한다.

2. 선 현황

- 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상·하수도선, 둑, 담장, 축대(옹벽), 울타리 (철조망), 경계점표지 등에 의한 현황은 선 현황에 해당한다.
- 나. 선 현황은 필지 내 선의 개수와 원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선 현황이 필지 내 선을 기준으로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필지수로 적용하고 기준면적 초과 시에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 라. 인가·허가 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 마. 인가·허가 선,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영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승인선 또는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 바. 라목 및 마목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선) 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사.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선 현황의 경우에는 연속된 매 200m마다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 내 선의 증가 시마다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 아. 현황선 일부가 경계와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점 현황

- 가. 전신주, 묘지, 철탑, 소화전, 나무, 전주, 도근점, 가로등, 수도전, 소화전 등과 같이 점 형태로 표시되는 현황은 점 현황으로 구분한다.
- 나. 실측하는 점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점을 필지수로 하여 1필지 내 1점일 경우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내 증가되는 점은 기본단가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 다. 일정한 규모의 묘지, 철탑 등에 대한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식으로 적용한다. 다만, 단독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1구획을 적용한다.

③ 구획, 선, 점 현황 등이 혼합되어 현황대상 및 필지수가 연속지·집단지일 때에는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다.

④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측량 및 면적 재 산정 등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목변경 시점의 수수료와 기 납부한 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면적 재 산정 등 내업 공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내업품 수수료를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산파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지번이상 같은 건으로 지적현황측량 완료 후 그 중 일부 필지만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할측량을 할 경우 현황측량 시점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선이 변경되지 않은 필지에 한정하여 필지단위로 종목변경이 가능하다.

제20조(실비가산) 도서지역 등을 측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박을 임차할 경우에는 선박 임차료 실비를 가산하며, 의뢰인의 특별요청에 따라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관외에서 소요되는 여비 실비를 가산한다.

제21조(경계점표지의 설치)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0조제4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 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제22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도농통합형태 시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시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읍·면은 군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자치구 및 일반구의 동지역은 구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 위한 측량은 「경계복원측량품셈」을 적용한다.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그 밖의 특수한 업무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수수료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장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23조(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1.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 수행자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제도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수수료 감면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24조(동일지번 두 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 ①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100분의 30을 감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연속지·집단지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제25조(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측량의뢰 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가. 현지에 출장가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잔액

다.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

(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잔액

(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접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잔액

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의뢰인이 같은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6. 의뢰인이 서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연기 만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7. 측량결과 의뢰수량 보다 완료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한다.
8.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기준보다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즉시 반환한다.
9. 반환금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제7장 수수료 고시

제26조(수수료 단가 조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수료 단가를 노임단가, 현장여비,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인가된 수수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부 칙(2008.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1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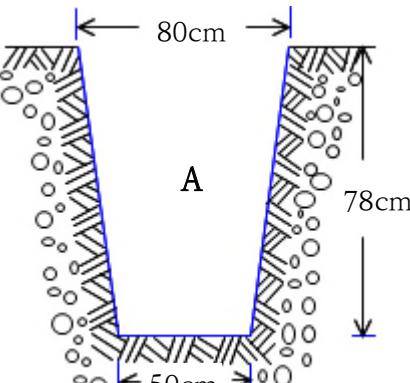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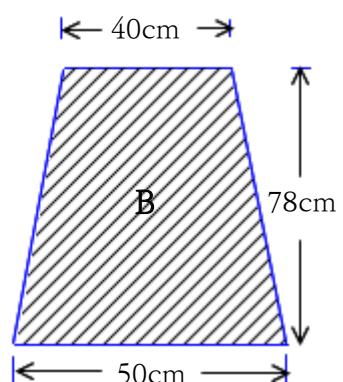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図表 1】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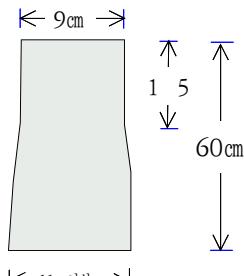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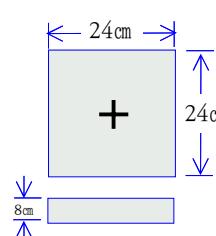
가. 표석사용의 경우

(1점당)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가. 터파기		원	<p>* 터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박돌 섞인 토사, 경질토사, 보통토사 $(0.80m \times 0.80m) = (\underline{\hspace{2cm}} + \underline{\hspace{2cm}} \times 0.78m) \times \frac{2}{2}$ $= 0.35m^3$ $0.35m^3 \times \text{식가}(1m^3\text{당})$ $= \text{금액}$
나. 거푸집		원	<p>* 일반합판 사용(1회사용)</p> $0.4m + 0.5m = (\underline{\hspace{2cm}} \times 0.78m) \times \frac{2}{2} \times 4\text{면} = 1.404m^2$ $1.404m^2 \times \text{식가}(1m^3\text{당})$ $= \text{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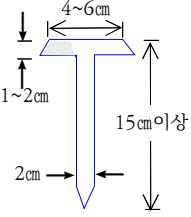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다. 표 석 보 호 콘 크 리 트 원			<p>* 중량배합손 비빔콘크리트 (A 배합적용)</p> <p>전체</p> $= \frac{(0.4m \times 0.4m) + (0.5m \times 0.5m)}{2} \times 0.78m = 0.1599m^3$ <p>A = $\frac{(0.09m \times 0.09m) + (0.11m \times 0.11m)}{2} \times 0.55m = 0.0056m^3$</p> <p>B = $(0.24m \times 0.24m) \times 0.08m = 0.0046m^3$</p> <p>C = ①-② = 0.0302m³ ① = $\frac{(0.4512m \times 0.4512m)}{2} + \frac{(0.4706m \times 0.4706m)}{2} \times 0.15 = 0.0319m^3$ ② = $\frac{(0.1046m \times 0.1046m)}{2} + \frac{(0.1100m \times 0.1100m)}{2} \times 0.15 = 0.0017m^3$</p> <p>D = $\frac{(0.4706m \times 0.4706m)}{2} + \frac{(0.4770m \times 0.4770m)}{2} \times 0.05m = 0.0112m^3$</p> <p>E = $0.1599 - (0.0056 + 0.0046 + 0.0302 + 0.0112) = 0.1083m^3$</p>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라. 부 설 인부임	보통인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설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현장운반 인부임 포함 • 인부임 × 0.2인 = 금액
마. 표 석	(주석)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규격품으로서 양질의 화강암 사용
	(반석)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바. 표 석 대 장 작성비	1점당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업(위치 및 거리측정) 1인1일 30점 1인 ÷ 30점 = 0.03 → 1점당 • 내업(위치약도 및 대장작성) 1인1일 50점 1인 ÷ 50점 = 0.02인 → 1점당 • 계 0.05인 지적산업기사 1일당 원 지적산업기사 1일당 × 0.05인 = 10,987
지 적 삼각점	소 계 일반관리비(6%)	원	
	산 출 액 계	원	
도근점	소 계 일반관리비(6%)	원	
	산 출 액 계	원	※ 지적도근점은 표석대장 중 반석 제외

• 본 가격표는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철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근 거
천공 및 타설		원	<p>보통인부임 1인 1일 17개 1인 ÷ 17개 = 0.058인 인부임 × 0.058인 = 금액</p>
철 제 도 근 점		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규격품을 사용함(시중시가)
표석대장 작 성 비	1점당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업(위치 및 거리측정) 1인 1일 30점 1인 ÷ 30점 = 0.03인 → 1점당 내업(위치약도 및 대장작성) 1인 1일 50점 1인 ÷ 50점 = 0.02인 → 1점당 계 = 0.05인 지적산업기사 1일당 × 0.05인 =금액

구 分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기 초
소 계		원	
일반관리비 (6%)		원	
산출액 계	1 점당	원	

- 본 가격표는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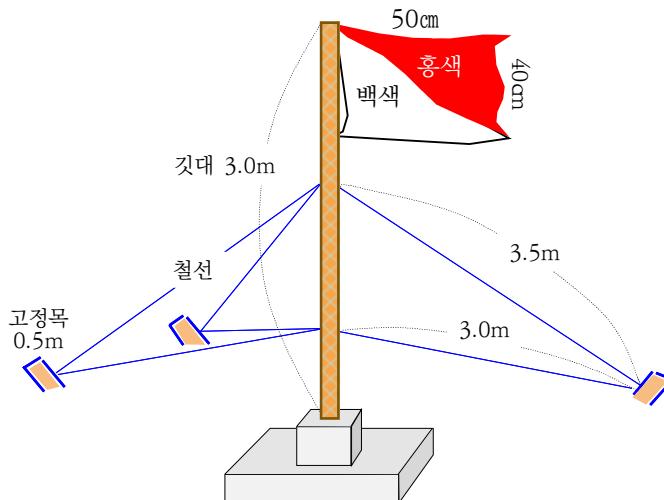
다. 목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格	산 출 액	산 출 기 초
부설인부 (말박기)	1 점당	원	보통인부임 원 1인 1일 50개 1인 ÷ 50개 = 0.02인 인부임 × 0.02인=1인금액 1인금액 × 2인=1점금액
목 제 표 지	(3.5cm × 3.5cm × 35cm)	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을 사용함. (시중시가)
소 계		원	
일반관리비 (6%)		원	
산출액 계	1 점당	원	

- 본 가격표는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점표대 산출

(1) 규격



(규격은 지형이나 형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재료

(가) 각재

깃대 $4.0\text{cm} \times 4.0\text{cm} \times 3.0\text{m} \times 1\text{개}$ 고정목 $4.0\text{cm} \times 4.0\text{cm} \times 0.5\text{m} \times 3\text{개}$

(나) 철선

장: $3.5\text{m} \times 3\text{선} = 10.5\text{m}$, 단: $3.0\text{m} \times 3\text{선} = 9.0\text{m}$

(다) 깃발

가로 50cm , 세로 40cm (바람에 잘 날리는 명주천)

마.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를 적용한다.

바. 지적측량기준점매설비는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매설비 총액은 1천원단위(500원초과는 절상)로 결정한다.

사. 지적측량기준점 관측비에는 표석대장작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점 관측을 수반하는 매설비 산출 시 기준점매설비에 표석대장작성비를 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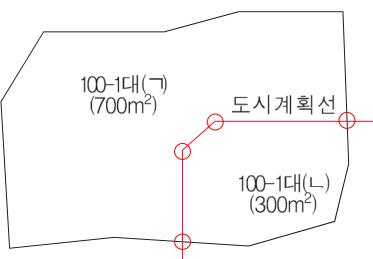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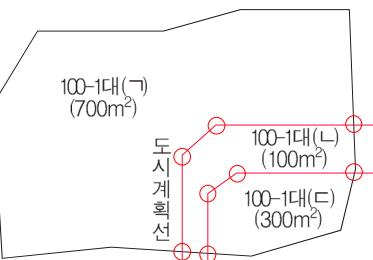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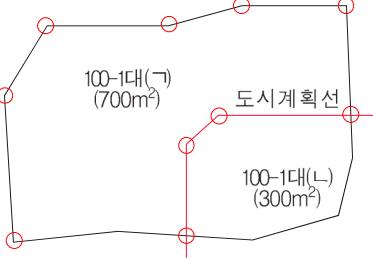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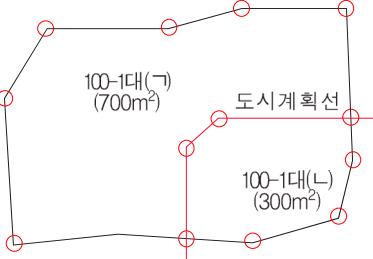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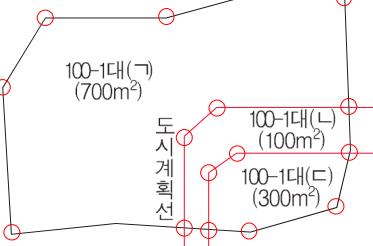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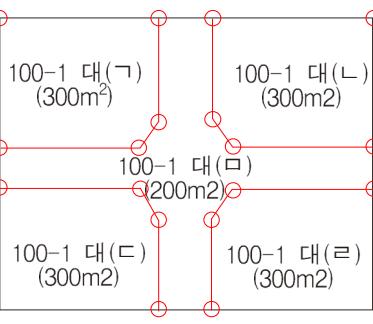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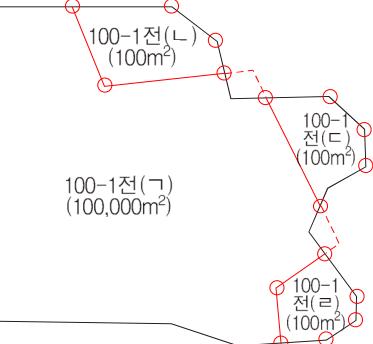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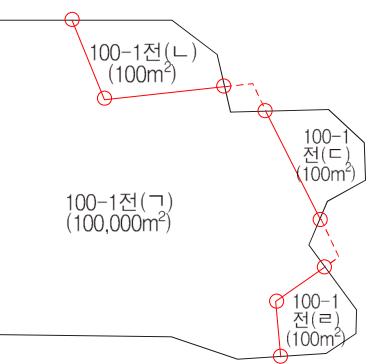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고객측량의뢰 조건	예 시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임야 전체 인가 · 허가로 등록전환측량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전환측량 1필지 수수료 적용
임야 전체 인가 · 허가로 등록전환측량 후 2필지 분할측량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전환측량 1필지 수수료 적용 2필지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적용
해당 임야 한쪽부분만 인가 · 허가를 받아 등록전환측량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가 · 허가 부분의 면적만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나머지 인가 ·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머지 부분 주위가 임야라도 지적소관 청이 등록전환 권고 시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감면 <p>* 근거: 제16조제1항제1호</p>
원면적(5만m ²)중 인가 · 허가에 의한 등록전환대상부분(4만m ²)에 대한 등록전환 후 4필 분할측량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필지를 등록 전환하되 인가 · 허가 부분 면적(4만m²)에 대한 1필지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등록전환 후 분할필지가 6필지이나 인가 · 허가 부분인 4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수수료를 적용 지목변경이 없는 2필지에 대해서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감면 <p>* 근거: 제16조제1항제2호</p>
인가 · 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 소유권 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6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수수료 6필만 적용 <p>* 근거: 제16조제3항</p>

【별표 3】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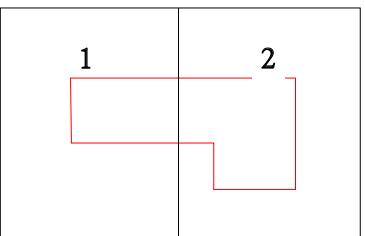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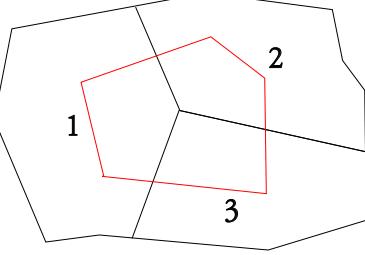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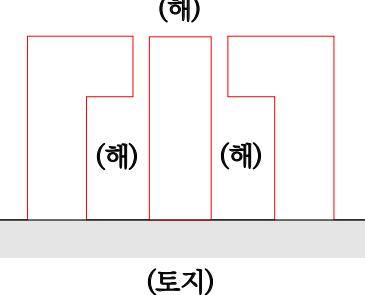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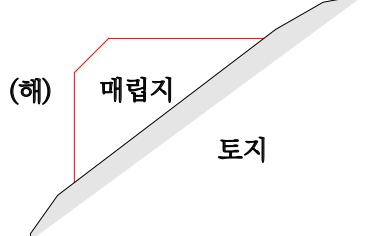
유형 예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필 적용 면적이 적은 (ㄴ)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필 적용 도시계획선 필지인 (ㄴ)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필 적용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을 경계복원한 (ㄱ)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필 적용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을 경계복원한 (ㄱ), (ㄴ)부분

유형 예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필 적용 <p>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을 경계복원한 (ㄱ), (ㄴ)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필 적용 <p>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을 경계복원한 (ㄱ), (ㄴ), (ㅁ)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필 적용 <p>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을 경계복원한 (ㄱ), (ㄴ), (ㄷ)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필 적용 <p>면적이 적은 (ㄴ), (ㄷ), (ㄹ)부분</p>

【별표 4】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_구획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로 분할식으로 면적측정 성과발급 시: 4필 단독건물로만 위치표시: 1필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단독으로 면적측정 시: 1필 필지별로 건물면적 측정 시: 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면적이 기준면적 초과 시 면적 가산계수 적용
수필지에 걸친 구조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식: 6필 위치만 표시할 경우: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구조물단독 면적측정 시: 1필 필지별로 구조물 면적측정 시: 3필
해안구조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구조물 구획별로 적용하되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면적가산계수 적용: 3필
공유수면매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측하는 구획수 적용: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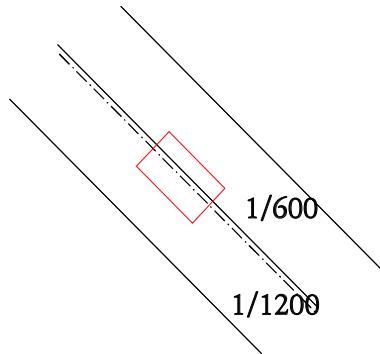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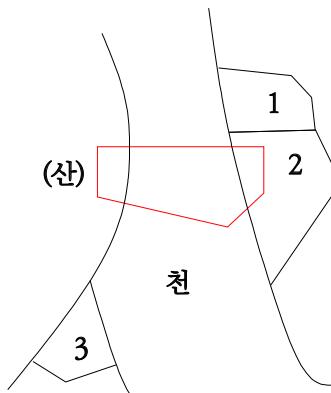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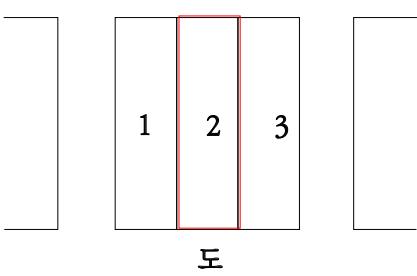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2_구획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내 · 외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내 · 외부 현황: 4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1필지 적용하고 구획 추가 마다 5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1필, 50%: 3필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건축물 층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층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1필지 적용하고 층별 추가 마다 5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1필, 50%: 2필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층별 면적측정 포함
면적지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식과 같은 적용: 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지정 부분 1필은 40% 가산
도로 점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유현황 위치만 표시하고 면적측정 불요 시: 7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분할식 현황일 경우: 8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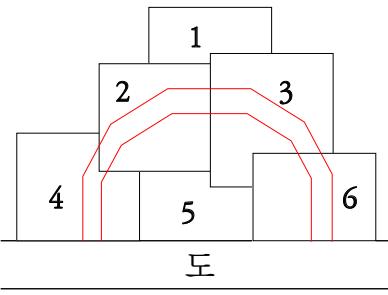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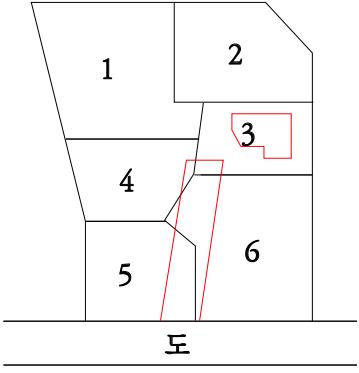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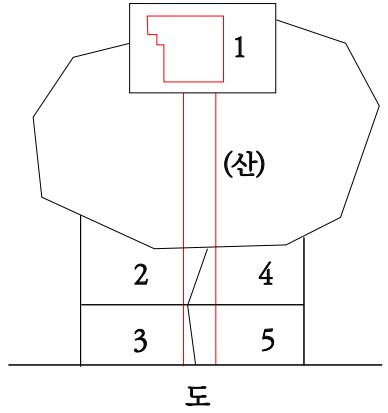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3_구획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하천 · 구거부지 점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유지별로 면적측정 할 경우: 8필 -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점유현황 위치만 표시하고 면적측정 불요 시: 7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점유현황 단독면적 측정시: 7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분할식 토지와 구조물 현황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면적 산출 시: 5필 - 구조물 구획별로 적용: 3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토지는 분할식과 같게 적용: 2필 위치만 표시할 경우: 4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 구획: 3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1필(기본단가의 50% 적용)
구획과 경계(선) 현황 혼합 (아파트단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현황별로 면적측정 시: 21필 -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위치만 표시하고 면적측정 불요 시: 20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획(아파트): 16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담장): 4필(기본단가의 50% 적용)
점유현황과 구조물 현황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면적 산출 시: 3필 - 구조물: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토지는 분할식 현황 적용: 2필 위치만 표시: 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 1필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1필 (기본단가의 5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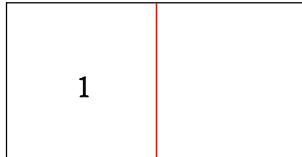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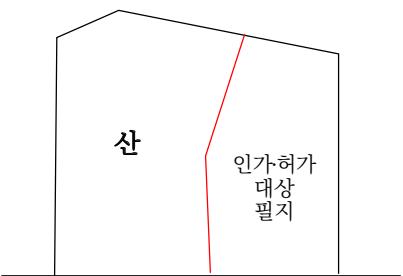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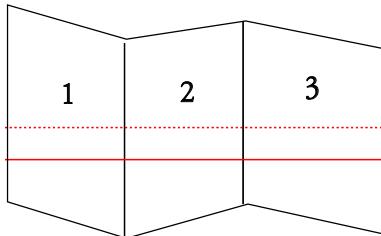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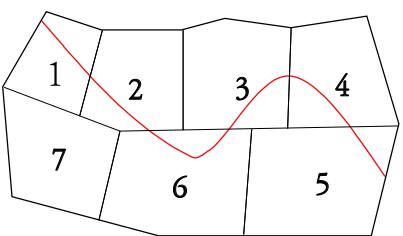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4_구획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축척이 다른 행정구역이 2개 이상 걸쳐 사용허가 조건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별로 각 필지 면적 측정 시: 4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식으로 적용 면적측정 불요 시: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획적용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점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구조)물일 경우: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실측 면적 가산계수 적용 점유 위치만 표시: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필지별 면적 산출 시: 7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식으로 적용 점유현황 필지별 면적 측정 시: 3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구획선이 경계와 일치한 위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선과 경계선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한쪽 일부 경계선만 확인할 경우: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단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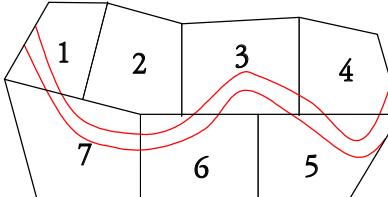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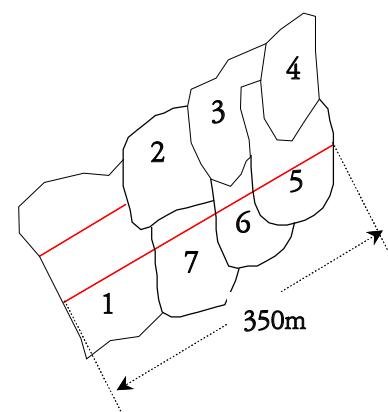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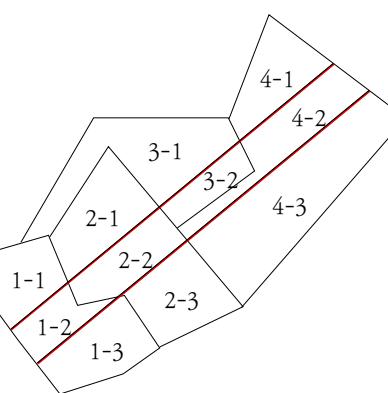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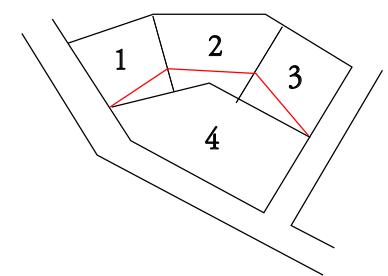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5_구획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허가 및 준공에 수반되는 도로 현황 (진입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획단위 적용(면적측정 불요): 1필 *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획단위 적용(면적측정 불요): 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1필 - 건축물 현황: 1필 * 진입로, 건축물 모두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축적이 상이한 지역의 건축(준공)을 위한 진입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획단위 적용(면적측정 불요): 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1필 - 건축물 현황: 1필 * 진입로, 건축물 모두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6_선 현황, 분할식 현황]

조건	유형 예시도	적용
1필지 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만 표시 할 경우: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단가 적용 * 도상에서 선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할 경우 기본단가에 30%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 면적측정이 필요한 분할식 현황 적용 시: 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지정 시: 지정필지 40% 가산 - 선 지정 시: 지정필지 30% 가산
인가·허가 등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만 표시 할 경우: 1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단가 적용 * 도상에서 선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할 경우 기본단가에 30%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 면적측정이 필요한 분할식 현황 적용 시: 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지정 시: 지정필지 40% 가산 - 선 지정 시: 지정필지 30% 가산
1필지 내 현황선 증가의 경우 (면적측정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선의 길이가 매 200m 마다 1선 적용: 2필(상·하 각각 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단가 적용
연속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만 표시 할 경우: 매 200m마다 1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단가 적용 * 도상에서 선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할 경우 기본단가에 30%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 면적측정이 필요한 분할식 현황 적용 시: 12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지정 시: 지정필지 40% 가산 - 선 지정 시: 지정필지 30%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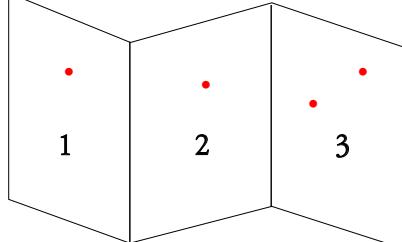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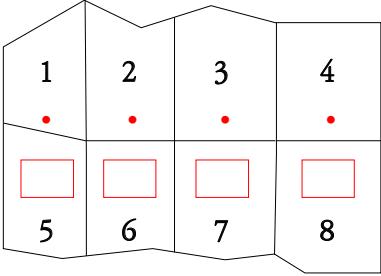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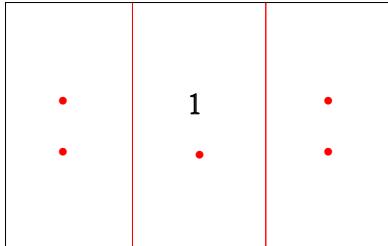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7_선 현황, 분할식 현황]

조건	유형 예시도	적용
농로 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 면적측정이 필요한 분할식 현황 적용 시: 18필 면적측정 불요 시 매 200m마다 기본 1선 적용: 2필(상·하 각각 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 면적측정이 필요한 분할식 현황 적용 시: 9필 면적측정 불요 시 매 200m마다 기본 1선 적용하고 필지 내 선 증가 시마다 50% 적용: 3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2필, 50%: 1필 *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분할 후 공사준공용 현황 (분할경계선 대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200m 단위로 적용: 2필(상·하 각각 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선이 분할된 경계선과 일치할 경우에도 같은 적용 * 기본단가 적용
토지 점유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 면적측정이 필요한 분할식 현황 적용 시: 6필 면적측정 불요 시 매 200m마다 기본 1선 적용: 1필(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단가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8_선 현황, 분할식 현황]

조건	유형 예시도	적용
저수지 수몰선 현황과 관리사무소가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측정 시 분할식 현황 적용: 9필 * 관리사무소 1필 포함 수몰선만 표시: 매 200m 마다 기본 1선 *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 내 현황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200m 마다 1선 적용 *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 내 현황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200m 마다 1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3필, 50%: 1필(각각 200m 이내일 경우) 기본단가 적용하되, 1필지 내 추가되는 현황선은 50% 적용
현황선(담장 · 옹벽 · 철조망 등) 일부가 경계와 일치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 면적측정이 필요한 분할식 현황 적용 시: 4필 위치만 표시할 경우 매 200m 마다 기본 1선 적용 * 기본단가 적용 본 예시도와 같이 현황선이 경계와 일치할 경우가 일부 있는 경우에는 일치된 부분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9_점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점 위치 현황 (전신주, 묘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필지별로 기본단가 적용: 4필 - 100%: 3필, 50%: 1필 * 필지 내 추가되는 점은 50% 적용 묘지 등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점과 구조물 현황 (전신주, 철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측하는 점 또는 구조물 수를 기준으로 적용(위치만 표시): 8필 * 필지 내 추가되는 점은 50% 적용 구조물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선 또는 점 위치 현황이 혼합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면적 산출 시: 8필 - 점: 5필(50% 적용) - 토지는 분할식 현황 적용: 2필 * 면적가산계수 적용 위치만 표시: 7필 - 100%: 1필, 50%: 6필 * 필지 내 추가되는 점 · 선은 50% 적용

2026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고시기관 : 국토교통부

- 근 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 고시일 : 2025. 12. 24.
- 시행일 : 2026. 1. 1.
- 홈페이지 : www.molit.go.kr

◎ 편집인쇄 : 한국국토정보공사

- 문의 : 1588-7704
- 홈페이지 : www.lx.or.kr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https://baro.lx.or.kr>
